

연구보고서(수시) 2019-13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이원진
정해식·전지현

【책임연구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9-13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9년 12월

저자 이원진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발간사 <<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분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2016년 이전까지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였으나, 2017년에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를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변경하였고, 현재 행정자료로 소득조사 데이터를 보완하여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과거 소득분배지표가 현실의 불평등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득분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간에 따른 소득분배의 변화를 일관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졌고, 소득분배의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차이와 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두 데이터로 관찰한 소득 분포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개선과 소득분배 기초자료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 정해식 연구위원, 전지현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현황과 변화	27
제1절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혁	29
제2절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논의	34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41
제1절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조사 내용 및 방법	43
제2절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비교 분석	49
제3절 가구 및 개인 특성 비교 분석	61
제4절 소득원천 분포 비교 분석	81
제5절 소결	113
제4장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비교 분석 ..	117
제1절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 방법	119
제2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전체 집단 분석	122
제3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하위 집단별 분석	138

제4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소득분배지표 변화	153
제5절 소결	164
제5장 결 론	169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171
제2절 분석 결과의 함의	174
참고문헌	189
부 록	195

표 목차

〈표 1-1〉 소득 개념 정의	24
〈표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전후의 주요 기준선 비교(2015년)	35
〈표 2-2〉 2017~2018년 기준중위소득 산정 결과	38
〈표 3-1〉 2016년(소득연도) 기준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서베이 방법	44
〈표 3-2〉 2016년(소득연도) 기준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항목 구성	45
〈표 3-3〉 2011년(소득연도) 이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변화	48
〈표 3-4〉 이 장의 분석을 위한 소득원천 구성	51
〈표 3-5〉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53
〈표 3-6〉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10분위 경계값	56
〈표 3-7〉 2011~2016년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59
〈표 3-8〉 2011~2016년 가구 및 개인 특성	62
〈표 3-9〉 가구 규모, 가구주 성 및 연령 분포,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68
〈표 3-10〉 개인 성 및 연령 분포,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69
〈표 3-11〉 15세 이상 개인 취업 분포,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70
〈표 3-12〉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74
〈표 3-13〉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10분위 경계값	77
〈표 3-14〉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후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79
〈표 3-15〉 2011~2016년 소득원천 평균	82
〈표 3-16〉 2011~2016년 소득원천 0 초과 비율	88
〈표 3-17〉 2011~2016년 근로소득 구간별 비율	92
〈표 3-18〉 2011~2016년 개인 0~17세 소득원천 평균	94
〈표 3-19〉 2011~2016년 개인 18~64세 소득원천 평균	95
〈표 3-20〉 2011~2016년 개인 65세 이상 소득원천 평균	96
〈표 3-21〉 2011~2016년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지니계수	100
〈표 3-22〉 2011~2016년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빈곤율	102
〈표 3-23〉 2011~2016년 개인 0~17세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지니계수	105

〈표 3-24〉 2011~2016년 개인 0~17세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빈곤율	106
〈표 3-25〉 2011~2016년 개인 18~64세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지니계수	107
〈표 3-26〉 2011~2016년 개인 18~64세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빈곤율	108
〈표 3-27〉 2011~2016년 개인 65세 이상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지니계수	109
〈표 3-28〉 2011~2016년 개인 65세 이상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빈곤율	110
〈표 4-1〉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활용 내역	120
〈표 4-2〉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 기준	121
〈표 4-3〉 2017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및 비소비지출 항목	123
〈표 4-4〉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125
〈표 4-5〉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구간별 비율	127
〈표 4-6〉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시장소득분위별 시장소득 평균 변화	129
〈표 4-7〉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평균 변화	129
〈표 4-8〉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분위 변화	130
〈표 4-9〉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소득원천 분포	132
〈표 4-10〉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원천 변화	135
〈표 4-11〉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근로소득 구간별 비율	137
〈표 4-12〉 가구 및 개인 특성	139
〈표 4-13〉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가구 규모별	147
〈표 4-14〉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가구주 성별	148
〈표 4-15〉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가구주 연령대별	149
〈표 4-16〉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개인 연령대별	150
〈표 4-17〉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가구주 교육 수준별	151
〈표 4-18〉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152
〈표 4-19〉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개인 종사상지위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평균	153
〈표 4-20〉 소득원천별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 분포 변화	155
〈표 4-21〉 소득원천별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	158
〈표 4-22〉 소득원천별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변화	160
〈표 4-23〉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162

〈부표 1〉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195
 〈부표 2〉 2011~2016년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196

그림 목차

[그림 1-1]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추이, 2006~2017년 11
 [그림 1-2] 이 연구의 분석틀 17
 [그림 3-1]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54
 [그림 3-2]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10분위 경계값 비율 57
 [그림 3-3] 2011~2016년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60
 [그림 3-4]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75
 [그림 3-5] 2011~2016년 소득원천 평균 84
 [그림 3-6] 2011~2016년 소득원천 0 초과 비율 90
 [그림 3-7] 개인 연령대별 소득원천 평균 97
 [그림 5-1] 가처분소득 분배지표 추이, 2006~2017년 178
 [그림 5-2] 2016년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181
 [그림 5-3] 기준중위소득 추이(4인 가구 기준), 2011~2017년 184



Abstract <<

An Examination on Income Survey Microdata :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Project Head: Lee, Wonjin

The scope and contents of income survey microdata have changed significantly in Korea recently. The official data for a calculation of income distribution indices has changed from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ereafter, HIES) to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hereafter, SHFLC), and income data collected from SHFLC are now supplemented and revised using administrative data. Given these recent changes, we need to deliberately scrutinize the two microdata to understand the trends i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HIES data and SHFLC data in terms of the differences in household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s in distributions of income sour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ome observed from SHFLC data is higher and more unequal than that observed from HIES data. Also, a revised income distribution of SHFLC using administrative data is bigger in size and more unequal than the original distribution observed from the survey. Some implications on income survey and analysis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income distribution, poverty, income inequality, microdata

Co-Researchers: Jung, Haesik · Jun, Jihyun



요약 <<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변경되었고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소득층 포착률이 개선되는 등 소득분배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학술적 측면에서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기준중위 소득 산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분배 실태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를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1~2016년(소득연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데이터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4인 이상 가구, 가구주가 남성, 50대, 대졸, 상용근로자인 가구 등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고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낮은

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재가중하여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하면, 재가중 후 가계동향조사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평균과 중위값은 증가하고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감소한다. 즉,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데이터 간 소득 규모의 차이를 일정하게 설명하지만, 소득 불평등 및 빈곤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동향조사보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규모도 크게 포착한다. 하지만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기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 및 지출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크게 조사되었다.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을 포함한 1차 소득을 포착하는 데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대체로 우위에 있지만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파악하는 데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의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적인 이유는 전체 노인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16년(소득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료 보완 작업이 고소득층의 소득 과소보고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서베이에서 시장소득이 없다고 보고한 저소

특층의 시장소득이 행정자료 보완을 통해 일부 추가적으로 포착되기도 하였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이 근로소득 분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고 서베이에서 파악하지 못한 근로소득의 존재가 일부 추가적으로 포착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이 증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서베이에서 보고되지 않은 사업소득이 일부 추가적으로 포착되었고, 금융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시장소득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률과 고령자의 공적연금 평균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서베이 방식 소득조사가 노인빈곤을 다소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개선, 소득분배 장기 시계열 분석 연구의 데이터 활용,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쟁점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 용어: 소득분배, 빈곤, 소득 불평등, 마이크로데이터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한국의 불평등과 빈곤은 얼마나 심각할까? 통계청(2019a)이 공표한 소득분배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55,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¹⁾은 17.4%이고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세금 및 사회보험료)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0.406, 빈곤율은 19.7%이다. 이러한 소득분배지표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도 보고되어 국제비교에 활용된다. 2016년 시점의 소득분배지표 수치가 보고된 OECD 회원국 30개국 중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55로 네 번째로 높고,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0.047로 두 번째로 낮다(OECD, 2019). 즉, 한국은 조세와 이전(taxes and transfers)의 분배 효과가 작아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2016년 66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45.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OECD, 2019)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소득분배지표 통계는 빈곤 및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평가·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에 활

1)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연구에서 빈곤지표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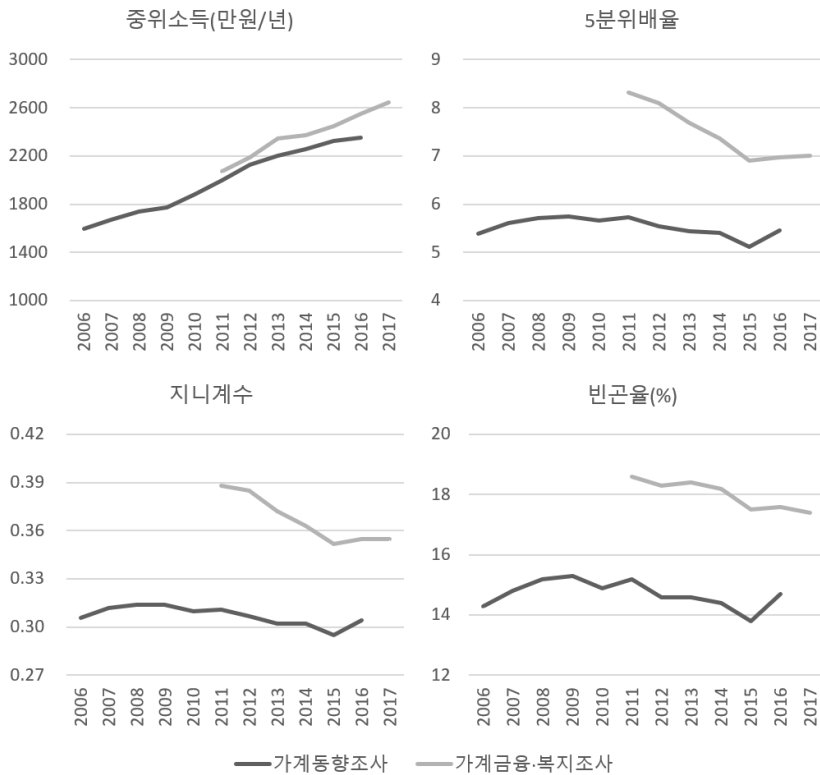
용된다. 당연하게도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현실의 소득 분포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소득 분배지표 분석 결과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설계된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선정, 급여 기준선으로 활용하는 공적이전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17, pp. 16-17) 소득 분포 조사 결과가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신뢰할 만한가? 통계청은 2016년 이전까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해 왔다.²⁾ 그런데 가계동향조사는 주로 고소득층이 누락되거나 소득을 과소보고하는 등의 이유로 현실의 불평등을 과소추정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김낙년, 2012a, 2012b; 김낙년, 김종일, 2013; 이원진, 구인회, 2015; 홍민기, 2016, 2017). 한편 자산 및 소득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가계동향조사의 공식 통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논란이 되었고(통계청, 2013, pp. 1-3), 이와 함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조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통계청, 2013, p. 4). 이에 최근 통계청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조사한 소득 및 비소비지출 데이터를 보완하고 있다(통계청, 2019c, p. 31). 결국 2017년 12월에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 데이터가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변경되었다(통계청, 2017b, p. 2). 이에 따라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 작성은 2016년 시점의 통계를 끝으로 중

2) 가계동향조사에서 제외된 농가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에 농가경제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전체 가구의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였다.

단되었고(통계청, 2018a), 2019년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2017년 시점의 소득분배지표 통계가 작성되었다(통계청, 2019a).

[그림 1-1]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추이, 2006~2017년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처분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값이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는 농가경제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산출한 농가 포함 전국 가구의 소득분배지표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처분소득은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값이지만, 가계동향조사의 가처분소득은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소득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는 행정자료로 보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한 값이다.

자료: 통계청. (2018a).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1. 인출; 통계청. (2019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1. 인출.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더 많이 포착하는 등 대체로 현실의 소득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이종철, 2018, p. 37) 한편으로는 데이터 변화로 인해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분석한 중위소득과 빈곤 및 불평등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는 0.355로 가계동향조사의 0.304보다 약 17% 크다. 또한 2016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빈곤율은 17.6%로 가계동향조사의 14.7%보다 2.9%포인트 높다. 즉,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사이에 뚜렷한 시계열 단절이 존재하는 것이다.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변화로 인한 시계열 단절은 다음과 같이 학술적·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소득분배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학술연구에서 일관된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진다. 과거에는 모집단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장기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길게는 1980년대까지 시계열이 연장되는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 왔다(예를 들어 성명재, 박기백, 2009; 최바울, 2013; 강신욱, 김현경, 2016). 하지만 2017년 이후 소득부문과 지출부문 분리, 소득부문 표본 규모 축소 및 재확대, 소득조사 방식 변경 등으로 인해(통계청, 2018e, p. 6)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이 사실상 단절되었다. 따라서 소득분배 추이 분석 연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역시 최근 행정자료 보완 작업으로 인해 시계열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시계열이 2011년(소득연도)까지밖에 연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³⁾ 따라서 2000년대 이전부터 최근까지의 소득

분배 장기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변화가 기준중위소득의 시계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선정, 급여 기준선으로 활용해 왔다(보건복지부, 2015). 그런데 2017년에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되고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면서,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김태완, 여유진, 김미곤, 이주미, 김명중, 2017, p. 9). [그림 1-1]에서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중위소득을 높게 추정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면 기준중위소득이 7~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김태완 외, 2017, p. 77). 따라서 데이터 변경으로 인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데이터 변경의 영향을 완충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점진적으로 인상할지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각종 사회서비스 등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많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을 둘러싼 논의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현 시기는 한국 소득분배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마이크로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는 이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었고, 학술적 측면에서 가계금융·복지조

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연도와 소득연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 1년 동안의 소득을 조사하였다.

사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두 데이터로 분석한 소득 분포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제 생활수준 향상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인상되어야 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당장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 연구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분석한 소득 분포의 차이를 자세하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과 관련된 학술적·정책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활용 가능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 관찰한 소득 분포의 차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7년 개편 전 가계동향조사와 2019년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서베이 방법으로 조사한 소득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서베이 방법으로 조사한 소득과 행정자료로 보완한 소득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서베이로 조사된 소득 데이터를 ‘조사데이터’, 조사데이터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소득 데이터를 ‘행정보완데이터’로 지칭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를 비교하고 둘째,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를 비교하는 두 단계로 분석을 진행한다.

그렇다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보완데이터로 분석한 소득 분포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베이 방식 소득조사가 실제 소득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표본의 구성이 모집단의 구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확률적·비확률적 오차, 고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의 선택적 무응답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표본으로 충분히 추출되지 못하거나, 표본으로 추출된 고소득층이 응답을 거부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결과적으로 표본에 고소득층이 과소대표될 것이다. 둘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소득을 과소보고(또는 과대보고)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노출을 꺼리는 고소득층이 실제보다 소득을 낮게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표본추출 과정에서 고소득층이 충분히 포착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사된 소득 분포에서 고소득층의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날 것이다.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분포 차이 역시 두 조사의 서베이 방법 차이가 표본 구성과 소득 과소/과대보고 양상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술하듯이 두 조사의 모집단, 표본설계, 소득조사 방법 등의 차이가 작지 않다(제3장 제1절 참조).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집단의 소득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고 서베이 방법의 개별 요소 차이가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적인 소득조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데이터로 관찰한 소득 분포 차이의 원인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를 진단하고자 한다. 첫째, 가구 규모, 성,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 가구 및 개인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다.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 구성이 모두 모집단 구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 이상의 데이터가 모집단 구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차이가 소득 분포 차이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개별 소득원천 분포의 차이를 살펴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소득원천 분포 차이는 표본 구성의 차이와 소득 과소/과대보고 양상의 차이가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근로소득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면, 이는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근로소득이 높은 집단이 표본에 많이 포함되었거나, 근로소득이 높은 집단의 근로소득 과소보고 경향이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는 표본 구성이 동일하므로, 두 데이터 간 소득원천 분포 차이를 소득 과소/과대보고 양상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2] 이 연구의 분석틀

비교 대상	비교 내용	
가계동향조사 조사데이터	가구 및 개인 특성 (가구 규모, 성,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	소득원천 분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소득원천 분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		

자료: 연구진이 직접 작성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를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림 1-2] 참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만으로 데이터 간 소득 분포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데이터 간 서베이 방법 차이와 행정자료 보완이 소득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차별성

이하에서는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하여 이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을 확인한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 및 빈곤 실태에 대

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득분배를 분석하기 위한 마이크로데이터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 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소득분배 실태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가계조사/가계조사(현 가계동향조사)⁴⁾와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2001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중단되었다(강석훈, 2000; 강석훈, 현진권, 2003; 현진권, 임병인, 2004; 강영욱, 2011; 김낙년, 2012a, 2012b; 김낙년, 김종일, 2013; 이원진, 구인회, 2015). 2006년부터 가계동향조사의 모집단이 전국 1인 이상 가구(비농가)로 확대되면서 2000년대 이후 시기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김낙년, 2012a, 2012b; 김낙년, 김종일, 2013; 이원진, 구인회, 2015; 홍민기, 2016, 2017), 최근에는 가계동향조사에 더해 2012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원진, 구인회, 2015; 홍민기, 2016).

주요 선행연구는 주로 국세통계 및 국민계정과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비교·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의 누락이나 소득 과소보고 등의 문제로 인해 가계동향조사가 실제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낮게 추정한다고 비판하였다(김낙년, 2012a, 2012b; 김낙년, 김종일, 2013; 홍민기, 2016, 2017). 대표적인 예로 김낙년, 김종일(2013)은 2010년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고소득층 누락과 금융소득 과소보고 등으로 인한 편향을 보정하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308에서 0.371로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정 전에는 한국의 시장소득 분포가 이상치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평등하기 때문에 조세 및 이전의 재분배 효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OECD 회원국의 중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정

4) 도시가계조사가 2003년 가계조사로, 2008년 가계동향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후에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김낙년, 김종일, 2013, pp. 39-41). 홍민기(2017, p. 5)는 2014년 국세통계와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소득 분포를 비교한 결과, 가계동향조사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과소포착하고 중간소득층을 과대포착하며, 특히 초고소득층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세통계와 가계동향조사를 결합하여 소득 분포를 보정한 결과, 2015년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통계청이 공표한 값인 0.341에서 0.40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민기, 2017, p. 15).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통해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공식 소득분배지표의 문제가 널리 알려졌고, 한국의 실제 소득분배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지니계수와 같이 집계된 요약지표로 소득분배 수준과 추이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시간에 따라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가구 및 개인의 여러 특성이 함께 조사된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크고 여러 시점에 걸쳐 일관된 방식으로 조사된 단일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당분간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보완데이터를 혼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각 데이터로 관찰한 소득 분포의 차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의 시계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이원진, 구인회(2015)는 이와 같은 이 연구의 문제의식을 가장 가깝게 공유하는 선행연구이다. 이들은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검토한 결과, 가계부기장방식 소득조사와 장기간에 걸

처 매월 조사를 실시하는 연동표본설계를 채택하였는지, 아니면 연간소득을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는지 등의 서베이 방법 차이가 소득계층별 무응답 및 소득 과소보고 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이원진, 구인회, 2015, pp. 44-51). 또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관찰한 2011~2012년(소득연도) 소득 분포를 비교해보면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낮게, 고소득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진, 구인회, 2015, p. 54).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2개 연도(2011~2012년, 소득연도)밖에 검토하지 못하는 등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선행연구의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 시점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검토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계동향조사가 집중적으로 검토된 것과 달리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서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검토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통계청의 검토결과를 제외하면, 최근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둘째,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를 자세하게 분석한다. 선행연구는 주로 전체 인구나 근로연령인구의 근로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분포를 검토하는 과제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를 구분하여 접근할 때, 아직 분명한 답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질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작성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살펴보면, 18~65세 인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후자가 높지만 66세 이상 인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전자가 높는데(통계청, 2017e, 2019b),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다른 예로, 서베이로 조사한 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하면 근로소득의 불평등

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연구는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를 분석하여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현황과 변화를 살펴본다. 우선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로 활용되었던 2016년 이전 가계동향조사와 2012년(조사연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혁을 살펴보고, 이 연구의 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2017년 이후 가계동향조사 개편 관련 논의를 정리해 둔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기준중위소득 산출 관련 논의를 간단히 살펴본다.

둘째,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를 비교·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을 높게 추정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이원진, 구인회, 2015, p. 54) 이 연구는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의 관점에서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를 보다 자세하게 기술한다.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개편 이후 사실상 시계열이 단절되었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1년(소득연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는 2011~2016년(소득연도) 시점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비교한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

사 2012~2017년 원자료).

셋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를 비교·분석한다. 통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보여 주는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소득연도) 행정자료 보완 결과 가구소득 평균이 연 5020만 원에서 5478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5분위의 가구소득 평균이 연 1억 1552만 원에서 1억 2921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18c, p. 41). 또한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비율이 10.1%에서 12.7%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b, p. 5). 이 연구는 개별 소득원천 분포를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여 기존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가구 및 개인 특성은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므로,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는 소득원천 분포의 차이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단, 가구 및 개인 특성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가구 및 개인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별 소득원천 분포를 살펴볼 필요성은 존재한다. 통계청은 2017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한해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를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이를 활용한다(통계청, 2017c).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에는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와 2012~2017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비교에는 2017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다(통

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 원자료; 통계청, 2017c).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 지표 분석 방법(통계청, 2019d)을 준용하여 소득 분포를 분석한다. 즉,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 단위로 분석한다(통계청, 2019d, pp. 3-4).⁵⁾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빈곤율은 균등화한 가구소득이 빈곤선보다 작은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분배지표로는 분위별 소득경계값, 분위별 소득점유율, 5분위배율,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 등을 활용한다. 분위별 소득점유율은 전체 인구의 소득합에서 각 분위에 속한 인구의 소득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통계청, 2019d, p. 7). 5분위배율은 소득 분포를 5분위로 구분한 후 5분위(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1분위(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통계청, 2019d, p. 7).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갖는 분배지표로, 값이 클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통계청, 2019d, p. 5).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의 비율로, 빈곤갭비율은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의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통계청, 2019d, pp. 8-10).⁶⁾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설정한다(통계청, 2019d, pp. 8-9).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별도의 개인가중치를 포함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연구는 가구가중치를 개인에게 할당하여 개인가중치로 사용한다.

5) 소득 분포를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구 단위 또는 개인 단위의 선택이 필요하다. 첫째, 측정 단위의 측면에서, 개인소득(예를 들어 개인의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예를 들어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의 개인근로소득의 합)의 선택이 존재한다. 둘째, 분석 단위의 측면에서, 개인 단위 분석(예를 들어 5만 명의 평균 소득)과 가구 단위 분석(예를 들어 2만 가구의 평균 소득)의 선택이 존재한다.

6) 통계청은 소득이 빈곤선 이하일 때 빈곤한 것으로 정의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소득이 빈곤선 미만일 때 빈곤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가 정의한 빈곤갭비율은 통계청의 “평균 빈곤갭”(통계청, 2019d, p. 10)에 해당한다.

2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1-1> 소득 개념 정의

가처분소득 (음수는 0으로 변환)	시장소득 (음수는 0으로 변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자료: 통계청. (2019d). 소득분배지표 이해하기: 작성 방법과 각 지표의 용어를 중심으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10. 1. 인출. p. 4에 제시된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소득 구성 내용을 표로 작성하였다.

소득의 개념은 <표 1-1>과 같이 정의한다. 우선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한다(통계청, 2019d, p. 4).⁷⁾ 다음으로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합에서 공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한다(통계청, 2019d, p. 4). 단,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음수는 0으로 변환한다. 여기서 사적이전지출은 다른 가구나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지출을 의미하고, 공적이전지출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을 의미한다(통계청, 2019d, p. 4).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비경상소득이 별도로 조사되지만, 이 연구의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 이때 가구 규모, 성,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의 특성을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외부 데이터와 비교하여 대략적으로나마 각 데이터의 모집단 대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7) 통계청은 과거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 작성에서는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았으나(통계청, 2011a, p. 68),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 작성에서는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다(통계청, 2019d, p. 4). 이 연구는 현재 기준을 따른다.

다음으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 및 소득원천 분포 차이와 가처분소득 분포 차이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하위 집단으로 분해하거나(decomposition by subgroup) 소득원천별로 분해하는(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만(대표적인 예로 Mookherjee & Shorrocks, 1982; Shorrocks, 1982; Lerman & Yitzhaki, 1985), 이 연구의 목적이 본격적인 소득 불평등 분해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DFL 방법(DiNardo, Fortin, & Lemieux, 1996)으로 데이터에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여 두 데이터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유사하게 조정한 후 소득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재가중하여(reweight) 가구 규모, 성,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의 분포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한 후,⁸⁾ 이처럼 가구 및 개인 특성이 조정된 가상적인(counterfactual) 가계동향조사 소득 분포를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분포와 비교한다. 만약 재가중 후 가상적인 가계동향조사 소득 분포가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소득 분포 차이를 발생시킨 주된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재가중 후에도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가구 및 개인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 내에서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데이터에 대해 근로소득에서부터 출발하여 단계적·누적적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을 합산한 소득의 분포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한다. 예를 들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

8) 구체적인 재가중 절차는 제3장에서 분석 결과와 함께 서술한다.

사가 사적이전소득을 크게 포착한다면(이원진, 구인회, 2015, p. 42), 사적이전소득 추가에 따라 불평등 및 빈곤이 감소하는 효과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소득원천 분포 차이를 중심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를 분석한다. 우선 두 데이터 간 소득원천 분포 차이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별 소득원천의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한 가치분소득 분포의 변화를 살펴본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2017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는 동일한 가구ID/개인ID 변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구 또는 개인 단위에서 조사데이터의 각 소득원천 변수값을 개별적으로 행정보완데이터의 해당 소득원천 변수값으로 대체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사데이터의 근로소득을 행정보완데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대체한 후 가치분소득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해 가치분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⁹⁾

9) 이 보고서의 표와 서술에서는 수치의 합/차이/비율 등을 반올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후 반올림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반올림하여 보고한 개별 수치의 합/차이/비율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장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현황과 변화

- 제1절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혁
- 제2절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논의



2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 현황과 변화

제1절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혁

1. 2010년대 중반까지의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는 한국의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중 가장 긴 시계열을 갖는다. 현재 통계청은 1990년 이후 시기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해당 시기 동안 가계동향 조사의 모집단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1990~2002년에는 2인 이상 동 지역 비농어가를 조사하였고, 2003년에는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인 이상 읍·면 지역 비농어가를 조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1인 이상 비농어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고, 2008년에는 가계동향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통계청, 2011a, p. 4). 즉, 2006년 이후 가계동향조사는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표한다.

2016년 이전의 가계동향조사는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월간 소득과 지출을 함께 조사해 왔다. 2009년에는 캔버라그룹의 권고에 따라 소득 분류체계를 개편하였는데(통계청, 2011a, p. 3), 통계청은 구분류체계에 따라 조사된 1990~2008년의 소득 데이터를 신분류체계에 맞추어 추계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한편 2005년에는 매년 전체 표본의 3분의 1을 교체하는 방식의 연동표본설계를 도입하였다(통계청, 2011a, p. 26). 이와 같은 과정을 거

처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1인 이상 비농어가 표본, 연동표본설계, 월간소득 가계부기장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소득조사의 형태를 갖추었고, 이러한 형태로 2016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어 왔고,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해당 소득분배지표 시계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통계청, 2018a). 가계동향조사의 모집단이 시간에 따라 확대되었기 때문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시계열 분석 결과도 이에 따라 여러 개로 제공되고 있다. 통계청은 1990~2016년 기간에 대해 도시 2인 이상 비농가 대상 시계열을, 2003~2016년 기간에 대해 전국 2인 이상 비농가 대상 시계열을 제공하고 있고, 2006~2016년 기간에 대해서는 농가경제조사를 결합하여 농가를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가구 대상 시계열을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2018a). 현재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결합하여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활용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원격접속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0년대 초반까지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분배의 장기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마이크로데이터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성명재, 박기백, 2009; 성명재, 2011; 최바울, 2013; 김대일, 이석배, 황윤재, 2014; 정지운, 임병인, 김주현, 2014; 강신욱, 김현경, 2016; 정준호, 전병유, 장지연, 2017).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계동향조사가 고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 수준을 과소추정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김낙년, 김종일, 2013; 홍민기, 2016, 2017).

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행

가계동향조사가 소득과 지출의 결합분포 분석에 특화된 데이터라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 분석에 특화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2010~2011년에 가계자산조사(통계청),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가구패널조사(한국은행)를 통합하여 두 차례 가계금융조사가 실시되었고, 2012년에 표본을 2만 가구로 확대하고 복지부문을 추가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시작되었다(통계청, 2018b, p. 3). 2012~2014년에는 패널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횡단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표본이 교체되는 연동표본설계를 도입하였다(통계청, 2018b, p. 3).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간 소득을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근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데이터를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기본적으로 자산 및 부채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소득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한 지니계수가 가계동향조사로 산출한 공식 지니계수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논란이 되었다(통계청, 2013, pp. 1-3). 2013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함께 배포한 통계청의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2012년(소득연도) 가계동향조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07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53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 p. 1). 이에 통계청은 소득조사 방법, 가구 정의, 사업소득 개념의 차이를 두 데이터 간 소득분배지표 차이의 잠재적인 원인으로 설명하였다(통계청, 2013, p. 2). 하지만 두 데이터 중 어느 것이 현실의 소득 분포를 보다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

과로 산출된 지니계수를 공식지표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통계청, 2013, p. 3).

하지만 가계동향조사가 소득 불평등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추정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고(김낙년, 김종일, 2013) 결국 2017년에 통계청은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층의 표본 대표성이 높고 연간 행정자료 활용이 가능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다(통계청, 2017b, p. 2). 이에 따라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2011년(소득연도) 이후 기간에 대해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 데이터로 산출한 소득분배지표를 제공하고 있고(통계청, 2019a), [그림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2016년 기간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다(통계청, 2018a, 2019a). 현재 통계청은 2012~2016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2017~2018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2017년(조사연도)의 경우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원격접속시스템을 통해 조사데이터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아직까지 시계열이 길지 않아 소득분배 장기 추이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를 분석한 연구(전병유, 정준호, 2014; 김진욱, 2015), 자산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소득을 보정한 연구(이종철, 2018)에서 사용되는 등 점차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3. 2017년 이후 가계동향조사의 변화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면서,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부터 가계지출조사로 특화하고 소득조사는 2017년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 후 폐지하는 방향의 개편이 계획되었다(통계청, 2018f, p. 1). 이에 따라 2017년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분리하고 소득부문 표본을 2016년 약 8700가구에서 2017년 약 5500가구로 축소하였으며, 기존의 가계부기장방식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소득조사 방법을 변경하였다(통계청, 2018e, p. 6). 하지만 분기소득통계와 소득분배 장기 추이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요구에 따라 2018년에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 표본을 다시 약 8000가구로 확대하여 소득조사를 진행하였다(통계청, 2018f, p. 1, p. 8).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조사는 표본추출틀을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15년 인구총조사로 교체하고 표본 규모를 확대하면서 고령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득통계의 시계열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통계청, 2018g, p. 1).

한편 2018년 이후에는 가구 단위 소득 및 지출의 연계 분석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다시 통합하는 개편이 추진되었다(통계청, 2018f, p. 1). 통합 가계동향조사는 기존 가계동향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다목적표본을 활용한 것과 달리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전용표본을 활용하고, 농어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통계청, 2018f, p. 8). 2019년에는 기존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조사와 통합 가계동향조사를 한시적으로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2020년부터는 통합 가계동향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통계청, 2018f, p. 8).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 시계열은 사실상 2016년을 끝으로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표본 규모 축소,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의 분리, 면접조사 방식에서의 소득조사 방법 변경 등을 고려할 때 2016년과 2017년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를 일관된 시계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가계동향조사는 전용표본을 활용한 통합조사가 시작된 2019년부터 새로운 시계열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통합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가 공개되면 통합조사를 통해 관찰한 소득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고 통합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논의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장, 2014, p. 2).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최저생계비 방식이 아닌 최저보장수준과 기준중위소득을 정의하였다(보건복지위원장, 2014, p. 3). 그리고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상으로 한다고 법률안에 명시하여 급여의 기준을 정했다(보건복지위원장, 2014, pp. 3-4). 이렇게 각각의 욕구별, 급여별로 기준선이 차별화되었다는 점이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강신욱, 2016), 이런 점에서 욕구별 급여 또는 맞춤형 급여라 칭하게 되었다.

급여 기준선이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 기준선 대

신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기준선이 사용되었다(강신욱, 2016, p. 21). 법 개정에 따라서 2015년 적용된 급여기준은 <표 2-1>의 오른쪽에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해 상반기 적용된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기준 및 생계급여 상한은 왼쪽에 제시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의 28%에서 30%로 증액하기로 한 상황에서 기존 생계급여 상한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 제시된바 기존의 최저생계비 계측과 기준중위소득을 이용한 급여 기준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표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전후의 주요 기준선 비교(2015년)

(단위: 원/월)

개편 전 주요 기준선 (2015년 1~6월)			개편 후 급여별 선정 기준선 (2015년 7~12월)		
주요 기준선	1인 가구	4인 가구	급여명 (기준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4인 가구
최저생계비 (A)	617,281	1,668,329	생계급여(28%)	437,454	1,182,309
타 지원액 (B)	117,993	318,901	의료급여(40%)	624,935	1,689,013
현금급여 기준 (C=A-B)	499,288	1,349,428	주거급여(43%)	671,805	1,815,689
주거급여 상한 (D)	110,003	297,306	교육급여(50%)	781,169	2,111,267
생계급여 상한 (E=C-D)	389,285	1,052,122			

자료: 강신욱. (2016).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 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41. p. 22.

1. 2015년 기준중위소득 신규 적용의 쟁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는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

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 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6367호).

이때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이 공표하는 어떤 소득통계 자료를 이용할 것인가이다. 법 개정 이후 기준중위소득을 정해야 할 당시에는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와 농어가조사의 통합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조사자료가 존재하였다. 둘째,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에서 ‘최근’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이다. 상대적 기준선을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급여가 이뤄지는 올해의 상대적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 회고적 방식을 이용하는 소득조사 자료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보통 1, 2년 전 소득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고려하면, 가구소득의 증가율을 이용하여 이를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¹⁰⁾ 만약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는 경우 가장 최신 자료로부터 2년 후의 소득을 예측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는 경우 3년 후의 소득을 예측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셋째,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이다.

법 제6조의2의 2항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4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자료가 OECD 통계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되는 대

10) 예를 들어 202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는 2019년 6~7월 시점에서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2018년 기준 소득자료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2017년 기준 소득자료가 공개된다. 이를 이용해서 2020년 기준의 소득 분포를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표적 소득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이를 채택하고 2015년 4월 24일 발표된 2014년 기준중위소득 수치를 활용하기로 하고, 제도적 안정성과 최근 경제 동향 반영을 고려하여 가구소득 증가율은 3년(2011~2012년, 2012~2013년, 2013~2014년)의 연도별 증가율 산술평균을 사용하되, 2013년에는 소득조사 자료에서 표본 추가가 문제가 된 농어가조사는 제외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즉, 통계자료는 가계동향조사 및 농어가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가구소득 증가율은 최근 3년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다.

2. 기준중위소득 적용 데이터 변경의 쟁점

〈표 2-2〉는 앞서 설명한 내용 중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의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2017년 적용 기준중위소득의 예와 더불어 2018년 기준중위소득 산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2017년 적용 기준중위소득의 책정 방식을 살펴본다. 가계동향조사(농어가 제외) 2012년 자료를 활용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386만 6795원이고, 같은 방식으로 농어를 제외한 2013년 중위소득은 400만 원이다. 이때의 증가율은 3.44%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2013~2014년의 증가율은 3.14%, 2014~2015년의 증가율은 3.19%이며, 3개 증가율의 산술 평균값은 3.26%이다. 이 증가율을 T(측정년도, 2015년)+1년에 적용한 것이 2016년의 가상값이고, 이 가상값에 다시 증가율을 적용한 것이 2017년에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2018년에 적용할 기준중위소득(445만 2475원)은 2017년 적용한 기준중위소득(446만 7380원)보다 오히려 작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2017

38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년 적용한 기준중위소득에 2015년 대비 2016년 4인 가구 중위소득 증가율 1.16%를 반영한 451만 9202원으로 결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표 2-2> 2017~2018년 기준중위소득 산정 결과

(단위: 원/월, 4인 가구 기준)

연도	'17년 적용 기준중위소득	'18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값	비고	
'18년	-	4,452,475원(2.49%, 2018 산출)	최종 확정값은 4,519,202원	
'17년	4,467,380원(3.26%, 2017 적용)	4,344,161원(2.49%)		
'16년	4,326,341원(3.26%)	4,238,482원 (1.16%)	3년 평균 증가율 2.49%	
'15년	4,189,755원 (3.19%)	4,189,755원 (3.19%)		2018년 기준값
'14년	4,060,128원 (3.14%)	4,060,128원 (3.14%)		2017년 기준값
'13년	3,936,622원 4,000,000원★ (3.44%)	3,936,622원	★ 농어가 제외	
'12년	3,866,795원★	-		

주: 음영 표시한 소득값은 실측한 1인 중위소득의 2.7배(4인 가구 기준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다. 자료: 김태완, 여유진, 김미곤, 이주미, 김명중. (2017). 기준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9를 일부 수정하였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최종 확정값은 다음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 (2017).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7. 31.). <http://www.mohw.go.kr>에서 2020. 1. 20. 인출. p. 2.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 가계동향조사 2016년 소득의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2016년의 소득증가율이 적용되는 3년간은 낮은 급여인상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 즉,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하였던 기준중위소득의 책정 방식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그사이 보다 큰 쟁점이 등장한다. 2015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근거 중 하나는

이 자료가 OECD 제출 통계 등 공신력이 더 강하다는 점이었다(보건복지부, 2015, p. 3). 그렇지만 이후 OECD 제공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화하였으며(통계청, 2019d, p. 1),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조사 자료를 보완함으로써(통계청, 2019d, p. 13) 공신력이 더 커졌다.

결국 2020년 적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방식의 변주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먼저 증가율은 2019년 적용 461만 3536원보다 2.94% 인상된 474만 9174원으로 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p. 2).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적용된 인상률 2.94%는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간 인상률 1.66%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간 인상률 4.21%의 중간값이다(홍정훈, 2019, p. 48). 이 인상률은 가계동향조사의 낮은 인상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다른 인상률을 찾는 과정에서 타협의 산물로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자료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최초로 활용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활용은 한국 사회의 소득 분포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쟁점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한 중위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복지 급여의 확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할 필요를 강조한다(참여연대, 2019). 그렇지만 2015년 소득조사 자료를 결정하던 시기에는 가계농어가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중위소득을 100으로 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2011년 97.3%, 2012년 99.1%로 더 낮았다가 2013년에야 100.9% 수준으로 더 높아졌다(강신욱, 2015). 결국은 당시 상황에서 한국의 소득 분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통계자료라는 것은 하나의 판단 영역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급여 기준을 정하는 것(생계급여의 28%와 같은)은 보다 큰 정치적 판단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이 현재와 같이 낮은 인상률로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상대적 빈곤선 적용은 한 사회가 보여 주는 후생 수준의 증가에 빈곤층의 생활수준도 부합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두 조사의 측정치가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제 3 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제1절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조사

내용 및 방법

제2절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비교 분석

제3절 가구 및 개인 특성 비교 분석

제4절 소득원천 분포 비교 분석

제5절 소결



3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제1절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조사 내용 및 방법

이 장에서는 2011~2016년(소득연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를 비교·분석한다.¹¹⁾ 분석에 앞서 이 절에서는 통계청의 각종 보고서, 지침서, 보도자료,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이용자 제공 정보 등을 종합하여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차이를 정리해둔다. 시간에 따라 두 조사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표 3-1>과 <표 3-2>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두 조사의 서베이 방법과 소득 항목 구성을 정리하였고 <표 3-3>에는 두 조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요약하였다.

<표 3-1>에는 두 조사의 서베이 방법 차이를 요약하였다. 먼저 모집단을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전국 전 가구를 대표하는 것과 달리 가계동향조사는 농가를 제외한 가구를 대표한다. 다음으로 표본설계와 소득조사 방식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는 36개월 동안 매월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소득을 조사하는 연동표본설계를 채택한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5년 동안 매년 면접조사 방식으로 연간소득을 조사하는 연동표본설계를 채택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패널표본설계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에 따른 패널탈락으로 인해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소득연도)부터 연동표본설계로 변경하였다. 한편 가계동향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조사구에서 추출한 다목적표본을 활용하였

11)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연도와 소득연도가 불일치하는데, 이 장의 서술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소득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를 표시한다.

4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다. 가구 개념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는 학업이나 직장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을 제외하였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생계를 같이한다면 이들을 가구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단, 2016년(소득연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시설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군대에 입대한 가족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구원에서 제외하였다(통계청, 2018d, I. 조사개요, 10. 2017년 주요변경사항). 두 조사 모두 층화표본추출을 실시하였는데, 가계동향조사가 시도와 동/읍면을 기준으로 층화한 반면(통계청, 2011a, p. 24)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시도와 동/읍면에 더해 주택유형(일반/아파트/대형아파트)을 추가하여 층화하였다(통계청, 2018d, II. 표본설계, 1. 표본설계).

<표 3-1> 2016년(소득연도) 기준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서베이 방법

구분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모집단	전국 비농가 가구	전국 전 가구
표본설계	월 단위 교체 연동표본(36개월 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조사구에서 표본 추출	연 단위 교체 연동표본(5년 조사)
층화기준	시도, 동/읍면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일반/아파트/대형아파트)
가구 개념	학업, 직장 등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제외	학업, 직장 등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포함
소득조사 방식	월간소득 가계부기장	연간소득 면접조사

자료: 통계청이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이용자 제공 정보, 보도자료, 보고서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아래).

통계청. (2011a).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http://mdis.kostat.go.kr>에서 2019. 10. 8. 인출; 통계청. (2013). 소득분배지표 현황 및 개선방안(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참고자료). 통계청 보도 참고자료. <http://kostat.go.kr>에서 2019. 7. 7. 인출; 통계청. (2018b).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통계정보 보고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8. 22. 인출; 통계청. (2018f).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안).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에서 2019. 7. 7. 인출.

<표 3-2>에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설계서 및 조사표의 여러 소득 항목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소득 및 비소비지출 항목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작지 않기 때문에 <표 3-2>는 2016년(소득연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3-2> 2016년(소득연도) 기준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항목 구성

구분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가구전입소득으로 조사	*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으로 조사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수입, 퇴직연금수입, 기타 재산소득, 주택 등 임대소득 * 수입으로 조사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으로 조사
사적이전 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할인혜택, 기타 이전소득 * 가구 간 이전소득 현물 미포함	가구 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 * 현물 포함, 할인혜택 미포함
사적이전 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 가구 간 이전지출 현물 미포함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 가구 간 이전지출 현물 포함
공적이전 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 세금환급금 미포함
공적이전 지출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주: 가계동향조사의 주택 등 임대소득은 통계청의 설계서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이 표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일관된 비교를 위해 재산소득으로 분류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사회적 현물이전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통계청이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이용자 제공 정보, 조사표, 보도자료, 보고서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아래).

통계청. (2011a).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http://mdis.kostat.go.kr>에서 2019. 10. 8. 인출; 통계청. (2013). 소득분배지표 현황 및 개선방안(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 참고자료). 통계청 보도 참고자료. <http://kostat.go.kr>에서 2019. 7. 7. 인출; 통계청. (2017d).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10. 1. 인출; 통계청. (2018d).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7. 7. 인출;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설계서 및 코드집. <https://mdis.kostat.go.kr>에서 2019. 10. 7. 인출.

큰 틀에서 두 조사의 소득을 비교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부적으로는 소득의 구성과 측정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사업소득을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에 전입된 소득으로 조사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으로 조사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통계청, 2013, p. 2). 이러한 차이로 인한 영향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은데, 수입에서 유보분을 남긴다면 가구전입소득보다 순소득이 많을 수 있지만 수입을 우선적으로 가구에 전입한다면 가구전입소득이 순소득보다 많을 수도 있다(통계청, 2014, p. 107).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6년(소득연도)부터 재산소득도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으로 조사하고 있어(통계청, 2018d, I. 조사개요, 10. 2017년 주요변경사항) 재산소득을 수입으로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와의 차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가계동향조사에서 2011년까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소득이 아닌 기타 수입으로 조사하였다는 점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재산소득 중에서는 임대소득의 분류가 간단하지 않다. 가계동향조사 설계서에서는 토지가 아닌 주택 등으로부터의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만(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설계서 및 코드집),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주택, 건물, 토지 등으로부터의 임대소득을 재산소득으로 조사한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일관된 비교를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주택 등 임대소득을 재산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원천을 구성하였다. 단,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임대사업등록자의 임대수입을 2014년(소득연도)까지 사업소득으로 조사하였으나 2015년(소득연도)부터 재산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다(통계청, 2019c, p. 9).

공적이전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존재하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육료 및 의료비 지원 등 “용도가 정해져 있

어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조사하지 않는 반면(통계청, 2017a, p. 115), 가계동향조사에서는 “특정 계층(장애인, 노인, 생활보호대상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조사하였다(통계청, 2011a, p. 37). 단, 과거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할 때는 사회적 현물이전을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고, 이 연구의 분석에서도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일관된 비교를 위해 사회적 현물이전을 제외한다. 만약 사회적 현물이전을 포함하면 소득 분포가 크게 달라지는데 유경준, 김서영, 홍경희(2018, p. 18)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 평균 소득을 15% 증가시키고,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에서 현물을 고려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 간 현물이전을 조사하지 않은 반면(통계청, 2011a, p. 3),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016년(소득연도)부터 사적이전소득과 가구 간 이전지출에 현물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통계청, 2018d, I. 조사개요, 10. 2017년 주요변경사항).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016년(소득연도)부터 경조비를 가구 간 이전지출에 포함하여 조사한다(통계청, 2018d, I. 조사개요, 10. 2017년 주요변경사항).

마지막으로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되는 할인혜택과 세금환급금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는다. 단,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후 소득세를 조사한다(통계청, 2017a, p. 41). <표 3-3>에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요약해 두었다. 전반적으로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새로 조사가 시작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설계, 소득 항목 구성과 측정 등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작지 않았다.

48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3> 2011년(소득연도) 이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변화

구분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년	-	•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작
2012년	• 과거 기타 수입으로 조사되었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재산소득으로 조사	• 고용보험, 산재보험급여, 농어업정부보조금 항목 삭제 • 양육수당 항목 신설
2013년	-	-
2014년	-	• 패널표본에서 5년 주기 연동표본으로 변경
2015년	-	• 재산소득 세분화(금융소득/임대수입/기타) • 과거 사업소득으로 조사되었던 임대사업등록자의 임대수입을 재산소득으로 조사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 신설
2016년	-	• 과거 가구원에 포함되었던 시설 장기거주자, 군입대 가족을 가구원에서 제외 • 사적이전소득 세분화(가구 간 이전소득/비영리단체이전소득) • 과거 사적이전소득에 현물을 미포함하였으나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 과거 가구 간 이전지출에 현물을 미포함하였으나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 과거 수입 개념으로 조사되었던 재산소득을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개념으로 조사 • 비소비지출 조사단위를 가구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 과거 소비지출로 조사되었던 경조비를 가구 간 이전지출로 조사

주: 연도는 모두 소득연도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이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이용자 제공 정보, 조사표, 보고서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아래).
 통계청. (2011a).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http://mdis.kostat.go.kr>에서 2019. 10. 8. 인출; 통계청. (2018d).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7. 7. 인출;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10. 1. 인출;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설계서 및 코드집. <https://mdis.kostat.go.kr>에서 2019. 10. 7. 인출.

제2절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비교 분석

이 절에서는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를 살펴본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농가가 제외되기 때문에, 일관된 비교를 위해 이 장의 분석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제외한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 개념이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한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¹²⁾ 이를 위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이하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가와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 범주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분석해보았다(통계청, 2016a).¹³⁾ 201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 표본 가구의 94.3%를 차지하는 가계동향조사 가구 중 가구주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 표본 가구의 5.7%를 차지하는 농가경제조사 가구 중 가구주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12.7%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추론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농가를 제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할 때, $0.4\% (=94.3\% \times 0.4\%)$ 의 비농가를 잘못 제외하고 $0.7\% (=5.7\% \times 12.7\%)$ 의 농가를 제외하지 못하게 된다. 즉, 약 1%의 오차를 한계로 남겨둔다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한 후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1~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2) 가계동향조사에서 제외하는 농가는 경지를 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농축산물 판매액이 연 5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로 정의된다(통계청, 2011a, p. 22).

13)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에는 가구주 산업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부터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였다(통계청, 2016a; 통계청, 2016b).

에서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의 비율은 연도별로 5.6~6.9%이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 원자료).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연도별 사례 수는 8947~1만 721가구, 2만 2666~3만 528명이고,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사례 수는 1만 6498~1만 8257가구, 4만 6407~5만 3015명이다(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 원자료).

<표 3-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장에서는 여러 소득 및 비소비지출 항목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단, 2011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이 장에서는 모든 소득을 각 시점의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14)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0원 초과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은 0.6%에 불과하고, 전체 가구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평균은 연 3만 원이다(비균등화 가구소득 가구 단위 분포 기준)(통계청, 2012).

〈표 3-4〉 이 장의 분석을 위한 소득원천 구성

구분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년	2012~2016년	2011년	2012~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재산소득, 주택등입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수입, 퇴직연금수입, 기타 재산소득, 주택등입대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 재산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기타 사적이전소득	합인혜택, 기타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비영리단체이전소득	
사적이전 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이전지출	비영리단체이전지출	비영리단체이전지출			
공적연금 소득	공적연금	공적연금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공적이전 소득	기타 공적이전소득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정무보조금, 농어업 정무보조금, 기초보장 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정무보장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세금	정상조세	세금			
공적이전 지출	사회보험료	연금, 사회보장	공적연금·사회보험료			

주: 연도는 모두 소득연도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이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이용자 제공 정보, 조사표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이래).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10. 1. 인출;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설계서 및 코드 집. <https://mdis.kostat.go.kr>에서 2019. 10. 7. 인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비교·분석한다. 우선 <표 3-5>와 [그림 3-1]에는 두 데이터로 관찰한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를 제시하였다. 현재 2011~2016년 기간에 대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통계청이 작성한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이 공개되어 있지만 첫째, 두 시계열의 가처분소득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¹⁵⁾ 둘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분석한 시계열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일한 개념의 가처분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와 그림을 살펴보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횡단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높게 추정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연도별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처분소득 평균은 가계동향조사의 111.8~115.4%로, 가처분소득 중위값은 가계동향조사의 102.8~107.0%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의 114.5~117.4%로 나타났다.

15)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의 가처분소득은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고(통계청, 2011a, p. 68),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의 가처분소득은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값이다(통계청, 2019d, p. 4).

(표 3-5)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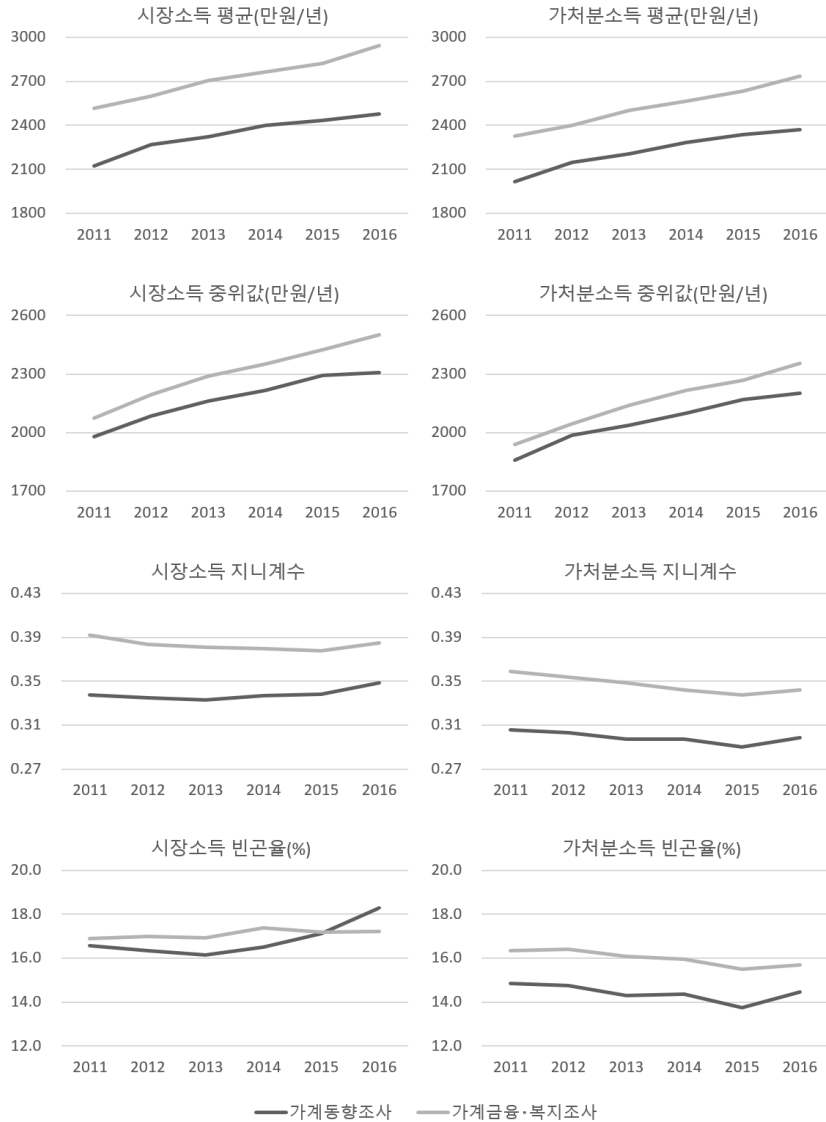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장 소득	평균 (만 원/년)	동향(A)	2124	2269	2322	2401	2436	2475
		금복(B)	2514	2602	2708	2763	2824	2944
		B/A(%)	118.4	114.7	116.6	115.1	115.9	118.9
	중위값 (만 원/년)	동향(A)	1977	2085	2162	2216	2294	2306
		금복(B)	2075	2193	2290	2350	2425	2500
		B/A(%)	104.9	105.2	105.9	106.1	105.7	108.4
	지니계수	동향(A)	0.338	0.335	0.333	0.337	0.338	0.349
		금복(B)	0.392	0.384	0.381	0.380	0.378	0.385
		B/A(%)	116.1	114.6	114.4	112.7	111.8	110.4
	빈곤율 (%)	동향(A)	16.6	16.3	16.2	16.5	17.1	18.3
		금복(B)	16.9	17.0	16.9	17.4	17.2	17.2
		B/A(%)	101.9	104.0	104.8	105.3	100.4	94.1
가처분 소득	평균 (만 원/년)	동향(A)	2015	2149	2205	2282	2335	2371
		금복(B)	2325	2402	2503	2564	2632	2734
		B/A(%)	115.4	111.8	113.5	112.4	112.7	115.3
	중위값 (만 원/년)	동향(A)	1859	1988	2038	2101	2168	2200
		금복(B)	1938	2044	2141	2216	2269	2353
		B/A(%)	104.2	102.8	105.1	105.5	104.7	107.0
	지니계수	동향(A)	0.306	0.303	0.297	0.298	0.290	0.299
		금복(B)	0.359	0.354	0.349	0.342	0.338	0.342
		B/A(%)	117.4	116.7	117.2	115.0	116.3	114.5
	빈곤율 (%)	동향(A)	14.8	14.7	14.3	14.4	13.8	14.5
		금복(B)	16.3	16.4	16.1	15.9	15.5	15.7
		B/A(%)	110.1	111.2	112.5	111.0	112.7	108.4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모두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5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그림 3-1]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주: <표 3-5>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그런데 [그림 3-1]에서 2011~2016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가 시간에 따라 다소 변화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우선 2011~2012년에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의 데이터 간 차이가 감소하였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패널탈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3-5>에서 보듯이 2011~2012년에 시장소득 평균과 지니계수의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비율이 각각 118.4%에서 114.7%로, 116.1%에서 114.6%로 감소하였는데, 만약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고소득층이 2차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탈락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가능한 가설 중 하나일 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패널탈락 양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2015~2016년에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과 중위값의 데이터 간 차이가 확대되고,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데이터 간 차이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게다가 시장소득 빈곤율의 경우 2011~2014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빈곤율이 높지만 2016년에는 가계동향조사의 빈곤율이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 2015~2016년에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가 다소 불안정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에 <표 3-6>과 [그림 3-2]에서는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10분위 경계값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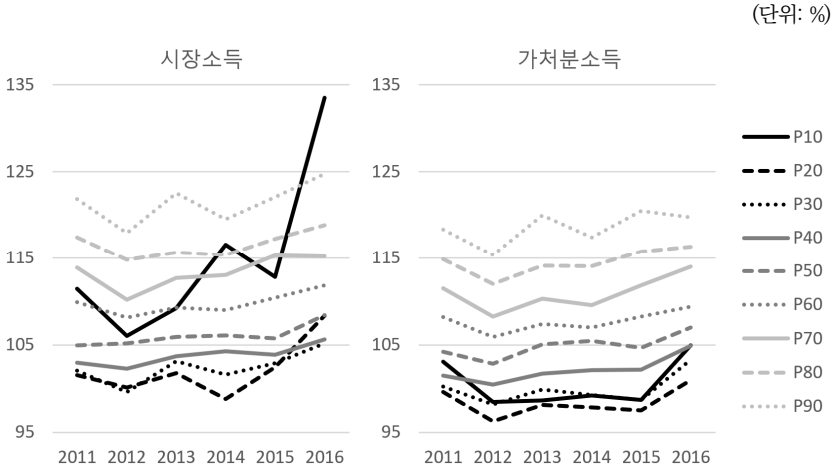
16) 농가 포함 여부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부표 1>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표 3-5>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횡단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높게 추정한다는 점,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비율이 2011~2012년에 감소하였다가 2015~2016년에 다시 증가한다는 점,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크지만 데이터 간 차이가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낮지만 2015~2016년에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 <표 3-5>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표 3-6)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10분위 경계값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A) 금액(A)	B/A(%)	동향(A) 금액(B)	B/A(%)	동향(A) 금액(B)	B/A(%)	동향(A) 금액(B)	B/A(%)	동향(A) 금액(B)	B/A(%)	동향(A) 금액(B)	B/A(%)	
시장 소득	P10	565	629	111.4	622	660	106.1	626	684	109.2	582	679	116.6
	P20	1064	1080	101.5	1154	1155	100.1	1191	1212	101.8	1235	1220	98.8
	P30	1408	1437	102.1	1506	1500	99.6	1552	1600	103.1	1604	1650	101.6
	P40	1699	1750	103.0	1806	1848	102.3	1861	1930	103.7	1916	1998	104.3
	P50	1977	2075	104.9	2085	2193	105.2	2162	2290	105.9	2216	2350	106.1
	P60	2238	2460	109.9	2392	2587	108.2	2471	2700	109.3	2550	2780	109.0
	P70	2555	2910	113.9	2753	3034	110.2	2823	3180	112.7	2912	3291	113.0
	P80	3002	3525	117.4	3214	3690	114.8	3306	3824	115.7	3430	3956	115.3
	P90	3787	4614	121.8	4012	4730	117.9	4058	4971	122.5	4276	5110	119.5
	P100	723	745	103.1	781	769	98.4	809	798	98.7	851	845	99.2
가처분 소득	P20	1099	1095	99.6	1187	1142	96.3	1245	1221	98.1	1277	1249	97.8
	P30	1381	1384	100.2	1472	1446	98.2	1535	1534	99.9	1599	1588	99.3
	P40	1626	1651	101.5	1726	1735	100.5	1794	1825	101.7	1848	1886	102.1
	P50	1859	1938	104.2	1988	2044	102.8	2038	2141	105.1	2101	2216	105.5
	P60	2103	2275	108.2	2249	2382	105.9	2318	2489	107.4	2402	2570	107.0
	P70	2387	2661	111.5	2557	2768	108.2	2631	2902	110.3	2726	2986	109.5
	P80	2777	3189	114.9	2960	3317	112.0	3027	3455	114.1	3130	3570	114.1
	P90	3458	4092	118.3	3663	4227	115.4	3688	4423	119.9	3893	4570	117.4
	P100	894	894	100.0	894	894	100.0	894	894	100.0	894	894	100.0
	P200	1329	1329	100.0	1329	1329	100.0	1329	1329	100.0	1329	1329	100.0
P300	1649	1649	100.0	1649	1649	100.0	1649	1649	100.0	1649	1649	100.0	
P400	1931	1931	100.0	1931	1931	100.0	1931	1931	100.0	1931	1931	100.0	
P500	2200	2200	100.0	2200	2200	100.0	2200	2200	100.0	2200	2200	100.0	
P600	2479	2479	100.0	2479	2479	100.0	2479	2479	100.0	2479	2479	100.0	
P700	2796	2796	100.0	2796	2796	100.0	2796	2796	100.0	2796	2796	100.0	
P800	3247	3247	100.0	3247	3247	100.0	3247	3247	100.0	3247	3247	100.0	
P900	3975	3975	100.0	3975	3975	100.0	3975	3975	100.0	3975	3975	100.0	
P1000	4759	4759	100.0	4759	4759	100.0	4759	4759	100.0	4759	4759	100.0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금액'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그림 3-2]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10분위 경계값 비율



주: <표 3-6>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각 분위 경계값을 가계동향조사의 각 분위 경계값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먼저 횡단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소득을 크게 추정하는 효과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시장소득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P10이 가계동향조사 P10의 106.1~133.5%로 크게 추정되지만, P20과 P30은 두 데이터가 대체로 유사하고, P40 이상 구간에서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계값 비율이 증가한 결과,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P90을 17.9~24.8% 크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고소득층의 소득을 크게 추정하는 것이다. 한편 가처분소득을 살펴보면 시장소득과 유사하게 P20 이상 구간에서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계값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증감이 있지만 대체

로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제값 비율이 2011~2012년에 감소하였다가 2016년까지 증가하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2012년 이후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소득을 더 크게 포착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장소득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P10 비율이 시간에 따라, 특히 2015~2016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에서 보았듯이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P10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가계동향조사의 P10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5~2016년 가계동향조사 P10은 연 599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P20 역시 연 1240만 원에서 1195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5~2016년에 두 데이터의 시장소득 분포 차이의 패턴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3-5>에서 2015~2016년에 두 데이터에서 모두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는 최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최저소득층에 비해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시장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5~2016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장소득 빈곤율의 역전을 설명해 준다.

다음으로 <표 3-7>과 [그림 3-3]에는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를 보고하였다. 아동인구(0~17세), 근로연령인구(18~64세), 노인인구(65세 이상)를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 및 불평등이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인구와 마찬가지로 아동인구, 근로연령인구, 노인인구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대체로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추이가 두 데이터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표 3-7〉 2011~2016년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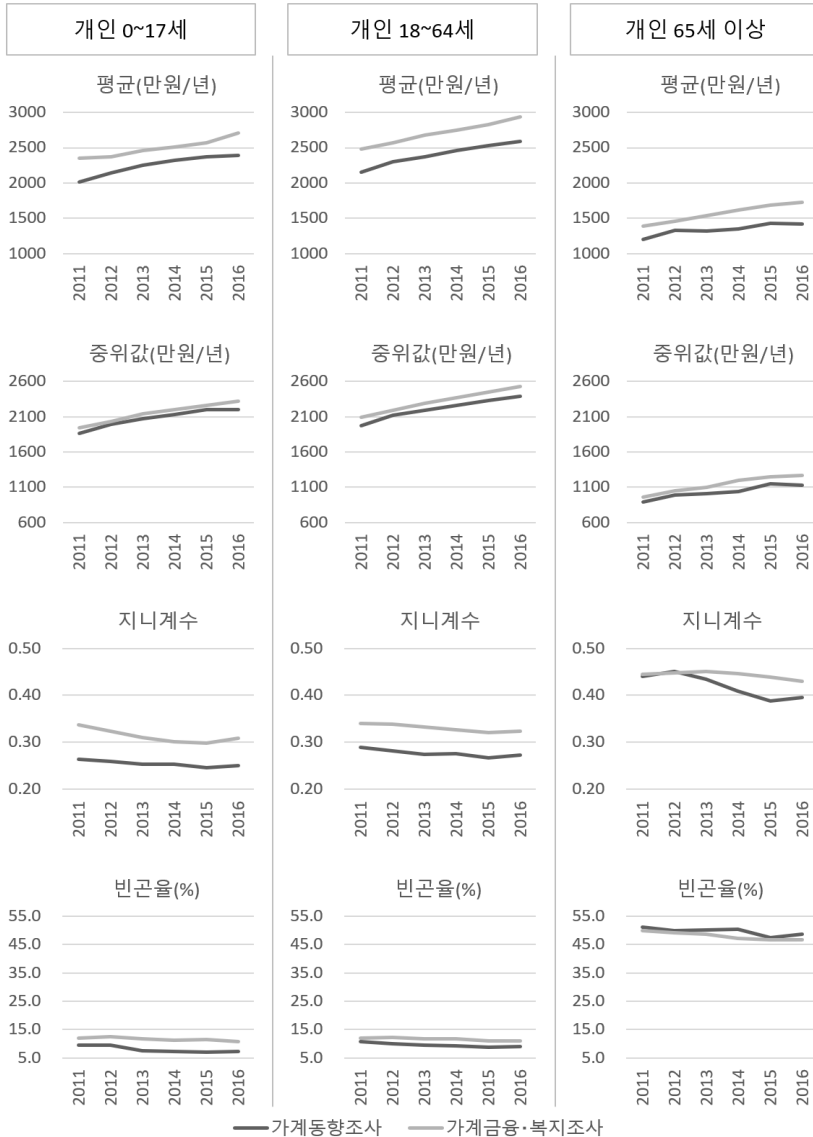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인 0~17세	평균 (만 원/년)	동향(A)	2011	2148	2251	2327	2373	2395
		금복(B)	2349	2374	2459	2510	2570	2711
		B/A(%)	116.8	110.6	109.3	107.9	108.3	113.2
	중위값 (만 원/년)	동향(A)	1865	1991	2070	2129	2200	2205
		금복(B)	1939	2028	2144	2202	2260	2316
		B/A(%)	104.0	101.8	103.6	103.4	102.7	105.0
	지니계수	동향(A)	0.264	0.260	0.253	0.253	0.246	0.251
		금복(B)	0.337	0.324	0.310	0.302	0.298	0.309
		B/A(%)	127.8	124.7	122.7	119.3	120.8	123.1
	빈곤율 (%)	동향(A)	9.6	9.5	7.6	7.3	7.1	7.2
		금복(B)	12.0	12.4	11.7	11.4	11.4	10.8
		B/A(%)	124.3	130.3	154.6	156.0	160.5	150.1
개인 18~64세	평균 (만 원/년)	동향(A)	2158	2306	2371	2465	2526	2588
		금복(B)	2480	2566	2683	2748	2826	2938
		B/A(%)	115.0	111.3	113.2	111.5	111.9	113.5
	중위값 (만 원/년)	동향(A)	1973	2123	2195	2264	2334	2389
		금복(B)	2087	2189	2286	2373	2444	2531
		B/A(%)	105.8	103.1	104.1	104.8	104.7	106.0
	지니계수	동향(A)	0.289	0.282	0.274	0.275	0.267	0.274
		금복(B)	0.341	0.338	0.333	0.326	0.320	0.323
		B/A(%)	118.0	120.0	121.4	118.5	119.7	118.2
	빈곤율 (%)	동향(A)	10.7	10.1	9.5	9.4	8.6	9.0
		금복(B)	11.9	12.3	11.8	11.8	10.9	11.1
		B/A(%)	111.5	121.3	123.7	125.8	126.2	123.2
개인 65세 이상	평균 (만 원/년)	동향(A)	1203	1334	1323	1354	1427	1421
		금복(B)	1388	1459	1543	1622	1685	1724
		B/A(%)	115.4	109.4	116.6	119.8	118.1	121.3
	중위값 (만 원/년)	동향(A)	891	991	1013	1037	1152	1129
		금복(B)	964	1049	1100	1200	1245	1266
		B/A(%)	108.2	105.9	108.5	115.7	108.0	112.1
	지니계수	동향(A)	0.440	0.452	0.434	0.409	0.389	0.396
		금복(B)	0.445	0.448	0.451	0.446	0.439	0.429
		B/A(%)	101.0	99.2	104.0	109.2	112.9	108.6
	빈곤율 (%)	동향(A)	51.2	50.0	50.3	50.5	47.5	48.7
		금복(B)	50.0	49.2	48.7	47.1	46.8	46.7
		B/A(%)	97.8	98.3	96.9	93.3	98.5	96.0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빈곤율은 모두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60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그림 3-3] 2011~2016년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주: <표 3-7>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데이터 간 가처분소득 분포 차이가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된다.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지니계수를 약 20% 크게 추정하는 반면 노인인구의 경우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지니계수를 높게 추정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빈곤율을 살펴보면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빈곤율이 높지만, 노인인구의 경우 반대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분포 차이를 분석할 때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제3절 가구 및 개인 특성 비교 분석

이 절에서는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를 살펴본다. 우선 <표 3-8>에는 가구 규모, 가구주의 성/연령/교육 수준/종사상지위, 개인의 성/연령/취업 분포를 보고 하였다. 이 분석의 초점은 개인 단위 균등화소득 분포의 데이터 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기 때문에, 표에서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 가계동향조사 가구 규모 2인 비율 수치는 전체 3만 528명 중 가구 규모가 2인인 가구에 속한 개인이 15.8%임을 의미한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측정할 기준시점이 소득연도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¹⁷⁾

17) t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구성 측정 기준일은 t년 3월 31일이고, 소득 측정 기준시점은 t-1년 한 해이다.

<표 3-8> 2011~2016년 가구 및 개인 특성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행(A) 금복(B)	B-A	동행(A) 금복(B)	B-A	동행(A) 금복(B)	B-A	동행(A) 금복(B)	B-A	동행(A) 금복(B)	B-A	동행(A) 금복(B)	B-A	
가구 규모	1인	7.1	6.1	-1.0	7.2	5.9	-1.3	7.4	5.8	-1.6	8.2	5.9	-2.3
	2인	15.8	16.3	+0.5	16.3	15.1	-1.1	16.7	14.9	-1.8	17.9	15.1	-2.8
	3인	23.2	21.6	-1.6	22.4	21.8	-0.6	23.3	21.6	-1.6	23.7	21.7	-2.0
	4인	39.7	39.7	0.0	40.2	40.3	+0.2	38.4	40.3	+1.9	37.0	40.4	+3.3
	5인 이상	14.2	16.4	+2.1	13.9	16.8	+2.9	14.2	17.3	+3.1	13.1	16.9	+3.7
가구 주 성	남성	80.9	85.2	+4.2	80.8	85.6	+4.8	81.9	85.3	+3.3	81.7	84.8	+3.1
	여성	19.1	14.8	-4.2	19.2	14.4	-4.8	18.1	14.7	-3.3	18.3	15.2	-3.1
가구 주 연령	30대 이하	25.1	23.3	-1.8	24.5	22.4	-2.0	23.8	21.0	-2.9	23.2	19.7	-3.6
	40대	35.9	33.7	-2.1	35.3	33.2	-2.1	34.8	33.3	-1.5	34.3	32.5	-1.8
	50대	20.9	25.3	+4.4	21.6	26.9	+5.3	22.1	27.7	+5.5	22.5	28.2	+5.7
	60대	11.3	10.5	-0.8	11.1	10.4	-0.7	10.8	10.7	-0.0	11.0	12.0	+1.0
가구 주 교육 수준	70대 이상	6.9	7.2	+0.3	7.5	7.1	-0.5	8.5	7.3	-1.1	9.0	7.7	-1.3
	초졸 미만	2.7	3.4	+0.7	2.4	2.7	+0.2	2.8	2.5	-0.4	2.8	2.6	-0.2
	초졸	7.3	7.6	+0.4	7.0	6.5	-0.5	6.8	6.3	-0.6	6.7	6.1	-0.6
	중졸	9.9	9.6	-0.3	9.2	9.0	-0.2	8.4	8.7	+0.3	8.0	8.4	+0.4
	고졸	41.5	37.8	-3.7	40.7	37.8	-2.8	39.3	38.1	-1.2	37.7	38.4	+0.7
태를 이상 ¹⁾	38.7	41.6	+2.8	40.7	44.0	+3.3	42.6	44.5	+1.9	44.8	44.5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p)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A)	금복(B)	B-A	동향(A)	금복(B)	B-A	동향(A)	금복(B)	B-A	동향(A)	금복(B)	B-A
상용근로자 가구주 총사상 자영업자 ²⁾ 지위	46.2	49.7	+3.5	47.9	50.3	+2.4	48.9	51.3	+2.4	47.7	51.4	+3.7
	15.6	13.4	-2.2	15.1	13.5	-1.6	14.8	12.9	-1.9	16.0	10.8	-5.3
	24.4	23.8	-0.6	23.8	23.4	-0.4	23.2	23.1	-0.0	21.8	22.5	+0.7
	13.8	13.1	-0.8	13.2	12.9	-0.4	13.2	12.7	-0.5	14.5	15.4	+0.8
개인성	47.1	48.9	+1.9	46.8	49.2	+2.4	47.4	49.3	+1.9	47.0	49.1	+2.2
	52.9	51.1	-1.9	53.2	50.8	-2.4	52.6	50.7	-1.9	53.0	50.9	-2.2
개인 연령	36.9	37.1	+0.2	36.0	37.2	+1.1	35.4	36.5	+1.1	34.4	35.7	+1.3
	16.4	15.7	-0.7	16.1	15.9	-0.2	16.0	15.8	-0.1	14.9	14.5	-0.4
	18.2	17.2	-0.9	18.2	17.1	-1.1	18.1	17.0	-1.0	17.5	16.9	-0.6
	12.6	13.9	+1.3	12.9	14.3	+1.4	13.2	14.6	+1.4	13.8	15.1	+1.3
	8.9	8.2	-0.7	9.1	7.8	-1.3	8.9	8.0	-1.0	10.0	9.2	-0.8
	7.0	7.8	+0.8	7.7	7.7	+0.0	8.3	8.1	-0.3	9.4	8.5	-0.8
개인 취업	46.0	44.9	-1.2	46.2	46.1	-0.1	46.4	46.2	-0.2	48.1	46.1	-2.0
	54.0	55.1	+1.2	53.8	53.9	+0.1	53.6	53.8	+0.2	51.9	53.9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개인 단위 분포이다.
1) 대졸 이상은 3년제 이하 졸업과 4년제 이상 졸업을 포함한다.

2)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기타 종사자(실적금의 보험실제사, 대리 운전기사, 하급지 방문교사 등)를 포함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2016년 원자료.

먼저 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대체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3인 가구 비율이 낮고 4인 이상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4인, 5인 이상 가구 비율이 가계동향조사보다 각각 4.5%포인트, 4.1%포인트나 컸다.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따로 살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가구를 정의하는데, 이와 같은 가구 개념 차이가 데이터 간 가구 규모의 차이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2011~2016년 데이터 간 가구 규모의 차이가 점차 커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2011년에는 데이터 간 4인 이상 가구 비율 차이가 2.1%포인트였지만, 2016년에는 8.6%포인트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1~2인 가구 비율은 6.4%포인트나 증가하였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1.1%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즉,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가 시간에 따라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 성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주 남성 비율이 연도별로 3.1~5.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1~2016년 동안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구주 여성 비율이 0.3%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3%포인트 증가하였다.

가구주 연령의 데이터 간 차이도 작지 않다. 횡단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주 40대 이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주 40대 이하 비율이 5.0%포인트 낮았고 가구주 50~60대 비율이 6.4%포인트 높았다. 이와 같은 데이터 간 차이는 시간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가구주 40대 이하 비율과 50대 비율의 차이가 각

각 3.9%포인트, 4.4%포인트였지만 2016년에는 각각 5.0%포인트, 5.8%포인트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1~2016년 두 데이터 모두 가구주가 고령화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특성과 달리 가구주 교육 수준의 데이터 간 차이는 시간에 따라 대체로 감소한다. 2011년에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주 고졸 비율과 대졸 비율의 차이가 각각 3.7%포인트, 2.8%포인트였지만 2016년에는 각각 0.6%포인트, 1.7%포인트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1~2016년 두 데이터 모두 가구주 대졸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고졸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데 반해(-4.6%포인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중졸 비율과 초졸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2.1%포인트, -1.9%포인트). 횡단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주 대졸 비율이 대체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주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았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이 낮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시간에 따라 확대되었는데 2011~2016년 데이터 간 상용근로자 비율과 임시·일용근로자 비율 차이는 각각 3.5%포인트, 2.2%포인트에서 4.9%포인트, 5.3%포인트로 증가하였다. 한편 두 데이터에서 시간에 따라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하고 비취업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개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 성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2011~2016년 1.9%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증가하였다. 개인 연

령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대 이하 비율과 50대 비율이 각각 0.2~1.3%포인트, 1.3~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는 두 데이터의 60대 이상 비율이 거의 비슷했지만 2012년 이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60대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1~2016년 두 데이터 모두 40대 이하 비율이 감소하고 50대 이상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 추이를 보여 주지만, 이와 같은 고령화의 속도는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취업을 살펴보면 횡단적으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취업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고, 두 데이터에서 모두 취업 비율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되었다.

<표 3-8>을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작지 않고, 가구주 교육 수준과 개인 연령을 제외하면 대체로 데이터 간 차이가 시간에 따라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와 같은 효과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모집단과 더 가까운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갖는 데이터는 어느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 <표 3-9>에는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인구총조사의 가구 규모, 가구주 성/연령을 보고하였다. <표 3-8>과 달리 인구총조사 집계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농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와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포함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가구 단위로 분석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모두 인구총조사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낮고 4인 이상 가구 비율이 높아 서베이 가 1인 가구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런데 시간

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와 인구총조사의 차이가 꽤 감소한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인구총조사의 차이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라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4인 이상 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추이가 인구총조사와 더 유사하게 관찰되는 데이터도 가계동향조사이다. 즉, 가구 규모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가 횡단적으로 모집단을 더 잘 대표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도 더 잘 대표한다. 이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 규모를 고려한 사후층화를 실시한다는 점(통계청, 2011a, p. 28)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구주 성 역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가 모집단을 더 잘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 여성 비율은 횡단적으로 인구총조사와 대체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가구주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인구총조사에 비해 연도별로 가구주 여성 비율을 3.6~7.5%포인트 낮게 추정하고 시간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주 여성 비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아 인구총조사와의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두 데이터와 인구총조사의 차이가 다소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두 데이터 모두 인구총조사에 비해 가구주 30대 이하 비율을 낮게 추정하는데, 이는 서베이에서 젊은 가구주가 과소포착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2011년에는 두 데이터 간 가구주 연령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2015~2016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인구총조사의 차이보다 가계동향조사와 인구총조사의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15~2016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가 70대 이상 비율을 더 많이 과대추정한다.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가구주 고령화 추이를 인구총조사와 조금 더 유사하게 보여 주는 데이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이다.

68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9> 가구 규모, 가구주 성 및 연령 분포,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단위: %)

구분		2011 동향	2011 금복	2010 총조사	2015 동향	2015 금복	2015 총조사	2016 동향	2016 금복	2016 총조사
가구 규모	1인	18.8	17.8	23.9	24.0	17.9	27.2	25.1	18.8	27.9
	2인	25.5	25.2	24.3	26.3	24.2	26.1	27.0	25.2	26.2
	3인	21.4	20.5	21.3	21.1	20.7	21.5	21.3	21.0	21.4
	4인	26.7	27.5	22.5	22.8	28.0	18.8	20.8	26.3	18.3
	5인 이상	7.7	9.1	8.1	5.9	9.3	6.4	5.7	8.6	6.2
가구주 성	남성	73.2	77.7	74.1	71.1	77.3	70.4	69.6	77.5	70.0
	여성	26.8	22.3	25.9	28.9	22.7	29.6	30.4	22.5	30.0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22.1	22.2	27.3	19.3	18.3	24.2	18.0	17.3	23.8
	40대	27.3	26.2	25.6	25.0	25.1	23.8	24.5	24.3	23.1
	50대	21.2	23.3	21.8	21.3	25.3	24.1	21.6	25.4	24.1
	60대	15.7	14.5	13.6	16.8	16.5	14.8	17.1	17.4	15.6
	70대 이상	13.7	13.7	11.7	17.7	14.8	13.1	18.8	15.7	1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총조사'는 인구총조사를 의미한다. 가계동향조사는 농가경제조사의 농가를 포함하였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포함하였다. 인구총조사는 일반가구 기준이다. 가구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각 연도 인구총조사 집계자료(아래).
 통계청. (2011b).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통계청. (2011c). 가구주의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통계청. (2019e).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통계청. (2019f).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다음으로 <표 3-10>에서는 개인의 성/연령을 살펴보았다. 이때 <표 3-9>와 동일하게 농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와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포함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우선 개인 성을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남성/여성 비율이 인구총조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동향조사의

남성/여성 비율은 인구총조사와 연도별로 1.7~3.0%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개인 연령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는 인구총조사에 비해 30대와 50대 비율은 낮게, 60대 이상 비율은 높게 추정하는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인구총조사에 비해 20대 이하 비율은 높게, 30대와 40대 비율은 낮게 추정한다. 개인 연령의 인구총조사와의 전반적인 차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가 조금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개인 성 및 연령 분포,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단위: %)

구분		2011	2011	2010	2015	2015	2015	2016	2016	2016
		동향	금복	총조사	동향	금복	총조사	동향	금복	총조사
개인 성	남성	47.2	48.9	48.9	47.0	49.2	49.2	46.3	48.9	49.3
	여성	52.8	51.1	51.1	53.0	50.8	50.8	53.7	51.1	50.7
개인 연령	20대 이하	35.4	36.1	35.9	33.2	34.9	32.0	32.3	33.8	31.5
	30대	15.7	15.1	16.6	14.4	14.1	15.2	13.6	13.7	14.9
	40대	17.4	16.8	17.5	16.9	16.5	17.5	17.1	16.5	17.2
	50대	12.9	14.2	14.0	13.8	15.3	16.5	14.1	15.6	16.6
	60대	9.8	9.0	8.5	10.8	9.8	10.0	11.3	10.6	10.6
	70대 이상	8.7	8.8	7.5	10.9	9.3	8.9	11.6	9.8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총조사'는 인구총조사를 의미한다. 가계동향조사는 농가경제조사의 농가를 포함하였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포함하였다. 인구총조사는 일반가구원 기준이다. 개인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각 연도 인구총조사 집계자료(아래).
 통계청. (2011d). 성,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시군구(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통계청. (2019g). 성,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시군구(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표 3-11〉에서는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와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15세 이상 개인의 취업률을 분석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경제

70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취업률을 3.9~5.6%포인트 낮게 추정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률 차이는 0.7~1.3%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단, <표 3-11>에서는 두 데이터에서 농가를 제외하였으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표 3-11> 15세 이상 개인 취업 분포,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단위: %)

구분		2011 동향	2011 금복	2011 경찰	2012 동향	2012 금복	2012 경찰	2013 동향	2013 금복	2013 경찰
개인 취업	취업	58.5	54.4	59.3	58.4	55.7	59.6	58.8	55.5	59.8
	비취업	41.5	45.6	40.7	41.6	44.3	40.4	41.2	44.5	4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2014 동향	2014 금복	2014 경찰	2015 동향	2015 금복	2015 경찰	2016 동향	2016 금복	2016 경찰
개인 취업	취업	59.6	55.5	60.5	59.8	54.9	60.5	59.3	55.6	60.6
	비취업	40.4	44.5	39.5	40.2	45.1	39.5	40.7	44.4	3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찰'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개인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아래).
 통계청, (2019h).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표 3-9>~<표 3-11>을 정리하면 가구 규모와 가구주 성의 대표성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가 우위에 있고 가구주 연령, 개인 성, 개인 연령의 대표성은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어느 하나의 표본 대표성이 더 뛰어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유사하게 조정한 후 소득 분포를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연도별로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에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여 재가중한 데이터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의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유사하게 조정한다.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의 여러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하는 재가중함수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DiNardo et al., 1996, p. 1011, p. 1014).

$$\psi(x) = \frac{dF(x|data_x = \text{금복})}{dF(x|data_x = \text{동향})} = \frac{\Pr(data_x = \text{금복}|x)}{\Pr(data_x = \text{동향}|x)} \times \frac{\Pr(data_x = \text{동향})}{\Pr(data_x = \text{금복})}$$

연도별로 재가중함수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결합(pooling)한 후 <표 3-8>의 모든 가구 및 개인 특성 변수(x)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¹⁸⁾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여부 더미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모형을 분석하여 $\Pr(data_x = \text{금복}|x)$ 과 $\Pr(data_x = \text{동향}|x)$ 을 추정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지표와 함께 개인 연령대별 소득분배지표를 분석하므로, 로짓모형에 개인 연령집단(0~17세/18~64세/65세 이상)과 나머지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였다.¹⁹⁾ 다음으로 $\Pr(data_x = \text{금복})$ 과 $\Pr(data_x = \text{동향})$ 은 기술통계로 추정한다. 이를 위 식에 투입하면 표

18) <표 3-8>에 제시된 변수별 범주를 그대로 로짓모형에 투입하였다.

19) 단, 로짓모형에 독립변수 간 완전한 상호작용을 반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재가중 후 가구 및 개인 특성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재가중함수 추정 결과,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의 범주별 비율 차이가 모두 0.7%포인트 미만으로 나타나 가구 및 개인 특성이 성공적으로 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의 가구 및 개인 특성별 재가중합수($\psi(x)$)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는 가구 및 개인 특성별 하위 집단 내 소득 분포는 가계동향조사와 같지만 가구 및 개인 특성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한 가상적인(counterfactual) 소득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재가중 전후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를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2>와 [그림 3-4]에는 이와 같이 가구 규모, 가구주 성/연령/교육 수준/종사상지위, 개인 성/연령/취업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한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의 소득 분포를 보고하였다. 표의 수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평균은 각각 연 2124만 원, 2514만 원인데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이 조정한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의 시장소득 평균은 연 2180만 원이다. 다시 말해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를 조정하면 가계동향조사의 시장소득 평균이 연 56만 원 증가하고 이는 재가중 전 차이인 연 391만 원의 14.4%에 해당한다. 즉,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데이터 간 시장소득 평균 차이의 14.4%를 설명하는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데이터 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평균 차이를 각각 14.4~23.4%, 14.6~25.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하면 고소득층의 비율이 증가하여 소득 수준이 상승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위값을 살펴보면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중위값 차이를 각각 41.2~69.7%, 46.1~92.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에서 보듯이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를 제거하면 두 데이터의 가처분소득

중위값이 상당히 가까워진다. 한편 중위값 차이보다 평균 차이에 대한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의 설명력이 낮은 것은 가구 및 개인 특성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소득 분포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평균과 중위값과 달리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조정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차이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49인데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하면 0.337로 감소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장소득 지니계수(0.385)와의 차이가 증가한다. [그림 3-4]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에 대해 이와 같은 패턴이 유사하게 관찰된다. 또한 2011~2016년 재가중 전후 지니계수와 빈곤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 3-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7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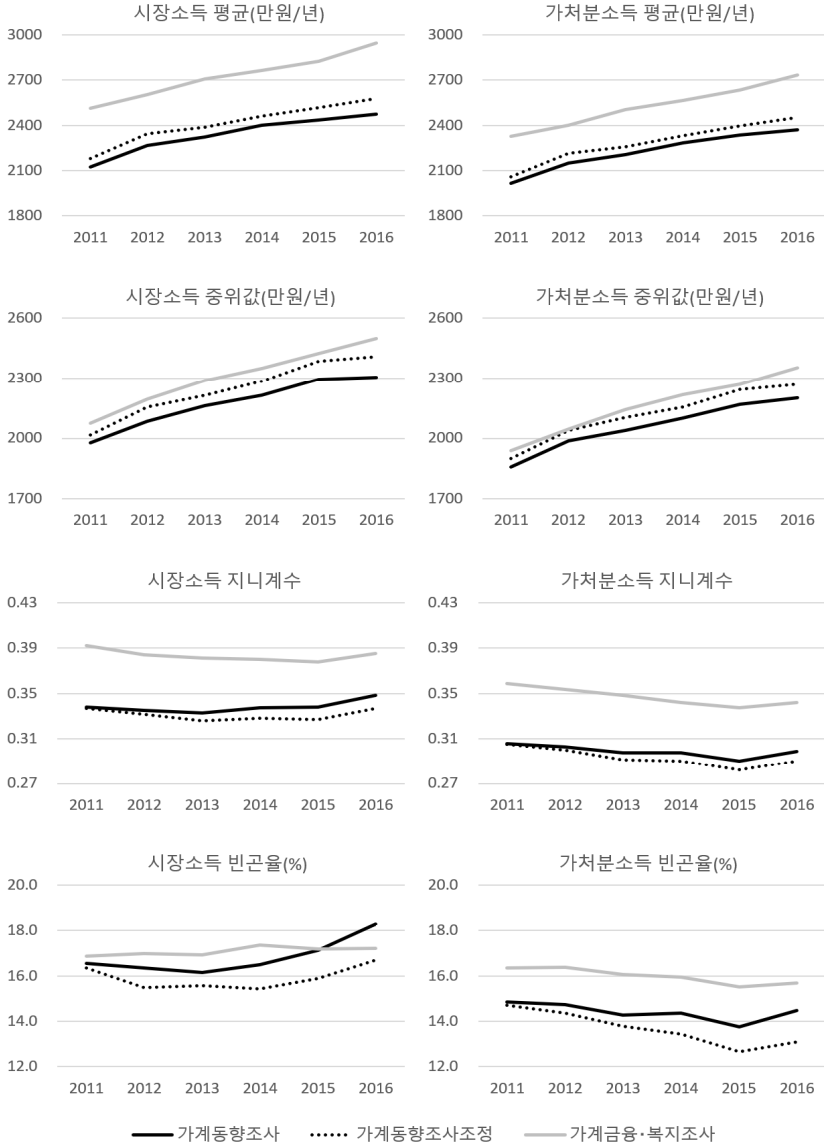
<표 3-12>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장 소득	평균 (만 원/년)	동향(A)	2124	2269	2322	2401	2436	2475
		동향조정(B)	2180	2346	2387	2461	2515	2576
		금복(C)	2514	2602	2708	2763	2824	2944
		(B-A)/(C-A)(%)	+14.4	+23.4	+16.7	+16.6	+20.4	+21.5
	중위값 (만 원/년)	동향(A)	1977	2085	2162	2216	2294	2306
		동향조정(B)	2018	2155	2215	2287	2385	2408
		금복(C)	2075	2193	2290	2350	2425	2500
		(B-A)/(C-A)(%)	+41.2	+64.9	+41.7	+53.1	+69.7	+52.6
	지니계수	동향(A)	0.338	0.335	0.333	0.337	0.338	0.349
		동향조정(B)	0.337	0.331	0.326	0.328	0.327	0.337
		금복(C)	0.392	0.384	0.381	0.380	0.378	0.385
		(B-A)/(C-A)(%)	-1.5	-7.2	-14.1	-21.3	-27.1	-32.4
	빈곤율 (%)	동향(A)	16.6	16.3	16.2	16.5	17.1	18.3
		동향조정(B)	16.3	15.5	15.6	15.4	15.9	16.7
		금복(C)	16.9	17.0	16.9	17.4	17.2	17.2
		(B-A)/(C-A)(%)	-69.8	-131.5	-74.4	-121.4	-1980.3	+149.0
가처분 소득	평균 (만 원/년)	동향(A)	2015	2149	2205	2282	2335	2371
		동향조정(B)	2060	2215	2258	2331	2396	2451
		금복(C)	2325	2402	2503	2564	2632	2734
		(B-A)/(C-A)(%)	+14.6	+25.9	+17.5	+17.2	+20.7	+22.0
	중위값 (만 원/년)	동향(A)	1859	1988	2038	2101	2168	2200
		동향조정(B)	1898	2040	2104	2156	2243	2271
		금복(C)	1938	2044	2141	2216	2269	2353
		(B-A)/(C-A)(%)	+49.8	+92.6	+63.7	+48.2	+74.4	+46.1
	지니계수	동향(A)	0.306	0.303	0.297	0.298	0.290	0.299
		동향조정(B)	0.305	0.300	0.291	0.290	0.282	0.290
		금복(C)	0.359	0.354	0.349	0.342	0.338	0.342
		(B-A)/(C-A)(%)	-1.3	-6.0	-12.0	-15.9	-17.8	-20.1
	빈곤율 (%)	동향(A)	14.8	14.7	14.3	14.4	13.8	14.5
		동향조정(B)	14.7	14.4	13.8	13.4	12.7	13.1
		금복(C)	16.3	16.4	16.1	15.9	15.5	15.7
		(B-A)/(C-A)(%)	-9.9	-23.8	-28.4	-58.0	-62.9	-114.2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모두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그림 3-4]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주: <표 3-12>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이와 같이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후 평균과 중위값이 증가하고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가중 전후 분위 경계값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13>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의 재가중이 모든 분위의 경계값을 증가시키지만 특히 저소득 분위의 소득을 더 큰 비율로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후 시장소득 P10이 연 503만 원에서 622만 원으로 23.5% 증가하였지만 시장소득 P90은 연 4359만 원에서 4531만 원으로 3.9%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즉,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저소득 분위 경계값 차이는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로 상당히 설명되지만, 재가중 후에도 고소득 분위 경계값 차이는 그다지 크게 축소되지 않는다. 요컨대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한 후에도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3-13)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10분위 경계값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A) 조형(B)	동향(C) 금액(C)	동향(A) 조형(B)	동향(C) 금액(C)	동향(A) 조형(B)	동향(C) 금액(C)	동향(A) 조형(B)	동향(C) 금액(C)	동향(A) 조형(B)	동향(C) 금액(C)	동향(A) 조형(B)	동향(C) 금액(C)							
시장 소득	P10	565	579	629	622	664	660	626	685	684	582	686	679	599	672	675	503	622	672
	P20	1064	1100	1080	1154	1225	1155	1151	1265	1212	1235	1327	1220	1240	1339	1270	1195	1319	1295
	P30	1408	1464	1437	1506	1563	1500	1552	1607	1600	1604	1679	1630	1634	1736	1682	1650	1755	1735
	P40	1699	1743	1750	1806	1877	1848	1861	1917	1930	1916	1982	1998	1964	2048	2040	1997	2095	2110
	P50	1977	2018	2075	2085	2155	2193	2162	2215	2290	2216	2287	2350	2294	2385	2425	2306	2408	2500
	P60	2238	2282	2460	2392	2469	2587	2471	2528	2700	2550	2608	2780	2608	2672	2880	2637	2735	2950
	P70	2555	2626	2910	2753	2833	3034	2823	2903	3180	2912	2974	3291	2949	3011	3400	3031	3117	3491
	P80	3002	3085	3525	3214	3315	3690	3306	3378	3824	3430	3504	3956	3463	3543	4060	3538	3655	4204
	P90	3787	3860	4614	4012	4170	4730	4058	4115	4971	4276	4351	5110	4256	4350	5196	4359	4531	5438
가처분 소득	P10	723	741	745	781	819	769	809	861	798	851	912	845	892	967	880	852	957	894
	P20	1099	1125	1095	1187	1233	1142	1245	1293	1221	1277	1338	1249	1337	1404	1303	1329	1408	1342
	P30	1381	1420	1384	1472	1526	1446	1535	1583	1534	1599	1637	1588	1659	1713	1637	1649	1737	1703
	P40	1626	1666	1651	1726	1788	1735	1794	1838	1825	1848	1888	1886	1904	1982	1945	1931	2008	2025
	P50	1859	1898	1938	1988	2040	2044	2038	2104	2141	2101	2156	2216	2168	2243	2269	2200	2271	2353
	P60	2103	2146	2275	2249	2319	2382	2318	2377	2489	2402	2440	2570	2445	2495	2647	2479	2548	2712
	P70	2387	2438	2661	2557	2628	2768	2631	2699	2902	2726	2758	2986	2761	2811	3088	2796	2876	3186
	P80	2777	2837	3189	2960	3043	3317	3027	3084	3455	3130	3211	3570	3176	3238	3677	3247	3333	3776
	P90	3458	3510	4092	3663	3783	4227	3688	3717	4423	3893	3935	4570	3843	3925	4630	3975	4088	4759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형'은 재가중후 시장소득, '금액'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별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조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계급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이처럼 재가중 후 가계동향조사의 평균과 증위값이 증가하고 불평등 및 빈곤이 감소하는 이유는 가구 및 개인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별 소득 분포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이 조정하면 가구 규모가 4인 이상이고 가구주가 남성, 50대, 대졸, 상용근로자인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집단 내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은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재가중 후 이들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면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불평등 및 빈곤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득분배지표 추이를 해석할 때 가구 및 개인 특성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그림 3-4]에서 보듯이 2011~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시장소득 지니계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두 데이터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이 비슷했다면 시장소득 지니계수 차이가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2011~2014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장소득 빈곤율이 높지만 2016년에는 가계동향조사 시장소득 빈곤율이 높은 역전현상이 관찰되었는데,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를 제거하면 이러한 현상도 대체로 사라진다.

다음으로 <표 3-14>에는 개인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가중합수 추정 모델에 개인 연령(0~17세/18~64세/65세 이상)과 다른 변수의 상호작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재가중 후 개인 연령대별 하위 집단 내에서 가구 및 개인 특성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된다. 분석 결과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전체 인구와 유사하게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가처분소득 평균 차이를 조금 설명하고 가처분소득 증위값 차이를 크게 설명하며, 재가중 후 데이터 간 지니계수와 빈곤율 차이가 대체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후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인 0~17세	평균 (만 원/ 년)	동향(A)	2011	2148	2251	2327	2373	2395
		동향조정(B)	2058	2185	2279	2334	2408	2431
		금복(C)	2349	2374	2459	2510	2570	2711
		(B-A)/(C-A)(%)	+14.0	+16.3	+13.6	+3.9	+17.8	+11.3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1865	1991	2070	2129	2200	2205
		동향조정(B)	1901	2019	2100	2136	2234	2241
		금복(C)	1939	2028	2144	2202	2260	2316
		(B-A)/(C-A)(%)	+48.1	+76.6	+40.0	+9.9	+56.9	+32.6
	지니계수	동향(A)	0.264	0.260	0.253	0.253	0.246	0.251
		동향조정(B)	0.257	0.256	0.248	0.251	0.243	0.245
		금복(C)	0.337	0.324	0.310	0.302	0.298	0.309
		(B-A)/(C-A)(%)	-9.6	-5.9	-8.0	-5.2	-5.8	-10.2
빈곤율 (%)	동향(A)	9.6	9.5	7.6	7.3	7.1	7.2	
	동향조정(B)	8.8	9.3	7.7	7.3	6.6	6.4	
	금복(C)	12.0	12.4	11.7	11.4	11.4	10.8	
	(B-A)/(C-A)(%)	-37.2	-7.9	+3.0	+0.8	-10.5	-21.6	
개인 18~64세	평균 (만 원/ 년)	동향(A)	2158	2306	2371	2465	2526	2588
		동향조정(B)	2207	2362	2403	2490	2558	2637
		금복(C)	2480	2566	2683	2748	2826	2938
		(B-A)/(C-A)(%)	+15.4	+21.4	+10.3	+8.7	+10.4	+14.0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1973	2123	2195	2264	2334	2389
		동향조정(B)	2012	2169	2235	2299	2375	2441
		금복(C)	2087	2189	2286	2373	2444	2531
		(B-A)/(C-A)(%)	+33.7	+69.7	+43.6	+32.1	+37.1	+36.7
	지니계수	동향(A)	0.289	0.282	0.274	0.275	0.267	0.274
		동향조정(B)	0.285	0.280	0.270	0.271	0.262	0.269
		금복(C)	0.341	0.338	0.333	0.326	0.320	0.323
		(B-A)/(C-A)(%)	-6.7	-3.6	-7.1	-9.3	-11.1	-9.4
빈곤율 (%)	동향(A)	10.7	10.1	9.5	9.4	8.6	9.0	
	동향조정(B)	10.2	10.1	9.5	9.1	8.3	8.6	
	금복(C)	11.9	12.3	11.8	11.8	10.9	11.1	
	(B-A)/(C-A)(%)	-39.1	-2.6	-2.4	-12.6	-16.0	-15.8	

80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인 65세 이상	평균 (만 원/ 년)	동향(A)	1203	1334	1323	1354	1427	1421
		동향조정(B)	1224	1379	1379	1431	1515	1531
		금복(C)	1388	1459	1543	1622	1685	1724
		(B-A)/(C-A)(%)	+11.5	+35.9	+25.5	+28.7	+33.9	+36.4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891	991	1013	1037	1152	1129
		동향조정(B)	905	1012	1058	1131	1247	1245
		금복(C)	964	1049	1100	1200	1245	1266
		(B-A)/(C-A)(%)	+19.9	+36.2	+52.1	+57.8	+102.4	+84.7
	지니계수	동향(A)	0.440	0.452	0.434	0.409	0.389	0.396
		동향조정(B)	0.450	0.456	0.436	0.407	0.390	0.397
		금복(C)	0.445	0.448	0.451	0.446	0.439	0.429
		(B-A)/(C-A)(%)	+226.3	-134.6	+10.4	-4.6	+1.8	+4.6
	빈곤율 (%)	동향(A)	51.2	50.0	50.3	50.5	47.5	48.7
		동향조정(B)	51.7	50.3	49.6	48.5	45.8	45.8
		금복(C)	50.0	49.2	48.7	47.1	46.8	46.7
		(B-A)/(C-A)(%)	-45.3	-35.3	+44.5	+58.1	+231.3	+148.5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빈곤율은 모두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그런데 노인인구의 경우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가처분소득 평균과 중위값 차이를 일정하게 설명한다는 점은 다른 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지니계수와 빈곤율에 대한 영향은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노인인구의 지니계수는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조정해도 거의 변화하지 않는 반면 재가중에 따른 노인인구의 빈곤율 변화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 2013~2016년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노인빈곤율 차이를 상당히 설명한다. 앞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노인빈곤율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표 3-7〉 참조), 부분적인 원

인이 데이터 간 노인인구의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가계동향조사의 노인인구가 1인 가구, 가구주가 여성, 고령노인, 초졸 이하, 임시·일용근로자인 가구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13~2016년 가계동향조사 노인인구의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하면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 특히 2015~2016년에는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의 노인빈곤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낮게 나타난다.

제4절 소득원천 분포 비교 분석

이 절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별 소득원천 분포 차이를 분석한다. 우선 <표 3-15>와 [그림 3-5]에는 소득원천 평균을 보고하였다. 두 데이터의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 평균이 크고,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데이터 간 차이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근로소득 평균의 차이를 상당히 설명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11년 가계동향조사 근로소득 평균은 연 1647만 원인데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하면 1734만 원으로 증가한다.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근로소득 평균 비율은 가계동향조사 재가중 전 107.2~111.7%에서 재가중 후 101.2~105.4%로 감소한다. 단, 재가중 후에도 여전히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 평균이 크다는 사실은 가구 및 개인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 내에서 근로소득의 데이터 간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82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15> 2011~2016년 소득원천 평균

(단위: 만 원/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소득	동향(A)	1647	1771	1819	1892	1932	1967
	동향조정(B)	1734	1875	1900	1953	2014	2089
	금복(C)	1766	1899	1984	2058	2110	2197
	C/A(%)	107.2	107.2	109.1	108.8	109.2	111.7
	C/B(%)	101.8	101.2	104.4	105.4	104.8	105.2
사업소득	동향(A)	517	521	525	529	518	515
	동향조정(B)	508	520	530	546	531	524
	금복(C)	689	658	686	669	658	689
	C/A(%)	133.2	126.3	130.7	126.5	127.0	133.9
	C/B(%)	135.5	126.6	129.6	122.4	123.9	131.6
재산소득	동향(A)	45	51	53	57	59	64
	동향조정(B)	47	53	55	60	64	66
	금복(C)	114	121	111	113	131	125
	C/A(%)	255.9	237.7	210.6	199.4	221.7	195.5
	C/B(%)	242.8	226.8	200.8	187.7	204.6	190.8
사적이전소득	동향(A)	111	125	128	130	134	132
	동향조정(B)	92	103	108	108	117	106
	금복(C)	41	36	35	32	33	40
	C/A(%)	37.3	28.8	27.1	24.5	24.4	30.0
	C/B(%)	45.1	34.8	31.9	29.3	28.0	37.6
가구 간 이전 지출	동향(A)	138	139	139	141	144	140
	동향조정(B)	142	142	140	139	144	140
	금복(C)	47	59	56	55	55	65
	C/A(%)	34.0	42.6	40.3	39.0	38.5	46.4
	C/B(%)	33.0	41.5	40.0	39.6	38.4	46.4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동향(A)	62	64	68	70	70	69
	동향조정(B)	64	67	71	73	73	73
	금복(C)	49	54	53	56	54	44
	C/A(%)	79.8	83.4	79.0	78.8	77.1	63.3
	C/B(%)	76.8	80.0	75.2	75.6	73.4	59.8
공적연금	동향(A)	52	57	63	69	77	86
	동향조정(B)	54	60	65	70	79	89
	금복(C)	57	60	65	73	82	93
	C/A(%)	108.6	104.2	103.5	106.7	106.4	107.8
	C/B(%)	104.3	98.6	100.5	105.0	104.6	105.0
기초(노령)연금	동향(A)	9	10	11	18	28	30
	동향조정(B)	10	10	10	17	26	27
	금복(C)	10	11	11	17	26	26
	C/A(%)	109.1	102.3	97.7	95.2	90.6	85.8
	C/B(%)	105.6	108.5	106.8	105.3	99.5	95.9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타 공적이전 소득	동향(A)	38	39	44	45	52	50
	동향조정(B)	37	39	44	44	51	49
	금복(C)	26	25	32	34	35	35
	C/A(%)	68.3	64.1	72.4	75.7	66.5	69.9
	C/B(%)	69.6	64.7	72.6	76.9	67.7	70.9
세금	동향(A)	75	82	84	88	91	95
	동향조정(B)	81	89	90	93	97	104
	금복(C)	124	126	135	139	142	159
	C/A(%)	166.7	154.6	161.1	157.4	156.3	166.7
	C/B(%)	153.5	141.6	149.7	150.2	146.0	153.2
사회보험료	동향(A)	134	145	152	162	168	176
	동향조정(B)	140	152	159	168	177	187
	금복(C)	158	169	178	184	193	206
	C/A(%)	117.8	116.8	116.8	113.3	114.7	116.9
	C/B(%)	112.7	111.3	112.1	109.4	108.9	1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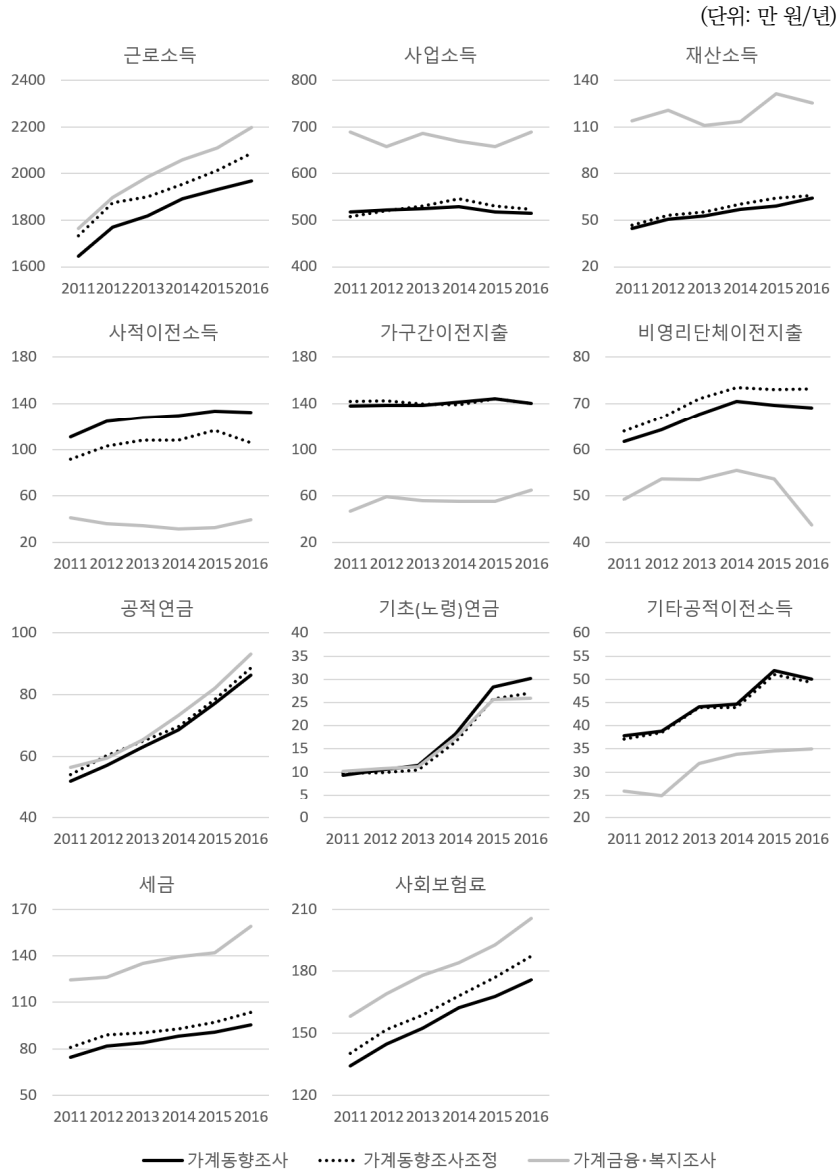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향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업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다음으로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2011~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 평균은 연 658만~689만 원이고 가계동향조사의 사업소득 평균은 515만~529만 원이다.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 평균 비율은 연도별로 126.3~133.9%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 간 차이는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여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를 제거한 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한편 2011~2016년 근로소득 평균이 시간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과 달리 사업소득의 경우 두 데이터에서 모두 2011~2016년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8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그림 3-5] 2011~2016년 소득원천 평균



주: <표 3-15>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다음으로 재산소득을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이 가계동향 조사의 약 2배로 나타나 데이터 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가계동향조사 재가중에 따른 증가량도 연도별로 약 2만~5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재산소득의 경우 시간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방식이 변화하였음(〈표 3-3〉 참조)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5년(소득연도)에 재산소득을 금융소득, 임대수입, 기타 재산소득으로 세분화하였고 과거 사업소득으로 조사하였던 임대사업등록자의 임대수입을 재산소득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재산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표를 살펴보면 실제로 2014~2015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소득 평균의 절대값과 가계동향조사 대비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2016년(소득연도)에는 과거 수입 개념으로 조사하였던 재산소득을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 개념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재산소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표를 살펴보면 실제로 2015~2016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소득 평균의 절대값과 가계동향조사 대비 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2014~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소득 추이가 다소 불안정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시장소득과 달리 사적이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은 연 111만~134만 원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은 32만~41만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사적이전소득 평균이 큰 것은 첫째, 사적이전소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가계동향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거나 둘째, 연간소득 면접조사 방식에 비해 월간소득 가계부기장방식 소득조사에서 사적이전소득이 누락되지 않고 정확하게 포착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표를 살펴보면 재가중 후 가계동향조사의 사적이전소득 평균이 일정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첫 번째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실증한다. 하지만 재가중 후에도 여전히 데이터 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으로 함께 설명될 수 있다. 한편 2016년(소득연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사적이전소득을 가구 간 이전소득과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하고 사적이전소득에 현물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는 사적이전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표를 살펴보면 2015~2016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사적이전소득 평균의 절대값과 가계동향조사 대비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가구 간 이전지출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이 훨씬 컸고,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 하더라도 데이터 간 차이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역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이 컸는데,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그 평균이 조금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비영리단체에 더 많은 이전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 재가중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비율이 감소하면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6년(소득연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 간 이전지출에 현물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는데 실제로 2015~2016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간 이전지출 평균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차이가 크다. 전체 노인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인 노인의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적연금의 경우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이 조금 더 크고,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이러한 차이가 약간 감소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11~2016년 가계동

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비율이 109.1%에서 85.8%로 감소하였다. 대체로 정액급여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데이터 간 차이의 원인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3-8>에서 살펴보았듯이 2011~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가계동향조사의 70대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노인 비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평균도 더 빠르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데이터 간 차이가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 평균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언급해 둘 만하다. 주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가계동향조사의 재가중이 그 평균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경우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이 크게 나타났고, 가계동향조사 재가중에 따라 데이터 간 차이가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 간 차이의 패턴 역시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15>와 [그림 3-5]에서 개별 소득원천의 평균을 살펴보았다면 <표 3-16>과 [그림 3-6]에서는 개별 소득원천이 0보다 큰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0 초과 비율은 0에 가까운 작은 값의 측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동이 크고 다소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몇 가지 패턴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88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16> 2011~2016년 소득원천 0 초과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소득	동향(A)	83.1	83.0	82.2	81.9	82.0	80.4
	동향조정(B)	84.1	84.4	83.7	83.3	83.1	81.9
	금복(C)	77.0	79.4	79.8	80.1	79.9	78.9
	C/A(%)	92.6	95.7	97.1	97.8	97.5	98.0
	C/B(%)	91.6	94.1	95.4	96.1	96.2	96.3
사업소득	동향(A)	40.9	40.0	39.5	38.2	36.0	34.7
	동향조정(B)	40.8	40.1	39.8	39.3	36.9	35.4
	금복(C)	30.3	30.5	29.8	30.0	29.8	29.1
	C/A(%)	74.1	76.3	75.6	78.5	82.9	83.9
	C/B(%)	74.3	76.1	75.0	76.3	81.0	82.3
재산소득	동향(A)	18.8	20.5	21.2	20.8	20.8	18.8
	동향조정(B)	19.2	20.9	21.6	21.1	21.0	19.2
	금복(C)	22.0	23.1	23.2	21.8	22.5	22.9
	C/A(%)	116.9	112.7	109.9	104.6	108.2	121.6
	C/B(%)	114.4	110.2	107.6	103.3	107.2	119.5
사적이전소득	동향(A)	41.6	40.9	40.9	40.7	43.5	43.5
	동향조정(B)	41.0	39.9	40.1	39.8	43.2	42.8
	금복(C)	12.0	12.6	11.4	10.4	10.2	14.6
	C/A(%)	28.8	30.7	27.9	25.5	23.4	33.6
	C/B(%)	29.3	31.4	28.4	26.1	23.6	34.2
가구 간 이전 지출	동향(A)	95.4	95.2	95.0	95.0	94.0	92.2
	동향조정(B)	95.5	95.3	95.1	95.0	94.5	92.5
	금복(C)	27.6	33.9	33.4	33.4	31.8	41.7
	C/A(%)	29.0	35.6	35.1	35.2	33.9	45.2
	C/B(%)	28.9	35.5	35.1	35.2	33.7	45.0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동향(A)	90.7	90.4	86.1	84.8	84.6	82.6
	동향조정(B)	91.3	91.0	86.7	85.7	85.9	83.9
	금복(C)	57.3	60.3	58.6	59.6	56.8	45.3
	C/A(%)	63.1	66.8	68.0	70.3	67.2	54.8
	C/B(%)	62.7	66.3	67.6	69.6	66.1	53.9
공적연금	동향(A)	13.3	13.6	13.8	14.0	15.1	16.2
	동향조정(B)	13.1	13.2	13.5	13.9	14.5	15.7
	금복(C)	11.4	12.2	12.8	13.7	14.5	15.1
	C/A(%)	85.5	89.9	93.1	97.6	96.2	93.1
	C/B(%)	87.0	92.3	95.2	98.5	100.3	95.7
기초(노령)연금	동향(A)	13.0	13.3	13.8	14.1	16.1	16.6
	동향조정(B)	13.5	12.9	13.2	13.5	15.5	15.7
	금복(C)	13.3	13.6	13.9	14.2	15.2	14.8
	C/A(%)	102.0	102.2	101.3	101.0	94.5	89.2
	C/B(%)	98.1	105.3	105.4	105.3	97.9	94.1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타공적이전 소득	동향(A)	25.9	30.3	32.4	32.3	36.8	32.4
	동향조정(B)	26.3	30.8	32.7	32.6	37.4	33.3
	금복(C)	10.7	9.9	14.6	15.4	16.7	17.1
	C/A(%)	41.2	32.6	45.2	47.8	45.4	52.7
	C/B(%)	40.7	32.0	44.8	47.3	44.6	51.2
세금	동향(A)	95.7	96.1	96.3	96.2	96.1	96.9
	동향조정(B)	96.0	96.5	96.7	96.6	96.6	97.4
	금복(C)	93.2	96.2	97.9	98.2	98.4	98.8
	C/A(%)	97.4	100.0	101.6	102.1	102.4	101.9
	C/B(%)	97.1	99.6	101.2	101.7	101.8	101.3
사회보험료	동향(A)	91.5	91.0	90.5	89.7	89.6	88.6
	동향조정(B)	92.0	92.0	91.9	91.3	91.2	90.6
	금복(C)	90.1	91.1	90.9	90.9	90.5	90.3
	C/A(%)	98.5	100.2	100.5	101.3	101.1	101.9
	C/B(%)	97.9	99.0	99.0	99.5	99.2	99.7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0 초과 비율'은 해당 항목이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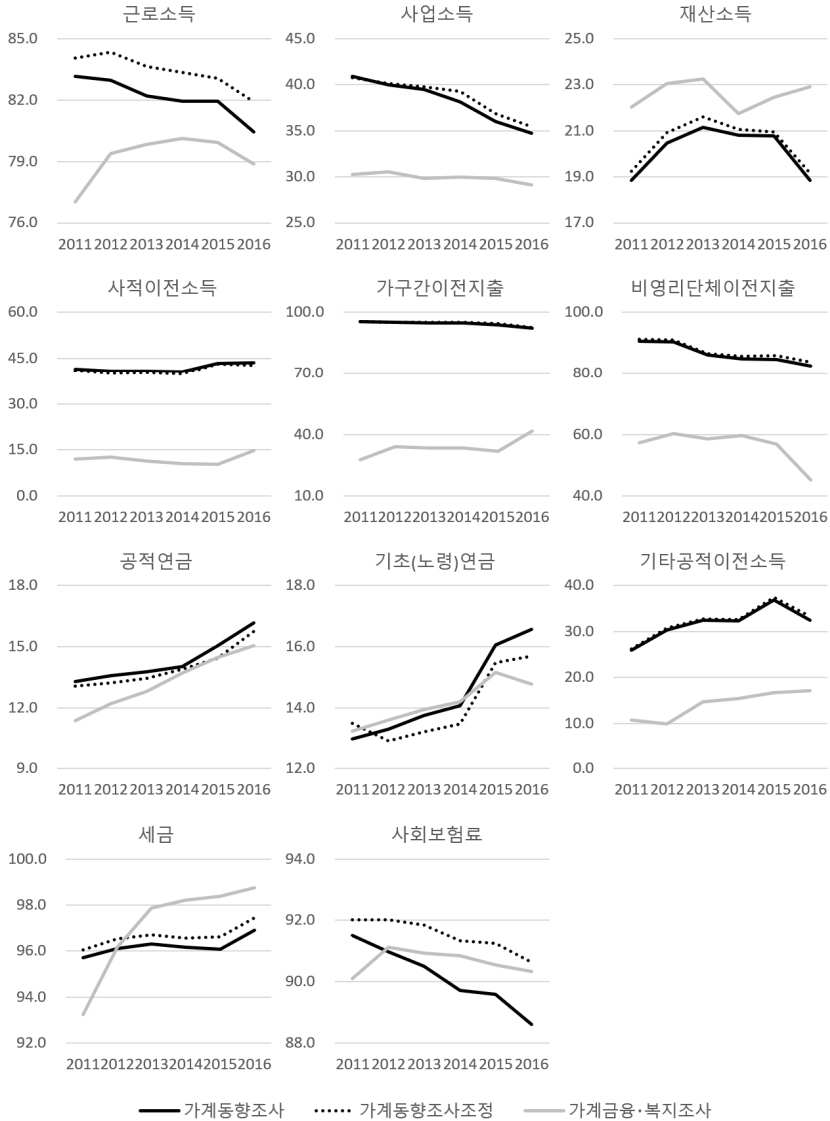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우선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표 3-15>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로소득 평균은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크지만, 근로소득 0 초과 비율은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낮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이는 연간소득 면접조사 방식에 비해 월간소득 가계부기장방식 소득조사에서 0에 가까운 작은 값의 근로소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비율이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 역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0 초과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계동향조사 재가중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90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그림 3-6] 2011~2016년 소득원천 0 초과 비율

(단위: %)



주: <표 3-16>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재산소득을 살펴보면 평균과 마찬가지로(〈표 3-15〉 참조)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0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동향조사가 재산소득을 상대적으로 과소포착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재산소득 0 초과 비율이 조금 증가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차이는 대체로 유지된다.

사적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등 사적이전 관련 항목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0 초과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11~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사적이전을 받는 비율이 10%대 초반에 불과하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40%를 넘는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다른 가구에 사적이전을 지출하는 비율이 27.6~41.7%이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90%를 넘는다.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더라도 데이터 간 차이는 거의 감소하지 않는데, 이는 월간소득 가계부기장방식에 비해 연간소득 면접조사 방식 소득조사에서 사적이전을 누락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적연금의 경우 두 데이터 중 평균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더 컸지만(〈표 3-15〉 참조) 0 초과 비율은 가계동향조사가 더 높았고,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데이터 간 차이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0 초과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데이터 간 차이의 패턴이 분명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동이 커 분명한 패턴을 요약하기 쉽지 않지만, 가계동향조사 재가중에 따라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조세부담이 큰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다.

92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17> 2011~2016년 근로소득 구간별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	0원	22.2	22.7	23.9	24.3	24.3	26.3
	~1천만 원/년 미만	15.4	13.9	13.5	13.0	12.7	11.7
	~2천만 원/년 미만	13.2	12.9	11.3	10.8	11.1	10.8
	~4천만 원/년 미만	23.5	21.8	21.3	20.8	20.5	20.1
	~6천만 원/년 미만	14.5	15.6	15.9	16.4	16.2	15.7
	~8천만 원/년 미만	6.9	7.5	8.3	8.5	8.7	8.6
	~1억 원/년 미만	2.6	3.1	3.2	3.5	3.6	3.6
	~2억 원/년 미만	1.6	2.3	2.6	2.7	2.7	3.1
	2억 원/년 이상	0.0	0.1	0.1	0.1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향조정	0원	21.5	21.1	22.2	22.8	23.4	25.0
	~1천만 원/년 미만	14.3	12.8	12.1	11.6	11.0	9.8
	~2천만 원/년 미만	12.3	11.9	10.7	10.0	9.9	9.2
	~4천만 원/년 미만	23.6	22.3	21.8	21.3	20.2	19.9
	~6천만 원/년 미만	15.5	16.7	17.0	17.5	17.6	17.5
	~8천만 원/년 미만	7.8	8.7	9.4	9.6	10.1	10.1
	~1억 원/년 미만	3.0	3.6	3.7	4.0	4.3	4.4
	~2억 원/년 미만	2.0	2.8	3.0	3.1	3.4	3.9
	2억 원/년 이상	0.0	0.1	0.1	0.1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복	0원	29.1	26.5	26.3	26.4	26.8	27.9
	~1천만 원/년 미만	7.9	7.5	7.3	6.9	6.4	5.6
	~2천만 원/년 미만	12.5	12.1	11.2	10.6	10.5	10.2
	~4천만 원/년 미만	22.2	22.5	22.0	21.5	21.3	20.4
	~6천만 원/년 미만	13.6	14.7	15.2	15.5	14.9	14.9
	~8천만 원/년 미만	7.5	8.3	8.8	9.1	9.6	9.4
	~1억 원/년 미만	3.5	4.3	4.2	4.9	5.0	5.3
	~2억 원/년 미만	3.4	3.8	4.6	4.9	5.3	6.0
	2억 원/년 이상	0.2	0.2	0.2	0.3	0.3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환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비균등화 가구근로소득의 가구 단위 분포이다. 재가중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개인가중치의 가구 평균을 가구가중치로 사용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표 3-17〉에서는 여러 소득원천 중 가장 규모가 큰 근로소득의 분포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균등화하지 않은 가구근로소득을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한 후 전체 가구 중 각 구간에 속한 가구의 비율을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 연간 근로소득이 0원인 비율은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높았지만 0원 초과 2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은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낮았고 6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비율은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높았다. 즉, 전반적으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근로소득이 높은 계층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한편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차이가 감소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모두 2011~2016년 저소득 구간의 비율이 감소하고 고소득 구간의 비율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18〉~〈표 3-20〉과 [그림 3-7]에는 개인 연령대별 소득원천 평균을 보고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는 전체 인구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는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지출 평균이 크고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작다. 한편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지출 평균이 다소 증가하고 사적이전소득 평균이 다소 감소한다. 즉,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데이터 간 근로소득, 공적이전지출, 사적이전소득 평균의 차이를 일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9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18> 2011~2016년 개인 0~17세 소득원천 평균

(단위: 만 원/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소득	동향(A)	1707	1852	1942	2029	2052	2082
	동향조정(B)	1825	1956	2020	2073	2149	2220
	금복(C)	1893	2011	2097	2165	2250	2374
	C/A(%)	110.9	108.6	108.0	106.7	109.7	114.0
	C/B(%)	103.7	102.8	103.8	104.4	104.7	106.9
사업소득	동향(A)	517	513	531	527	541	540
	동향조정(B)	506	504	529	531	533	518
	금복(C)	731	666	679	669	661	712
	C/A(%)	141.3	129.9	127.9	126.9	122.1	131.9
	C/B(%)	144.6	132.1	128.4	125.9	124.1	137.5
재산소득	동향(A)	19	18	22	24	21	22
	동향조정(B)	19	18	22	25	23	22
	금복(C)	68	66	56	59	60	59
	C/A(%)	358.5	356.4	249.8	242.1	282.9	270.2
	C/B(%)	358.3	363.4	257.2	236.3	263.8	266.3
사적이전소득	동향(A)	112	128	134	143	153	158
	동향조정(B)	77	90	100	108	117	99
	금복(C)	19	17	17	16	15	21
	C/A(%)	17.4	13.3	12.5	10.9	10.0	13.5
	C/B(%)	25.2	18.9	16.7	14.4	13.0	21.5
사적이전지출	동향(A)	172	173	177	182	179	175
	동향조정(B)	178	177	180	182	183	179
	금복(C)	99	113	112	117	116	112
	C/A(%)	57.4	65.7	63.0	64.3	65.0	64.2
	C/B(%)	55.4	63.9	62.2	64.1	63.5	62.9
공적이전소득	동향(A)	45	45	50	53	63	61
	동향조정(B)	41	43	50	53	64	61
	금복(C)	34	32	45	50	51	51
	C/A(%)	75.8	69.8	89.6	93.4	80.7	84.0
	C/B(%)	83.5	73.5	90.8	93.6	80.2	83.7
공적이전지출	동향(A)	219	238	253	269	279	293
	동향조정(B)	233	250	262	275	295	312
	금복(C)	298	304	323	332	352	395
	C/A(%)	136.4	127.7	127.9	123.5	125.9	134.5
	C/B(%)	128.2	121.5	123.3	120.8	119.3	126.5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표 3-19〉 2011~2016년 개인 18~64세 소득원천 평균

(단위: 만 원/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소득	동향(A)	1800	1942	2008	2111	2184	2245
	동향조정(B)	1895	2034	2064	2140	2220	2323
	금복(C)	1928	2064	2167	2257	2320	2427
	C/A(%)	107.1	106.3	107.9	106.9	106.2	108.1
	C/B(%)	101.7	101.5	105.0	105.5	104.5	104.5
사업소득	동향(A)	569	583	587	595	575	583
	동향조정(B)	562	574	584	606	584	583
	금복(C)	744	713	751	730	728	762
	C/A(%)	130.7	122.4	127.9	122.7	126.5	130.7
	C/B(%)	132.4	124.2	128.4	120.6	124.5	130.7
재산소득	동향(A)	45	47	47	53	55	59
	동향조정(B)	45	50	50	56	59	61
	금복(C)	114	126	112	113	133	124
	C/A(%)	255.8	269.5	236.9	214.3	243.3	208.5
	C/B(%)	251.1	254.5	224.0	200.9	224.9	203.9
사적이전소득	동향(A)	97	109	111	109	113	112
	동향조정(B)	81	94	96	94	103	94
	금복(C)	28	25	23	20	21	25
	C/A(%)	29.2	22.5	20.4	18.4	18.8	22.7
	C/B(%)	35.0	26.3	23.6	21.4	20.6	27.0
사적이전지출	동향(A)	217	221	225	232	235	232
	동향조정(B)	222	226	225	229	234	232
	금복(C)	104	121	117	118	117	116
	C/A(%)	47.8	54.7	52.3	50.9	49.9	50.1
	C/B(%)	46.7	53.5	52.1	51.7	50.2	50.2
공적이전소득	동향(A)	87	89	97	103	117	123
	동향조정(B)	83	92	98	103	118	125
	금복(C)	75	77	87	97	106	114
	C/A(%)	86.6	86.2	89.5	94.1	90.6	92.2
	C/B(%)	90.1	83.6	88.2	94.0	90.1	91.1
공적이전지출	동향(A)	226	245	258	278	288	305
	동향조정(B)	239	259	268	284	299	320
	금복(C)	306	320	339	352	365	397
	C/A(%)	135.5	130.3	131.5	126.6	126.4	130.0
	C/B(%)	127.7	123.4	126.6	123.9	121.9	124.1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환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계급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96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20> 2011~2016년 개인 65세 이상 소득원천 평균

(단위: 만 원/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소득	동향(A)	619	705	667	625	621	624
	동향조정(B)	646	754	732	701	693	692
	금복(C)	596	676	722	759	763	756
	C/A(%)	96.3	95.8	108.2	121.3	122.7	121.2
	C/B(%)	92.3	89.6	98.6	108.2	110.1	109.3
사업소득	동향(A)	214	218	218	224	226	188
	동향조정(B)	206	220	215	240	240	231
	금복(C)	292	307	327	322	277	285
	C/A(%)	136.1	141.1	150.4	144.0	122.2	151.8
	C/B(%)	141.4	139.4	152.4	134.5	115.4	123.4
재산소득	동향(A)	105	139	138	136	144	149
	동향조정(B)	109	143	146	144	158	158
	금복(C)	202	192	203	208	238	236
	C/A(%)	191.8	137.7	147.0	152.9	165.5	158.3
	C/B(%)	184.6	134.4	139.1	144.2	150.0	149.3
사적이전소득	동향(A)	191	195	194	200	191	180
	동향조정(B)	182	186	192	188	186	174
	금복(C)	158	141	136	124	121	140
	C/A(%)	83.1	72.1	70.0	62.2	63.4	77.8
	C/B(%)	86.8	75.7	70.7	66.1	65.2	80.6
사적이전지출	동향(A)	162	171	176	174	181	164
	동향조정(B)	165	173	182	177	186	171
	금복(C)	47	61	58	58	55	64
	C/A(%)	28.7	35.7	33.0	33.2	30.2	39.1
	C/B(%)	28.3	35.3	31.9	32.7	29.3	37.6
공적이전소득	동향(A)	301	326	360	410	493	512
	동향조정(B)	316	337	370	416	503	530
	금복(C)	304	328	351	409	483	518
	C/A(%)	101.2	100.8	97.5	99.7	98.0	101.2
	C/B(%)	96.2	97.4	94.9	98.3	95.9	97.6
공적이전지출	동향(A)	89	104	99	93	94	93
	동향조정(B)	98	115	116	108	107	111
	금복(C)	120	132	143	148	146	154
	C/A(%)	134.9	126.5	144.3	159.9	155.9	164.8
	C/B(%)	123.5	115.0	123.6	137.2	135.9	138.1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환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그림 3-7] 개인 연령대별 소득원천 평균



주: <표 3-18>~<표 3-20>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노인인구는 아동인구 및 근로연령인구와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여 준다. 어느 데이터를 분석하더라도 노인인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평균은 근로연령인구의 약 30~50%에 불과한 반면 노인인구의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평균은 근로연령인구보다 훨씬 크다. 데이터 간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인구는 근로연령인구와 마찬가지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지출 평균이 컸고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 평균이 작았다. 근로소득의 경우 2011~2013년의 변동이 심해 일관된 패턴을 요약하기가 쉽지 않지만, 2014~2016년에는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이 높았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연령인구와 달리 노인인구의 데이터 간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가계동향조사의 노인이 기타 공적이전소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효과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노인이 공적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효과가 결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대체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 평균이 증가하고 사적이전소득 평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를 검토한다. 흔히 개별 소득원천의 분배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합산하면서 소득분배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는 분석을 실시하는데(최근의 대표적인 예로, 김환준, 2017), 이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앞서 <표 1-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이하의 시뮬레이션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출발하여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을 누적적으로 추가하면서 단계별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계산한다.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음수는 0으로 변환)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음수는 0으로 변환)

〈표 3-21〉에는 지니계수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선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가 0.479~0.491,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가 0.490~0.519로 나타나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높게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앞서 제3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이 높지만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지니계수가 작아지고 데이터 간 차이가 커지게 된다.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면 사업소득 추가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량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0.112~-0.125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0.096~-0.108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 규모가 큰데도 사업소득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가 가계동향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부적 상관관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재산소득을 추가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0.007~0.008만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0.002~0.004만큼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지니계수를 감소시키고, 그 감소 효과가 가계동향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더라도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는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다.

100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21> 2011~2016년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지니계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	근로소득	0.491	0.485	0.484	0.481	0.479	0.490
	+사업소득	-0.125	-0.121	-0.121	-0.116	-0.112	-0.112
	+재산소득	-0.007	-0.007	-0.008	-0.008	-0.007	-0.007
	+사적이전소득	-0.028	-0.028	-0.027	-0.027	-0.028	-0.028
	-사적이전지출	+0.007	+0.006	+0.005	+0.006	+0.006	+0.005
	+공적이전소득	-0.025	-0.024	-0.027	-0.031	-0.039	-0.040
	-공적이전지출	-0.007	-0.008	-0.008	-0.009	-0.009	-0.010
	동향 조정	근로소득	0.481	0.472	0.471	0.468	0.465
+사업소득		-0.122	-0.117	-0.119	-0.116	-0.113	-0.111
+재산소득		-0.006	-0.006	-0.007	-0.007	-0.007	-0.007
+사적이전소득		-0.023	-0.023	-0.022	-0.022	-0.024	-0.022
-사적이전지출		+0.007	+0.005	+0.005	+0.006	+0.005	+0.004
+공적이전소득		-0.025	-0.023	-0.026	-0.029	-0.037	-0.038
-공적이전지출		-0.007	-0.008	-0.008	-0.008	-0.008	-0.009
금복		근로소득	0.519	0.499	0.496	0.493	0.490
	+사업소득	-0.108	-0.102	-0.101	-0.102	-0.101	-0.096
	+재산소득	-0.004	-0.002	-0.003	-0.002	-0.002	-0.004
	+사적이전소득	-0.015	-0.012	-0.011	-0.010	-0.010	-0.012
	-사적이전지출	-0.000	+0.001	+0.001	+0.001	+0.000	+0.002
	+공적이전소득	-0.024	-0.022	-0.024	-0.028	-0.031	-0.032
	-공적이전지출	-0.009	-0.008	-0.008	-0.010	-0.010	-0.011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에 개별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추가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분석한 후 근로소득 지니계수와 단계별로 이전 단계 지니계수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0.027~0.028만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0.010~0.015만큼 지니계수가 감소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사적이전소득 지니계수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사적이전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여 사적이전소득의 규모가 감소하면 사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도 0.022~0.024로 소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는 크다.

다음으로는 사적이전지출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시장소득을 구성한 후 지니계수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사적이전소득과 달리 사적이전지출이 지니계수를 0.005~0.007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동향조사의 재가중이 이러한 효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사적이전지출이 지니계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데이터 간 차이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사적이전지출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0.024~0.040만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0.022~0.032만큼 지니계수가 감소하였다. 대체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공적이전소득 지니계수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데이터 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데이터 간 차이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을 구성한 후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공적이전지출이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지출 지니계수 감소 효과의 데이터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102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22> 2011~2016년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빈곤율

(단위: %, %p)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	근로소득	37.3	36.5	36.1	35.3	35.6	36.2
	+사업소득	-18.5	-17.8	-17.4	-16.7	-15.8	-15.7
	+재산소득	-0.9	-1.1	-1.2	-1.1	-1.2	-1.1
	+사적이전소득	-3.7	-3.6	-3.6	-3.4	-3.7	-3.3
	-사적이전지출	+2.3	+2.4	+2.2	+2.4	+2.2	+2.2
	+공적이전소득	-3.5	-3.4	-3.6	-3.9	-4.8	-5.1
	-공적이전지출	+1.8	+1.8	+1.7	+1.8	+1.4	+1.3
동향 조정	근로소득	35.7	34.2	34.7	34.0	34.1	33.7
	+사업소득	-18.0	-17.2	-17.4	-17.1	-16.1	-15.5
	+재산소득	-0.8	-1.0	-1.1	-1.0	-1.2	-1.1
	+사적이전소득	-2.9	-2.8	-2.9	-2.8	-3.0	-2.4
	-사적이전지출	+2.4	+2.3	+2.3	+2.4	+2.0	+2.0
	+공적이전소득	-3.5	-3.2	-3.7	-3.9	-4.4	-5.0
	-공적이전지출	+1.8	+2.0	+1.9	+1.9	+1.2	+1.4
금복	근로소득	38.0	36.1	35.9	35.7	35.3	35.0
	+사업소득	-19.1	-17.6	-17.6	-17.1	-16.5	-16.1
	+재산소득	-1.4	-1.4	-1.3	-1.3	-1.4	-1.5
	+사적이전소득	-1.3	-1.1	-0.9	-0.8	-0.9	-1.0
	-사적이전지출	+0.7	+0.9	+0.9	+0.9	+0.7	+0.8
	+공적이전소득	-3.0	-2.8	-3.0	-3.5	-3.9	-3.7
	-공적이전지출	+2.5	+2.2	+2.2	+2.1	+2.2	+2.2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에 개별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추가한 소득의 빈곤율을 분석한 후, 근로소득 빈곤율과 단계별로 이전 단계 빈곤율과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모든 단계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표 3-22〉에는 빈곤율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의 모든 단계에서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빈곤선을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2011~2016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빈곤율이 대체로 30%대 중후반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여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유사하게 조정된 상태에서 비교해 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소득 빈곤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가 각각 15.7~18.5%, 16.1~19.1%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사업소득 규모가 크지만 사업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에는 별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더라도 이러한 분석 결과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재산소득을 추가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0.9~1.2%포인트만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1.3~1.5%포인트만큼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가 약간 크지만 데이터 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 가계동향조사의 재가중 역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한 결과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더 큰 가계동향조사의 사적이전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가 3.3~3.7%포인트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0.8~1.3%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여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감소하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도 2.4~3.0%포인트로 약간 감소하지만, 여전히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는 크다.

다음으로 빈곤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추가적으로 차감하면 빈곤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사적이전지출 규모가 큰 가계동향조사

에서는 빈곤율 증가량이 2.2~2.4%포인트로, 사적이전지출 규모가 작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빈곤율 증가량이 0.7~0.9%포인트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의 재가중은 사적이전지출의 효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3.4~5.1%포인트만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8~3.9%포인트만큼 빈곤율이 감소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크게 포착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공적이전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가 조금 크게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 재가중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추가적으로 차감한 후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이전지출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상대적으로 공적이전지출 빈곤율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 재가중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표 3-23>~<표 3-28>에서는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를 개인 연령대별로 분석하였다. 연령대별, 소득원천별, 분배지표별로 데이터 간 차이가 복잡한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이하에서는 소득원천별 효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결과를 요약한다.

먼저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든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보다 노인인구의 근로소득 수준이 낮고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데이터 간 차이를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근로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 모두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크게 나타나고,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대체로 근로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감소하여 데이터 간 차이가 증가한다. 하지만 노인인구의 경우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더 크지만, 근로소득 빈곤율은 2011년을 제외하면 가계동향조사가 더 크고,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면 데이터 간 근로소득 빈곤율 차이가 대체로 사라진다.

〈표 3-23〉 2011~2016년 개인 0~17세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지니계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	근로소득	0.453	0.443	0.431	0.427	0.430	0.439
	+사업소득	-0.145	-0.138	-0.136	-0.134	-0.136	-0.141
	+재산소득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사적이전소득	-0.027	-0.028	-0.027	-0.027	-0.031	-0.029
	-사적이전지출	+0.002	+0.001	+0.000	+0.002	+0.002	+0.001
	+공적이전소득	-0.010	-0.007	-0.008	-0.008	-0.011	-0.010
	-공적이전지출	-0.008	-0.008	-0.008	-0.008	-0.008	-0.009
동향 조정	근로소득	0.428	0.423	0.416	0.419	0.415	0.411
	+사업소득	-0.140	-0.134	-0.134	-0.135	-0.133	-0.132
	+재산소득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사적이전소득	-0.017	-0.018	-0.018	-0.020	-0.023	-0.017
	-사적이전지출	+0.002	+0.001	+0.000	+0.002	+0.002	+0.001
	+공적이전소득	-0.007	-0.006	-0.007	-0.008	-0.010	-0.009
	-공적이전지출	-0.008	-0.009	-0.008	-0.008	-0.007	-0.009
금복	근로소득	0.470	0.453	0.446	0.442	0.434	0.436
	+사업소득	-0.113	-0.112	-0.115	-0.119	-0.112	-0.103
	+재산소득	+0.004	+0.004	+0.002	+0.002	+0.003	+0.002
	+사적이전소득	-0.006	-0.005	-0.004	-0.004	-0.005	-0.005
	-사적이전지출	-0.001	-0.000	-0.001	-0.000	-0.002	+0.000
	+공적이전소득	-0.010	-0.009	-0.010	-0.011	-0.011	-0.009
	-공적이전지출	-0.008	-0.007	-0.008	-0.009	-0.010	-0.011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수 계급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에 개별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추가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분석한 후 근로소득 지니계수와 단계별로 이전 단계 지니계수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106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24> 2011~2016년 개인 0~17세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빈곤율

(단위: %, %p)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	근로소득	33.3	31.7	29.6	28.2	29.9	30.4
	+사업소득	-20.7	-19.9	-18.9	-18.6	-18.7	-19.5
	+재산소득	-0.3	-0.2	-0.3	-0.2	-0.2	-0.1
	+사적이전소득	-4.2	-4.1	-4.3	-4.1	-5.0	-4.8
	-사적이전지출	+1.2	+1.3	+1.2	+1.8	+1.4	+1.1
	+공적이전소득	-1.5	-1.4	-1.3	-1.6	-1.5	-1.1
	-공적이전지출	+1.8	+2.0	+1.6	+1.8	+1.1	+1.3
동향 조정	근로소득	29.8	28.8	28.0	27.5	27.8	26.5
	+사업소득	-20.3	-19.3	-18.8	-18.8	-18.3	-18.2
	+재산소득	-0.2	-0.2	-0.2	-0.2	-0.2	-0.3
	+사적이전소득	-2.8	-2.6	-3.2	-3.2	-3.6	-2.6
	-사적이전지출	+1.3	+1.4	+1.3	+1.8	+1.3	+0.9
	+공적이전소득	-1.1	-1.0	-1.3	-1.5	-1.3	-1.1
	-공적이전지출	+2.0	+2.3	+2.0	+1.7	+1.0	+1.2
금복	근로소득	31.8	30.4	30.0	30.0	28.7	27.9
	+사업소득	-20.8	-19.0	-19.0	-19.5	-18.2	-18.3
	+재산소득	-0.4	-0.4	-0.4	-0.4	-0.3	-0.3
	+사적이전소득	-0.8	-0.7	-0.5	-0.5	-0.5	-0.7
	-사적이전지출	+0.7	+0.7	+0.8	+0.8	+0.7	+0.8
	+공적이전소득	-1.3	-1.0	-1.4	-1.5	-1.6	-0.9
	-공적이전지출	+2.8	+2.3	+2.3	+2.3	+2.6	+2.2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환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에 개별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추가한 소득의 빈곤율을 분석한 후 근로소득 빈곤율과 단계별로 이전 단계 빈곤율과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모든 단계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표 3-25〉 2011~2016년 개인 18~64세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지니계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	근로소득	0.459	0.449	0.447	0.441	0.432	0.440
	+사업소득	-0.129	-0.127	-0.128	-0.121	-0.116	-0.118
	+재산소득	-0.004	-0.003	-0.004	-0.004	-0.003	-0.003
	+사적이전소득	-0.019	-0.019	-0.019	-0.018	-0.018	-0.018
	-사적이전지출	+0.005	+0.004	+0.003	+0.003	+0.003	+0.002
	+공적이전소득	-0.017	-0.015	-0.018	-0.019	-0.022	-0.022
	-공적이전지출	-0.006	-0.007	-0.007	-0.008	-0.008	-0.008
동향 조정	근로소득	0.448	0.440	0.438	0.432	0.426	0.430
	+사업소득	-0.127	-0.123	-0.125	-0.121	-0.118	-0.115
	+재산소득	-0.003	-0.003	-0.004	-0.003	-0.003	-0.002
	+사적이전소득	-0.015	-0.016	-0.016	-0.015	-0.017	-0.015
	-사적이전지출	+0.005	+0.004	+0.003	+0.003	+0.003	+0.002
	+공적이전소득	-0.015	-0.015	-0.018	-0.018	-0.022	-0.021
	-공적이전지출	-0.006	-0.007	-0.008	-0.008	-0.007	-0.008
금복	근로소득	0.488	0.469	0.464	0.460	0.455	0.458
	+사업소득	-0.115	-0.106	-0.105	-0.106	-0.107	-0.102
	+재산소득	+0.000	+0.003	+0.001	+0.002	+0.004	+0.000
	+사적이전소득	-0.008	-0.007	-0.006	-0.005	-0.005	-0.006
	-사적이전지출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공적이전소득	-0.015	-0.014	-0.015	-0.017	-0.017	-0.018
	-공적이전지출	-0.009	-0.007	-0.007	-0.009	-0.009	-0.009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환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에 개별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추가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분석한 후 근로소득 지니계수와 단계별로 이전 단계 지니계수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108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26> 2011~2016년 개인 18~64세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빈곤율

(단위: %, %p)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	근로소득	32.4	30.9	30.5	29.1	28.3	28.4
	+사업소득	-19.3	-18.7	-18.5	-17.7	-16.3	-16.5
	+재산소득	-0.6	-0.8	-0.9	-0.7	-0.8	-0.7
	+사적이전소득	-3.0	-2.9	-2.9	-2.6	-2.7	-2.3
	-사적이전지출	+2.2	+2.2	+2.1	+2.0	+1.7	+2.0
	+공적이전소득	-2.8	-2.5	-2.6	-2.5	-2.9	-3.1
	-공적이전지출	+1.8	+1.9	+1.7	+1.8	+1.4	+1.2
동향 조정	근로소득	30.8	29.3	30.0	28.8	28.4	27.5
	+사업소득	-19.0	-17.9	-18.4	-18.0	-16.8	-16.1
	+재산소득	-0.5	-0.8	-0.9	-0.7	-0.8	-0.7
	+사적이전소득	-2.4	-2.4	-2.5	-2.2	-2.4	-1.9
	-사적이전지출	+2.2	+2.1	+2.3	+2.0	+1.6	+1.7
	+공적이전소득	-2.6	-2.3	-2.9	-2.7	-2.8	-3.1
	-공적이전지출	+1.8	+2.0	+1.8	+1.8	+1.1	+1.3
금복	근로소득	33.2	31.5	31.1	30.7	29.8	29.2
	+사업소득	-20.1	-18.5	-18.5	-17.8	-17.6	-17.1
	+재산소득	-1.1	-1.0	-1.0	-1.1	-1.0	-1.0
	+사적이전소득	-1.0	-0.9	-0.8	-0.6	-0.7	-0.7
	-사적이전지출	+0.7	+0.9	+0.9	+1.0	+0.7	+0.8
	+공적이전소득	-2.2	-2.0	-2.0	-2.4	-2.5	-2.3
	-공적이전지출	+2.4	+2.2	+2.1	+2.1	+2.1	+2.2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에 개별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추가한 소득의 빈곤율을 분석한 후 근로소득 빈곤율과 단계별로 이전 단계 빈곤율과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모든 단계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표 3-27〉 2011~2016년 개인 65세 이상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지니계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	근로소득	0.736	0.741	0.734	0.728	0.726	0.740
	+사업소득	-0.063	-0.061	-0.071	-0.072	-0.066	-0.056
	+재산소득	-0.041	-0.042	-0.045	-0.045	-0.041	-0.042
	+사적이전소득	-0.108	-0.101	-0.094	-0.093	-0.090	-0.097
	-사적이전지출	+0.036	+0.033	+0.031	+0.035	+0.034	+0.035
	+공적이전소득	-0.115	-0.110	-0.114	-0.137	-0.167	-0.177
	-공적이전지출	-0.005	-0.007	-0.007	-0.007	-0.006	-0.007
동향 조정	근로소득	0.748	0.749	0.738	0.725	0.723	0.748
	+사업소득	-0.063	-0.062	-0.069	-0.072	-0.060	-0.064
	+재산소득	-0.042	-0.044	-0.047	-0.047	-0.047	-0.046
	+사적이전소득	-0.104	-0.095	-0.090	-0.085	-0.084	-0.088
	-사적이전지출	+0.035	+0.032	+0.028	+0.032	+0.032	+0.033
	+공적이전소득	-0.119	-0.115	-0.116	-0.138	-0.168	-0.178
	-공적이전지출	-0.005	-0.008	-0.008	-0.008	-0.006	-0.008
금복	근로소득	0.772	0.752	0.747	0.743	0.753	0.756
	+사업소득	-0.064	-0.060	-0.062	-0.056	-0.054	-0.057
	+재산소득	-0.052	-0.048	-0.042	-0.039	-0.042	-0.043
	+사적이전소득	-0.098	-0.084	-0.077	-0.069	-0.066	-0.074
	-사적이전지출	+0.002	+0.004	+0.004	+0.005	+0.005	+0.007
	+공적이전소득	-0.104	-0.104	-0.106	-0.125	-0.144	-0.146
	-공적이전지출	-0.011	-0.011	-0.013	-0.012	-0.012	-0.014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한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에 개별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추가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분석한 후 근로소득 지니계수와 단계별로 이전 단계 지니계수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110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3-28> 2011~2016년 개인 65세 이상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빈곤율

(단위: %, %p)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동향	근로소득	75.3	75.2	75.3	76.9	77.1	77.7
	+사업소득	-8.7	-8.6	-8.7	-8.9	-8.6	-6.7
	+재산소득	-3.8	-4.4	-4.3	-4.4	-4.3	-4.3
	+사적이전소득	-6.5	-6.2	-5.8	-5.7	-5.8	-4.8
	-사적이전지출	+5.6	+5.5	+4.6	+5.4	+5.5	+4.8
	+공적이전소득	-12.5	-12.6	-12.8	-14.9	-18.7	-19.9
	-공적이전지출	+1.7	+1.1	+2.0	+2.2	+2.4	+1.9
동향 조정	근로소득	75.3	74.7	73.9	74.2	75.3	76.2
	+사업소득	-8.2	-8.5	-8.6	-9.2	-8.8	-8.1
	+재산소득	-3.6	-4.2	-4.3	-4.4	-4.7	-4.3
	+사적이전소득	-6.0	-5.5	-4.9	-5.1	-5.3	-4.4
	-사적이전지출	+5.6	+4.8	+4.2	+5.0	+5.4	+4.7
	+공적이전소득	-13.1	-12.5	-12.6	-14.5	-18.2	-20.2
	-공적이전지출	+1.7	+1.6	+2.0	+2.5	+2.2	+2.0
금복	근로소득	76.9	74.9	74.2	74.0	74.9	75.3
	+사업소득	-9.6	-9.4	-9.9	-9.1	-7.9	-8.1
	+재산소득	-5.3	-5.1	-4.7	-4.3	-5.3	-5.6
	+사적이전소득	-4.0	-3.2	-2.4	-2.7	-3.0	-3.3
	-사적이전지출	+0.9	+1.2	+0.9	+0.8	+1.0	+1.3
	+공적이전소득	-11.3	-11.4	-11.8	-13.2	-14.9	-14.9
	-공적이전지출	+2.6	+2.2	+2.5	+1.6	+2.0	+2.1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 '동향조정'은 재가중환 가계동향조사,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 가구를 제외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재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제외되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에 개별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추가한 소득의 빈곤율을 분석한 후 근로소득 빈곤율과 단계별로 이전 단계 빈곤율과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모든 단계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다음으로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사업소득 규모가 작은 노인인구의 사업소득 분배 효과가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 지니계수 감소 효과는 대체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크게 나타났지만, 사업소득 빈곤율 감소 효과는 데이터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재산소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산소득 규모가 작은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는([그림 3-7] 참조) 재산소득의 분배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반면 재산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노인인구의 경우([그림 3-7] 참조) 재산소득이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재산소득을 훨씬 크게 포착하기 때문에([그림 3-7] 참조) 재산소득이 노인인구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대체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더 크게 나타났지만, 재산소득이 노인인구의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의 데이터 간 차이는 분명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은 모든 연령집단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감소시켰다. 그런데 재산소득과 유사하게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의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크기 때문에([그림 3-7] 참조), 사적이전소득의 분배 효과 역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컸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가 사적이전소득을 훨씬 크게 포착하기 때문에([그림 3-7] 참조)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사적이전소득 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여 사적이전소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특성을 가진 집단의 비율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하면 사적이전소득 분배 효과의 데이터 간 차이가 일정하게 감소한다.

다음으로 사적이전지출은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빈곤율을 증가시

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적이전지출의 빈곤율 증가 효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사적이전지출을 크게 포착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그림 3-7] 참조) 크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보다 노인인구에게 크게 나타났다. 한편 사적이전지출은 노인인구의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데, 그 효과 역시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은 모든 연령집단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감소시켰는데, 특히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보다 공적이전소득을 많이 받는 노인인구에게([그림 3-7] 참조) 공적이전소득의 분배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선별적 성격이 강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계동향조사에서([그림 3-5] 참조) 공적이전소득이 노인인구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부터 노인인구의 공적이전소득 분배 효과가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데이터 간 차이와 시간에 따른 변화가 노인인구에 비해 상당히 작았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의 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세금과 사회보험료와 같이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공적이전지출이 모든 연령집단의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한편 공적이전지출을 차감하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적이전지출이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소결

이 절에서는 2011~2016년(소득연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연구를 통해 대체로 알려진 바와 같이(이원진, 구인회, 2015, p. 54; 홍민기, 2016, p. 24)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높게 추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의 원인을 가구 및 개인 특성의 차이와 개별 소득원천 분포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4인 이상 가구 비율, 가구주가 남성, 50대, 대졸, 상용근로자인 비율, 개인이 남성, 20대 이하, 50대, 비취업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8〉 참조). 전반적으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집단 내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게 조정하면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평균과 중위값은 증가하고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감소한다(〈표 3-12〉 참조). 즉, 가구 및 개인 특성의 데이터 간 차이가 소득 규모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하지만 소득 불평등 수준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구 및 개인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더 많은 고소득층이 표본에 포함되거나 고소득층의 소득 과소보고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원천 분포를 살펴본 결과 데이터 간 근로소득 분포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높은데(〈표 3-15〉, 〈표 3-17〉, 〈표

3-21) 참조), 특히 2011~2016년 연간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가계동향조사는 4.2~6.8%에 불과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7.2~11.6%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비균등화 가구소득 가구 단위 분포 기준, <표 3-17> 참조).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규모 역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크게 조사되었다(<표 3-15> 참조).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산하면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감소하는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가 컸지만, 빈곤율 감소 효과의 데이터 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표 3-21>, <표 3-22> 참조).

이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같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의 규모가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크게 추정되는 것과 달리 사적이전 소득 및 지출의 규모는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표 3-15> 참조). 이는 부분적으로는 사적이전소득이 많은 저소득층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간소득 면접조사 방식에 비해 월간소득 가계부기장방식 소득조사에서 사적이전이 누락되지 않고 정확하게 조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가계동향조사의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적이전소득의 분배 효과 역시 가계동향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3-21>, <표 3-22> 참조).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이전소득 분포의 데이터 간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소득비례적 성격이 강한 공적연금의 규모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더 크고, 선별적 성격이 강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규모는 가계동향조사가 더 크며, 보편적 성격이 강한 기초(노령)연금의 규모는, 특히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유사하게 조정할 때 두

데이터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표 3-15〉 참조). 전체 공적이전소득의 분배 효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가 조금 더 컸다(〈표 3-21〉, 〈표 3-22〉 참조).

다음으로 개인 연령대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인구 및 근로연령인구와 노인인구의 데이터 간 가처분소득 분포 차이의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는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 및 빈곤율이 크지만, 노인인구의 경우 지니계수의 데이터 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고 빈곤율은 오히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더 낮았다(〈표 3-7〉 참조). 그런데 가계동향조사에서 노인의 특성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노인과 유사하게 조정하면 2013~2016년 가계동향조사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 특히 2015~2016년에는 재가중환 가계동향조사의 노인빈곤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도 낮다(〈표 3-14〉 참조). 즉,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부분적인 이유는 전체 노인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가계동향조사에서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적·공적이전소득이 노인인구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표 3-27〉, 〈표 3-28〉 참조).

한편 이 절에서는 2011~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조사 방식 변화가 개별 소득원천의 분포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단순히 시간에 따른 변화를 기술하는 것만으로 그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소득조사 방식의 변화 시점에 나타난 소득원천 분포의 변화가 예측과 일치한다면 소득조사 방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5년(소득연도)에 재산소득을 금융소득, 임대수입, 기타 재산소득으로 세분화하고 과거 사업

소득으로 조사하였던 임대사업등록자의 임대수입을 재산소득으로 조사하였고, 2016년(소득연도)에는 재산소득을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 개념으로 조사하였다(〈표 3-3〉 참조). 분석 결과 실제로 2014~2015년에는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소득 평균 비율이 199.4%에서 221.7%로 증가하였고 2015~2016년에는 221.7%에서 195.5%로 감소하였다(〈표 3-15〉 참조).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6년(소득연도)에 사적이전소득을 가구 간 이전소득과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하고 사적이전소득과 가구 간 이전지출에 현물을 포함하였는데(〈표 3-3〉 참조), 2015~2016년에 가계동향조사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 사적이전소득과 가구 간 이전지출 평균 비율이 각각 24.4%에서 30.0%, 38.5%에서 46.4%로 증가하였다(〈표 3-15〉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추이를 분석할 때 소득조사 방식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제 4 장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비교 분석

제1절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 방법

제2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전체 집단 분석

제3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하위 집단별 분석

제4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소득분배지표 변화

제5절 소결



4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 행정정보완데이터 비교 분석

제1절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 방법

이 장에서는 2017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와 행정정보완데이터를 비교·분석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에 공개된 정보를 요약하여(통계청, 2019c, pp. 31-34) 통계청이 소득과 비소비지출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통계청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기관으로부터 소득과 비소비지출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과 개인 또는 가구 단위로 연계한 후 서베이 방식으로 조사한 소득과 비소비지출 데이터를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통계청, 2019c, pp. 31-34). 이러한 과정은 크게 행정데이터 입수, 연계, 보완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데이터 입수 과정을 살펴보면 통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및 소득세 데이터를, 보건복지부와 각 연금공단 등으로부터 각종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보험료 데이터를 입수하였다(〈표 4-1〉 참조). 통계청이 입수한 행정데이터는 주요 소득원천을 대부분 포괄하지만, 행정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한 항목도 일부 존재한다. 조사표의 소득 및 비소비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타 재산소득(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기타 정부보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 농어업 정부보조금 등), 가구 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주민세 등), 건강보

협료, 고용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에 대해서는 행정데이터를 입수하지 않았다. 크게 보면 주로 사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지출에 대한 행정데이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표 4-1>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활용 내역

항목		행정자료	행정자료 보유기관	
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자활급여	국세청 보건복지부	
	사업소득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국세청	
	재산소득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원천세)	국세청
		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종합소득세)	국세청
	공적이전 소득	공적연금	연금지급액	각 연금공단
		기초연금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포함)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급여(지자체지원) 등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지출	세금	소득세	소득세(종합소득세,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국민연금공단	
		기타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여금 각 직역연금공단	

자료: 통계청. (2019c).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7. 7. 인출. p. 32.

다음으로 통계청은 입수한 행정데이터를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가구 단위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에 연계하였다. 2017년(소득연도) 기준으로 표본인 4만 8590명 중 92%가 연계되었고 연도별 연계율은 92~95%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19c, p. 33). 한편 행정데이터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수의 표본에 대해 조사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소득 분포에 편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계청은 연계표본의 조사데이터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후 회귀 모델을 활용한 혼합 비대체(ratio imputation) 방법으로 미연계 표본의 데이터를 보정하였다(통계청, 2019d, p. 14).

〈표 4-2〉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 기준

항목	항목별 보완 기준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대체 보완 • (예외사항) 행정자료 기준으로 과세미신고 금액 이하인 경우,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중 큰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국세청 미신고 소득에 대한 정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분류 차이에 따른 중복으로 추정되는 경우(행정자료에는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이 있는데, 조사자료에는 반대인 경우)는 조사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가구 단위 소득의 정확성 확보
사업소득 임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기본적으로 조사자료를 사용하나, 무응답인 경우는 행정자료로 보완 • (고려사항) 가구원 간 사업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 단위에서 보완
금융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 • (예외사항) 소수의 빌려준 돈이 있는 경우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중 큰 금액 사용
공적이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 • (해당항목)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 장려금,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 • (예외사항) 양육수당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미입수로 두 자료 중 큰 금액을 사용
비소비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행정자료로 조사자료 전면 대체 보완 • (해당항목) 소득세, 공적연금기여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개 연금)

자료: 통계청. (2019c).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7. 7. 인출. p. 34.

마지막으로 통계청은 연계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데이터를 보완하였다. 큰 틀에서 조사 대상 소득과 개념이 유사한 항목에 대해 행정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세부적으로는 〈표 4-2〉와 같이 소득 항목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른 보완 기준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행정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금융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소득세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사데이터를 행정데이터로 전면적으로 대체하였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사데이터를 행정데이터로 대체하지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서베이를 통해 포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미신고 금액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값 중 큰 값을 사용하였다. 한편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경우 행정데이터가 조사 대상 소득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행정데이터 활용이 논란이 될 수 있어, 무응답 사례만 행정데이터로 보완하되 기본적으로는 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다(통계청, 2019c, p. 33). 홍민기(2017, p. 6)는 근로소득은 국세통계가 참값에 가깝지만 사업소득은 국세통계에 비과세자가 제외되고 자영업자의 과소보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서베이를 조사된 데이터가 국세통계보다 정확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상이한 행정자료 보완 기준을 뒷받침한다. 정리하면 금융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소득세와 공적연금 보험료가 대부분 행정데이터로 대체되었고, 가장 규모가 큰 근로소득의 경우 주로 국세청의 소득데이터를 사용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주로 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제2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전체 집단 분석

이 절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소득연도)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를 비교·분석한다. 우선 <표 4-3>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를 토대로 소득 및 비소비지출 항목의 분류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는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은 항목 분류에 따라 변수가 구성되어 있고, 이 장의 분석에서도 소득 및 비소비지출 항목의 명칭과 정의는 모두 이를 따른다. 2016년(소득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의 사례 수는 1만 8497가구, 4만 9518명이다(통계청, 2017c).

〈표 4-3〉 2017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및 비소비지출 항목

항목	내용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현금 및 현물 보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공제 전 금액
사업소득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수입(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대출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자가소비용 생산품 등 현물소득 포함
재산소득	재산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금융소득, 임대소득)에서 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현물소득 포함
금융소득	채권, 예금, 적금 및 개인 간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보험, 신탁,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서 대출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임대소득	주택, 건물, 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에서 임대용 부동산 유지·관리비, 대출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현물소득 포함
기타 재산소득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유형자산(주택, 건물, 토지 이외)과 무형자산(저작권, 인세, 특허권 등)으로부터의 소득 등
사적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 자녀, 친지,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비영리단체이전소득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민간비영리단체로부터 장학금, 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사적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 자녀, 친지, 동료 등에게 보낸 생활보조금, 경조금 등
비영리단체이전지출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노조비, 친목회비 등
공적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장수혜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입양아동수당,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보육시설로 입금되는 보육료 등은 제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기초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금. 가구로 직접 지급되지 않는 의료급여 제외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 농업업 정부보조금(쌀 직불금 등), 보훈연금, 체육연금, 장수수당 등

124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항목	내용
공적이전지출	
세금	
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연말정산 공제 후 금액. 양도소득세, 취득세, 벌금 등 부정기적인 세금 제외
재산세	토지와 주택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 포함
자동차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기타세금	주민세, 총포·석궁 등 소지허가 등록면허세 등
사회보험료	
국민연금기여금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 연금기여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자료: 통계청. (2017d).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meta.narostat.kr>에서 2019. 10. 1. 인출.

1.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변화

<표 4-4>에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를 요약하여 보고하였다. 표에 보고한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 시점 한국 소득 분포를 대표하는 요약치로, 통계청이 작성한 공식 소득분배지표와 거의 일치한다.²⁰⁾ 표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이 대체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규모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서베이로 조사한 시장소득의 평균은 연 2915만 원인데 행정보완데이터의 시장소득 평균은 연 3195만 원으로 나타나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시장소득이 280만 원, 9.6% 증가하였다. 또한 행정자료 보완은 가처분소득 평균을 연 258만 원, 9.5% 증가시켰다. 한편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중위값 역시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각각 7.1%,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와 이 연구의 행정보완데이터의 재산소득에 작은 차이가 존재하고, 통계청과 이 연구의 소득분배지표 분석 방법의 기술적 디테일에 사소한 차이가 있어 분석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표 4-4)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구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조사 (A)	행정 (B)	C =B-A	C/A (%)	조사 (A)	행정 (B)	C =B-A	C/A (%)
평균(만 원/년)		2915	3195	+280	+9.6	2723	2981	+258	+9.5
10분위 경계값 (만 원/ 년)	P10	624	696	+72	+11.6	882	922	+40	+4.5
	P20	1270	1286	+16	+1.2	1316	1369	+53	+4.0
	P30	1700	1772	+72	+4.3	1684	1783	+100	+5.9
	P40	2079	2214	+135	+6.5	2007	2155	+148	+7.4
	P50	2477	2652	+175	+7.1	2336	2550	+214	+9.1
	P60	2900	3165	+265	+9.1	2689	2971	+282	+10.5
	P70	3464	3745	+281	+8.1	3173	3485	+312	+9.8
	P80	4158	4568	+410	+9.9	3766	4175	+409	+10.9
	P90	5400	5911	+511	+9.5	4742	5281	+540	+11.4
P90/P10		8.66	8.50	-0.17	-1.9	5.37	5.73	+0.35	+6.6
P90/P50		2.18	2.23	+0.05	+2.2	2.03	2.07	+0.04	+2.1
P50/P10		3.97	3.81	-0.16	-4.1	2.65	2.77	+0.12	+4.5
5분위 소득 점유율 (%, %p)	1분위	4.1	4.1	-0.1	-1.4	6.2	5.9	-0.3	-4.8
	2분위	11.6	11.0	-0.5	-4.6	12.3	11.9	-0.4	-3.1
	3분위	17.1	16.7	-0.4	-2.2	17.2	17.1	-0.0	-0.1
	4분위	23.9	23.7	-0.2	-0.8	23.4	23.5	+0.1	+0.5
	5분위	43.3	44.5	+1.2	+2.7	40.9	41.5	+0.6	+1.4
5분위배율		10.44	10.87	+0.43	+4.1	6.55	6.98	+0.43	+6.5
지니계수		0.390	0.402	+0.012	+3.2	0.346	0.355	+0.009	+2.7
빈곤율(% , %p)		17.9	19.8	+1.9	+10.7	16.1	17.6	+1.5	+9.1
빈곤갭비율(% , %p)		54.5	49.2	-5.2	-9.6	35.3	35.2	-0.1	-0.3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 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지표는 모두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좀 더 자세하게 표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규모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함께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처분소득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가처분소득 10분위

경계값이 모두 증가하지만, 가처분소득 분포의 하위보다 중상위 분위의 경계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가처분소득 P10의 증가율은 4.5%에 그쳤지만 P50~P90은 9.1~1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처분소득 분포의 산포도가 확대된 결과 P90/P10, P90/P50, P50/P10, 5분위배율, 지니계수, 빈곤율 등의 소득 분배지표가 모두 악화되었다. P90/P10, P90/P50, P50/P10 중에서는 P90/P50의 증가율이 비교적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처분소득 분포의 중위-상위 격차보다 중위-하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0.346에서 0.355로 0.009 증가하였고, 빈곤율은 16.1%에서 17.6%로 1.5%포인트 증가하였다. 분위별 가처분소득 점유율을 살펴보면 1~3분위의 소득점유율이 감소하고 4분위와 5분위의 소득점유율이 각각 0.1%포인트,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위 20% 집단의 가처분소득 평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한편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시장소득 분포 역시 대체로 더 불평등해지는데, 가처분소득 분포 변화와 비교하면 구체적인 변화 양상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시장소득 10분위 경계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처분소득과 유사하게 P20~P50보다 P60~P90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가처분소득과 달리 P10의 증가율이 11.6%로 가장 높은 특이한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서베이에서 시장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이 행정데이터를 통해 일정하게 포착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처럼 P10의 증가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P90/P10과 P50/P10은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자료 보완 후 P90/P50, 5분위배율, 지니계수, 빈곤율 등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조사데이터보다 행정보완데이터의 시장소득 분포가

대체로 더 불평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자료 보완 후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각각 0.390에서 0.402로, 17.9%에서 19.8%로 증가하였고 1~4분위의 소득점유율이 감소한 대신 5분위의 소득점유율이 43.3%에서 4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구간별 비율

(단위: %, %p)

구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조사 (A)	행정 (B)	B-A	조사 (A)	행정 (B)	B-A
0원	4.4	2.3	-2.2	0.3	0.4	+0.1
~1천만 원/년 미만	13.9	14.9	+1.0	12.7	11.3	-1.4
~2천만 원/년 미만	11.4	12.2	+0.8	14.3	14.7	+0.4
~4천만 원/년 미만	24.1	22.2	-1.9	28.9	26.1	-2.9
~6천만 원/년 미만	18.9	17.9	-1.0	20.8	20.2	-0.6
~8천만 원/년 미만	11.9	12.1	+0.2	11.4	12.4	+1.0
~1억 원/년 미만	6.8	7.3	+0.5	5.9	6.9	+1.0
~2억 원/년 미만	7.7	9.8	+2.1	5.0	7.2	+2.2
2억 원/년 이상	0.9	1.3	+0.4	0.6	0.8	+0.1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비균등화 가구소득의 가구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다음으로 〈표 4-5〉에서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변화를 소득구간별로 살펴보았다. 앞서 〈표 4-4〉에서는 균등화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를 분석하였지만 〈표 4-5〉에서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실제 소득값의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비균등화 가구소득의 가구 단위 분포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2017년(조사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 1만 8497가구 중 시장소득이 0원인 가구의 비율이 조사데이터에서 4.4%, 행정보완데이터에서 2.3%로 나타나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2.2%포인트 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서베이에서 시장소득이 없

다고 응답하였으나 행정데이터를 통해 시장소득이 포착된 가구의 존재가 행정자료 보완 후 연간 시장소득 0원 초과 1천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1.0%포인트 증가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이와 같은 저소득 구간 내의 부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시장소득이 연 6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변화가 관찰된다. 가처분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관찰되는데, 가처분소득이 연 6천만 원 이상 고소득가구의 비율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서베이에서 고소득층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를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정하게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표 4-6>과 <표 4-7>에서는 조사데이터와 행정정보완데이터를 개인ID로 연결하여 소득분위별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시장소득 조사값으로 5분위를 구분하여 시장소득 조사값과 행정정보완값 평균을 분석한 결과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40.3%로 가장 높고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소득 행정정보완값으로 5분위를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해 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은 정반대의 결과가 관찰된다. 가처분소득 분석 결과를 보고한 <표 4-7> 역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 준다. 이처럼 소득분위를 구분하는 기준소득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무작위 측정오차 등으로 인해 소득 조사값과 행정정보완값 사이에 비체계적 차이가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체계적 차이로 인해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의 증감이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조사값이 큰 사례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조사값이 작은 사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행정정보완값이 큰 사례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행정보완값이 작은 사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표 4-6〉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시장소득분위별 시장소득 평균 변화

(단위: 만 원/년)

구분	시장소득 평균				구분	시장소득 평균					
	조사 (A)	행정 (B)	C =B-A	C/A (%)		조사 (A)	행정 (B)	C =B-A	C/A (%)		
조사 시장 소득 분위	1분위	604	848	+244	+40.3	행정 보완 시장 소득 분위	1분위	775	654	-122	-15.7
	2분위	1686	1909	+223	+13.3		2분위	1785	1763	-22	-1.2
	3분위	2484	2727	+243	+9.8		3분위	2544	2665	+122	+4.8
	4분위	3483	3765	+282	+8.1		4분위	3425	3787	+362	+10.6
	5분위	6319	6729	+411	+6.5		5분위	6045	7108	+1063	+17.6
	전체	2915	3195	+280	+9.6		전체	2915	3195	+280	+9.6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시장소득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으로 구분한 소득분위별로 시장소득 조사값 평균과 행정보완값 평균을 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표 4-7〉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평균 변화

(단위: 만 원/년)

구분	가처분소득 평균				구분	가처분소득 평균					
	조사 (A)	행정 (B)	C =B-A	C/A (%)		조사 (A)	행정 (B)	C =B-A	C/A (%)		
조사 가처분 소득 분위	1분위	850	1116	+266	+31.3	행정 보완 가처분 소득 분위	1분위	1056	886	-170	-16.1
	2분위	1674	1926	+253	+15.1		2분위	1757	1776	+19	+1.1
	3분위	2337	2606	+269	+11.5		3분위	2400	2556	+156	+6.5
	4분위	3187	3470	+283	+8.9		4분위	3133	3507	+373	+11.9
	5분위	5570	5789	+219	+3.9		5분위	5271	6182	+911	+17.3
	전체	2723	2981	+258	+9.5		전체	2723	2981	+258	+9.5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가처분소득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으로 구분한 소득분위별로 가처분소득 조사값 평균과 행정보완값 평균을 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130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4-8>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분위 변화

(단위: %)

구분		행정보완 시장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조사 시장 소득 분위	1분위	16.5	2.6	0.6	0.3	0.0	20.0
	2분위	2.6	12.8	3.4	1.0	0.2	20.0
	3분위	0.6	3.7	11.6	3.4	0.6	20.0
	4분위	0.2	0.8	3.8	12.1	3.1	20.0
	5분위	0.0	0.1	0.6	3.2	16.0	20.0
	계	20.0	20.0	20.0	20.0	20.0	100.0
구분		행정보완 가처분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조사 가처분 소득 분위	1분위	15.6	3.3	0.7	0.4	0.1	20.0
	2분위	3.0	11.9	3.8	1.1	0.3	20.0
	3분위	1.0	3.7	10.7	3.6	0.9	20.0
	4분위	0.3	0.9	4.1	11.4	3.3	20.0
	5분위	0.1	0.2	0.7	3.6	15.4	20.0
	계	20.0	20.0	20.0	20.0	20.0	100.0

주: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조사값으로 구분한 분위와 행정보완값으로 구분한 분위의 결합분포를 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이러한 비체계적 차이는 조사값으로 구분한 소득분위와 행정보완값으로 구분한 소득분위 간의 변동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4-8>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으로 구분한 분위가 일치하는 사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소득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의 상관관계가 강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소득분위가 변화한 사례의 규모도 작지 않아 조사값과 행정보완소득 사이에 비체계적 차이가 일정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시장소득분위 변화와 가처분소득분위 변화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분위 변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2.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원천 변화

이상의 분석 결과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하에서는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개별 소득원천의 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우선 <표 4-9>에는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원천 분포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많은 소득 항목이 개인 단위로 조사·보완되지만,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분배지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를 보고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개별 소득원천의 변화 양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러 소득원천 중 행정자료 보완 후 절대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조사값 평균(2118만 원/년)과 행정보완값 평균(2267만 원/년)의 차이가 연 14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의 행정데이터와 비교할 때 서베이에서 근로소득을 과소보고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 후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77.1%에서 82.1%로,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이 연 2748만 원에서 276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주로 조사값이 무응답인 사례를 행정데이터로 대체한 결과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32.2%에서 45.3%로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소득 평균은 연 738만 원에서 782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32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표 4-9>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소득원천 분포

(단위: 만 원/년, %, %p)

구분	평균			0 초과 비율			0 제외 평균		
	조사 (A)	행정 (B)	B-A	조사 (A)	행정 (B)	B-A	조사 (A)	행정 (B)	B-A
근로소득	2118	2267	+149	77.1	82.1	+5.0	2748	2760	+13
사업소득	738	782	+44	32.2	45.3	+13.1	2292	1727	-565
재산소득	125	213	+88	23.8	88.7	+64.9	526	240	-287
금융소득	17	94	+77	12.4	88.3	+75.9	140	107	-33
임대소득	101	111	+11	13.7	14.5	+0.9	737	766	+29
기타재산소득	7	7	-	1.7	1.7	-	407	407	-
사적이전소득	41	41	-	15.8	15.8	-	257	257	-
가구 간 이전소득	39	39	-	15.1	15.1	-	260	260	-
비영리단체이전소득	2	2	-	1.3	1.3	-	118	118	-
사적이전지출	108	108	-	58.5	58.5	-	185	185	-
가구 간 이전지출	64	64	-	41.5	41.5	-	155	155	-
비영리단체이전지출	44	44	-	45.6	45.6	-	96	96	-
공적이전소득	162	181	+19	39.6	49.7	+10.2	410	364	-46
공적연금	96	106	+9	16.4	20.3	+3.9	589	521	-68
기초연금	28	28	+0	15.9	16.5	+0.6	178	173	-5
양육수당	6	9	+3	6.8	10.8	+4.0	94	84	-10
장애수당	4	3	-1	3.1	3.0	-0.1	136	97	-39
기초보장급여	10	12	+3	2.6	3.1	+0.5	368	390	+22
근로·자녀장려금	2	7	+5	2.8	12.0	+9.1	53	55	+2
기타 정부보조금	16	16	-	5.8	5.8	-	274	274	-
공적이전지출	354	397	+44	99.0	99.1	+0.2	357	401	+43
세금	154	199	+45	98.8	98.9	+0.1	156	201	+45
소득세	116	160	+45	75.6	80.2	+4.6	153	200	+47
재산세	20	20	-	72.0	72.0	-	28	28	-
자동차세	17	17	-	75.4	75.4	-	23	23	-
기타 세금	1	1	-	95.9	95.9	-	1	1	-
사회보험료	200	199	-1	89.3	90.2	+0.9	224	220	-3
국민연금기여금	82	78	-5	72.4	75.6	+3.2	114	103	-11
기타 연금기여금	18	21	+4	9.3	8.7	-0.6	189	243	+54
건강보험료	89	89	-	88.0	88.0	-	101	101	-
고용보험료	11	11	-	60.7	60.7	-	18	18	-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 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0 초과 비율'은 해당 항목이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을, '0 제외 평균'은 해당 항목이 0원 초과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다음으로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평균 금융소득이 연 17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소득은 서베이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 대표적인 소득 항목 중 하나로, 금융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조사데이터에서는 12.4%에 불과하였으나 행정보완데이터에서는 88.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가구가 실제로는 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면접조사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²¹⁾ 한편 행정자료 보완 후 임대소득 평균이 연 11만 원 증가하였고, 이처럼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더 많이 포착됨에 따라 재산소득 평균이 연 125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88만 원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달리 공적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우선 여러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적연금을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 후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3.9%포인트 증가하였고, 그 결과 공적연금 평균이 연 9만 원 증가하였다. 한편 급여 수준이 정액에 가까운 기초연금의 경우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서베이 조사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살펴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조사데이터에서는 2.8%에 불과한 반면 행정보완데이터에서는 12.0%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 평균이 연 5만 원 증가하였다. 이는 연 1회 급여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연간소득 면접조사에서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 밖에도 양육수당과 기초보장급여²²⁾ 평균이 각각 연 3만 원

21) 단, 2017년(조사연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소득을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 개념으로 조사하는 반면 행정데이터의 금융소득은 순소득이 아닌 수입 개념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의 정의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해 둔다.

증가하였고 전체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연 162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19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소득세 평균이 크게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사데이터에서 75.6%이던 소득세 존재 비율이 행정보완데이터에서는 80.2%로 증가하였고, 소득세 평균은 연 116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국민연금 기여금과 기타 연금 기여금은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 밖에 기타 재산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소득/지출, 기타 정부보조금, 소득세 외 세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행정자료로 보완되지 않았고,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이 일치한다.

<표 4-10>에서는 행정자료 보완이 이루어진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를 개인ID로 연결한 후 소득원천별 행정자료 보완 패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균등화 가구소득을 가구 단위로 분석하였다. 표에서 '0→0 초과 비율'은 조사값이 0원이고 행정보완값이 0원 초과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해당 항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베이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은 가구의 규모를 보여 준다. 그리고 '증가/감소 비율'은 조사값보다 행정보완값이 큰/작은 가구의 비율을, '유지 비율'은 해당 항목이 행정자료로 보완되지 않아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이 동일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에서 우선 근로소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 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가구도 일부 존재하지만(24.8%) 절반에 가까운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였고(41.1%)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일부

22)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기초보장급여로 조사하는데, 2017년(조사연도) 행정보완데이터에는 행정자료 입수의 한계로 교육급여가 누락되었다.

가구의 근로소득이 새로 포착된 결과(5.4%) 근로소득 평균이 연 3281만 원에서 3499만 원으로 218만 원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고 주로 무응답을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였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지만 행정데이터로 사업소득이 새롭게 포착된 11.3%의 가구를 제외하면 대체로 행정자료 보완 후에 조사데이터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원천 변화

(단위: 만 원/년, %)

구분	평균				0→0 초과 비율	증가 비율	감소 비율	유지 비율
	조사 (A)	행정 (B)	C =B-A	C/A (%)				
근로소득	3281	3499	+218	+6.6	5.4	41.1	24.8	34.1
사업소득	1149	1217	+68	+5.9	11.3	14.1	0.0	85.9
재산소득	212	353	+142	+66.9	62.0	82.0	3.1	14.8
금융소득	29	154	+125	+426.9	72.9	82.0	3.2	14.8
임대소득	170	187	+17	+9.9	0.8	1.1	0.0	98.9
공적이전소득	297	328	+30	+10.2	9.4	35.1	9.9	55.1
공적연금	176	192	+16	+9.2	4.8	16.6	6.7	76.6
기초연금	55	55	-0	-0.0	1.2	11.1	2.8	86.1
양육수당	9	13	+4	+41.7	2.9	4.6	0.0	95.4
장애수당	7	5	-2	-29.2	0.5	1.6	1.3	97.1
기초보장급여	20	24	+5	+22.7	0.9	3.2	1.4	95.4
근로·자녀장려금	2	10	+8	+359.8	9.0	10.2	0.7	89.1
공적이전지출	547	614	+67	+12.3	0.2	42.2	40.6	17.3
소득세	176	246	+70	+39.5	15.6	41.6	37.5	20.9
국민연금기여금	127	120	-8	-6.0	5.6	28.1	36.8	35.1
기타 연금기여금	27	32	+5	+19.1	1.0	4.7	3.2	92.0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비균등화 가구소득의 가구 단위 분포이다.

· 0→0 초과 비율: 조사값이 0원이고 행정보완값이 0원 초과인 비율을 의미한다.

· 증가/감소 비율: 조사값보다 행정보완값이 큰/작은 비율을 의미한다.

· 유지 비율: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이 동일한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금융소득 조사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데이터를 통해 금융소득이 추가된 가구의 비율이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금융소득 평균이 연 29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426.9%나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금융소득의 규모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지만, 금융소득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 보완 작업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주로 무응답을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였는데, 임대소득 조사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보완값이 새로 포착된 가구의 비율이 0.8%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금융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임대소득이 일부 보완된 결과 재산소득 평균이 연 212만 원에서 353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실제로 공적이전소득을 받았지만 서베이에서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9.4%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공적이전급여액을 좀 더 정확하게 보완한 결과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비율이 35.1%, 감소한 비율이 9.9%로 나타났고 공적이전소득 평균은 연 297만 원에서 328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여러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에서 무응답 보완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지만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였고, 이를 보완한 결과 근로·자녀장려금 평균이 연 8만 원 증가하였다. 공적연금 역시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행정자료 보완 후 공적연금이 증가한 비율이 16.6%, 감소한 비율이 6.7%로 나타났고 공적연금 평균은 연 16만 원 증가하였다. 한편 그 밖의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평균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살펴보면 대체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증가 비율이 감소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다른 소득 항목과 달리 행정자료

보완 후 공적이전지출의 증가 비율과 감소 비율이 모두 40%대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세의 경우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증가 비율이 41.6%, 감소 비율이 37.5%였고 서베이에서 소득세를 보고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의 행정데이터를 통해 소득세가 포착된 비율도 15.6%로 높게 나타났다. 보완 결과 소득세 평균은 연 176만 원에서 246만 원으로, 전체 공적이전지출 평균은 연 547만 원에서 614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4-11〉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근로소득 구간별 비율

(단위: %, %p)

구분	가구근로소득			개인근로소득		
	조사 (A)	행정 (B)	B-A	조사 (A)	행정 (B)	B-A
0원	30.0	24.5	-5.4	63.5	55.0	-8.5
~1천만 원/년 미만	5.9	9.9	+4.1	4.9	12.5	+7.6
~2천만 원/년 미만	10.1	12.3	+2.2	8.8	11.2	+2.4
~4천만 원/년 미만	19.9	19.0	-0.8	12.7	11.3	-1.4
~6천만 원/년 미만	14.3	13.2	-1.1	5.3	4.9	-0.4
~8천만 원/년 미만	8.9	8.8	-0.1	2.6	2.8	+0.1
~1억 원/년 미만	5.0	5.2	+0.1	1.1	1.2	+0.1
~2억 원/년 미만	5.6	6.6	+0.9	0.9	1.1	+0.2
2억 원/년 이상	0.3	0.5	+0.2	0.1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근로소득은 비균등화 가구소득의 가구 단위 분포이고, 개인근로소득은 비균등화 개인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규모가 크고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득원천은 근로소득이다. 이에 〈표 4-11〉에서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근로소득 변화를 소득구간별로 살펴보았다. 균등화하지 않은 가구근로소득을 가구 단위로 분석한 결과,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이 0원인 비율이 30.0%에서 24.5%로 5.4%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서베이에서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행정데이터로 근로소득이 새롭게 포착된 가구가 주로 연간 2천만 원 미만 구간으로 유입되면서, 행정자료 보완 후 0원 초과 1천만 원 미만 구간과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각각 4.1%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2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미만 중간소득 구간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8천만 원 이상 고소득 구간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중간소득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서베이의 편향을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해 일정하게 보완하였음을 보여 준다. 한편 균등화하지 않은 개인근로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0원인 비율이 8.5%포인트 감소한 대신 0원 초과 1천만 원 미만 구간과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각각 7.6%포인트, 2.4%포인트 증가하였고 중간소득 구간인 2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미만 비율은 감소, 6천만 원 이상 고소득 구간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제3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하위 집단별 분석

지금까지 주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원천의 평균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면 소득원천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구 및 개인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별 소득원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하위 집단별로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원천과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표 4-12〉에는 가구 및 개인 특성의 개인 단위 분포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가구주 남성 비율 분석 결과는 전체 개인 4만 9518명 중 가구주 남성인 가구에 속한 개인이 85.2%임을 의미한다.

〈표 4-12〉 가구 및 개인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가구 규모	1인	6.7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17.2
	2인	17.8		40대	30.1
	3인	22.3		50대	28.4
	4인 이상	53.1		60대 이상	24.3
가구주 성	남성	85.2	개인 연령	0~17세	19.4
	여성	14.8		18~64세	66.4
				65세 이상	14.2
가구주 교육 수준	초졸 이하	9.9	가구주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49.4
	중졸	8.1		임시·일용근로자	10.4
	고졸	37.1		자영업자 ²⁾	25.6
	대졸 이상 ¹⁾	44.9		비취업	14.6
계		100.0	계		100.0

주: 개인 단위 분포이다.

1) 대졸 이상은 3년제 이하 졸업과 4년제 이상 졸업을 포함한다.

2)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기타 종사자(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를 포함한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표 4-13〉~〈표 4-18〉에서는 가구 및 개인 특성별로 행정자료 보완 전 후 소득원천 평균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이 하위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표 4-13〉에서 가구 규모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행정자료 보완 결과가 집단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이 발견된다. 행정자료 보완 후 2인 이상 가구의 근로소득 평균이 연 100만 원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근로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4인 이상 가구는 198만 원이나 증가한 반면 1인 가구는 1112만 원에서 1070만 원으로 오히려 42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근로소득 행정자료 보완은 가구 규모별 소득 격차를 확대하

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1인 가구의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평균 증가량도 각각 연 16만 원, 51만 원으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 2인 이상 가구의 시장소득 평균이 연 243만~333만 원, 8.2~11.8% 증가한 것과 달리 1인 가구는 25만 원, 1.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 규모별로 공적이전소득 평균 증가량의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과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기초보장급여를 많이 받지만, 행정자료 보완 후 1인 가구의 기초보장급여 평균 증가량은 연 5만 원에 그쳤다. 한편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3인 이상 가구는 1~2인 가구에 비해 공적연금 평균 증가량이 작은 대신 양육수당 평균 증가량이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 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세 평균이 연 39만~52만 원 증가한 반면 조세 부담이 작은 1인 가구의 소득세는 8만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종합한 결과 가처분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 증가량은 연 42만 원으로 가장 작았고 가처분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이 연 232만~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가처분소득의 가구 규모별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다음으로 <표 4-14>에는 가구주 성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남성 가구주 집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평균 증가량이 각각 연 157만 원, 48만 원, 93만 원으로 여성 가구주 집단의 105만 원, 20만 원, 60만 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단, 여성 가구주 집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평균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행정자료 보완 전의 조사값 평균 대비 증가율은 두 집단이 대체로

유사하였다. 한편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한 여성 가구주 집단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 가구주 집단은 공적연금, 기초보장급여, 근로·자녀장려금 평균이 각각 연 15만 원, 9만 원, 7만 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연 31만 원 증가하였다. 공적이전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큰 남성 가구주 집단의 소득세 평균 증가량이 연 50만 원으로 여성 가구주 집단의 14만 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종합하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가구주가 남성인 집단과 여성인 집단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의 절대적인 차이는 증가하였지만 상대적 차이는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 가구주 집단에 비해 여성 가구주 집단의 소득 수준이 낮지만,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5〉에는 가구주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구주 연령과 소득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평균이 증가하여 50대에 정점에 이른 후 60대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패턴이 관찰된다. 그런데 표의 분석 결과는 행정자료 보완이 이러한 연령-소득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준다. 우선 근로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근로소득 평균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관계가 발견된다. 특히 다른 집단과 달리 30대 이하 집단은 행정자료 보완 후 근로소득 평균이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1인 가구의 근로소득 평균이 감소하였다는 사실(〈표 4-13〉 참조)을 함께 고려하면 고용과 가구 구성이 불안정한 생애 초반의 근로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반면 60대 이상 집단은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평균이 연 1016만

원에서 1182만 원으로 16.3%나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의 변화는 대체로 집단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재산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산소득 평균이 더욱 증가하는 관계가 확인된다.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재산소득 평균 증가량이 30대 이하는 연 34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98만 원, 144만 원으로 훨씬 컸다. 이는 <표 4-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중고령자의 소득을 서베이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종합하면 시장소득 평균 증가량이 30대 이하는 연 39만 원에 그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408만 원, 344만 원으로 훨씬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은 60대 이상의 공적연금 평균이 연 341만 원에서 366만 원으로 25만 원 증가하였고 아동가구가 많이 분포하는 30대 이하의 양육수당 평균이 연 26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0만 원 증가하였다. 전체 공적이전소득 변화를 종합하면 공적이전소득을 가장 많이 받는 60대 이상의 공적이전소득 평균 증가량이 연 32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살펴보면 조세 부담이 가장 큰 50대의 소득세 평균이 연 149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30대 이하의 소득세 평균 증가량이 14만 원으로 가장 작았다.

이상의 가구주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가구주가 중고령자인 집단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집단은 행정자료 보완 후 근로소득 평균의 증가율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평균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고령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행정자료

보완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집단은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표 4-15〉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위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표 4-16〉에서는 일반적인 인구집단별 소득분배지표 분석 방법을 따라 개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하위 집단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각각 연 120만 원, 127만 원, 32만 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평균이 각각 연 27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17세 아동인구와 18~64세 근로연령인구의 가처분소득 평균 증가량은 각각 연 188만 원, 274만 원으로 노인인구의 가처분소득 평균 증가량과의 절대적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인인구의 가처분소득 평균 증가율이 16.1%로 다른 집단보다 상당히 높았다. 즉,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노인과 비노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감소하는 것이다.

〈표 4-17〉에는 가구주 교육 수준별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선 근로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근로소득 평균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초졸 이하와 대졸 이상 집단의 근로소득 평균 증가량은 각각 연 146만 원, 150만 원으로 유사하지만, 초졸 이하 집단의 근로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로소득 평균 증가율은 각각 18.2%, 5.2%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자료 보완 후 사업소득 평균은 대졸 이상 집단의 증가량이 연 52만 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재산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초졸 이하와 대졸 이상 집단의 재산소득 평균 증가량은 각각 연 94만 원, 115만 원으로 중졸, 고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초졸 이하 집단의 금융소득이 연 9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은 해당 집단

에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중고령자가(〈표 4-15〉 참조)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대졸 이상 집단은 임대소득 평균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졸 이상 고학력·고소득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의 시장소득 평균 증가량이 연 316만 원으로 가장 컸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초졸 이하 집단의 시장소득 평균 증가율이 19.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하는 초졸 이하, 중졸 집단의 공적연금과 기초보장급여 평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대졸 이상 집단은 양육수당 평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모든 공적이전소득을 보완한 결과 초졸 이하 집단의 공적이전소득 평균 증가량이 연 29만 원으로 가장 크고 대졸 이상 집단은 연 14만 원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한편 공적이전지출의 경우 조세 부담이 큰 대졸 이상 집단의 소득세 평균이 연 190만 원에서 272만 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종합하면 가처분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초졸 이하 집단의 가처분소득 평균 증가율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처분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대졸 이상 집단의 가처분소득 평균 증가율이 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교육 수준별 집단 간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표 4-18〉에서는 가구주 종사상지위에 따른 하위 집단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집단별로 근로소득 평균은 연 118만~203만 원, 사업소득 평균은 33만~5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론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상용·임시·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자영업자는 사업소

득이 주로 보완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집단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평균이 고르게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종사상지위와 소득의 측정 기준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에게도 사업소득이,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소득이, 비취업자에게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표의 종사상지위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구 내에 가구주 외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표 4-19>에서는 개인의 종사상지위별로 균등화하지 않은 개인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소득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집중되고 자영업자와 기타 종사자에게 사업소득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임금근로자가 아닌 집단의 개인근로소득 조사값 평균은 연 13만~61만 원에 불과하고 자영업자/기타 종사자가 아닌 집단의 개인사업소득 조사값 평균은 연 8만~16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한 근로소득 증가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집단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고 사업소득 증가는 자영업자/기타 종사자가 아닌 집단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기존 근로소득자의 과소/과대 보고가 수정될 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추가적으로 포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앞서 <표 4-11>에서도 행정자료 보완 후 개인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비율이 8.5%포인트 증가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사업소득은 주로 서베이 무응답을 보완했을 뿐 조사값을 행정데이터로 대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기타 종사자의 사업소득 평균이 거의 변화하지 않은 대신 나머지 집단의 사업소득 평균이 연 21만~7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표 4-18>에서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재산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자산수준이 낮은 임시·일용근로자의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재산소득 평균 증가량이 연 34만 원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반면 중고령자가 많이 분포한 비취업 집단의 경우 금융소득 평균이 연 30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자영업자의 경우 임대소득 평균이 연 132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하였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행정자료 보완 결과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비취업자의 시장소득 평균이 연 1131만 원에서 1477만 원으로 증가하여 증가량(346만 원/년)과 증가율(30.6%) 모두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고 기초보장급여를 많이 받는 비취업 집단의 기초보장급여 평균이 연 52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저임금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평균이 연 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전체 공적이전소득 평균 증가량은 임시·일용근로자가 연 33만 원으로 가장 컸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평균이 각각 연 54만 원, 56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행정자료 보완을 종합하면 비취업자의 가처분소득 평균 증가량과 증가율이 각각 연 342만 원과 22.5%로 가장 컸고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증가량은 연 218만~262만 원으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13) 조사데이터/행정보안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가구 규모별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조사 (A)	행정 (B)	C =B-A	C/A (%)	조사 (A)	행정 (B)	C =B-A	C/A (%)	조사 (A)	행정 (B)	C =B-A	C/A (%)	조사 (A)	행정 (B)	C =B-A	C/A (%)
근로소득	1112	1070	-42	-3.8	1235	1343	+108	+8.7	2343	2465	+122	+5.2	2446	2644	+198	+8.1
사업소득	336	352	+16	+4.7	603	633	+30	+4.9	783	832	+49	+6.3	814	865	+50	+6.2
재산소득	89	142	+52	+58.4	212	319	+107	+50.6	129	218	+89	+68.8	99	184	+85	+86.1
금융소득	13	64	+51	+380.3	27	120	+93	+340.5	17	101	+83	+477.9	15	87	+72	+495.1
임대소득	68	70	+1	+2.0	170	184	+14	+8.5	105	110	+6	+5.3	80	93	+13	+16.2
공적이전소득	249	267	+17	+6.9	382	403	+22	+5.7	172	192	+20	+11.9	74	91	+17	+23.2
공적연금	92	105	+13	+13.6	256	273	+17	+6.5	118	126	+8	+7.2	34	41	+7	+20.4
기초연금	83	81	-2	-2.3	67	65	-1	-2.0	18	18	+0	+2.3	13	14	+1	+7.9
양육수당	0	0	0	-	0	0	+0	+45.1	9	12	+3	+37.6	8	12	+4	+43.8
장애수당	6	5	-1	-17.1	7	5	-2	-29.6	4	3	-1	-22.1	3	2	-1	-39.7
기초보장급여	46	50	+5	+10.6	16	20	+3	+20.7	9	13	+4	+39.9	3	5	+2	+48.8
근로·자녀장려금	0	3	+3	+1928.1	1	6	+5	+698.7	1	7	+5	+360.4	2	7	+5	+266.1
공적이전지출	163	165	+2	+1.2	224	261	+38	+16.8	377	417	+40	+10.5	411	464	+53	+12.8
소득세	44	52	+8	+18.6	58	97	+39	+66.5	119	161	+43	+35.8	142	195	+52	+36.8
국민연금기여금	41	33	-7	-18.0	48	46	-2	-3.7	93	87	-6	-5.9	95	90	-5	-5.2
기타연금기여금	6	8	+1	+15.5	7	7	+1	+8.5	17	19	+3	+16.4	23	28	+5	+22.0
시정소득	1583	1608	+25	+1.6	2054	2297	+243	+11.8	3172	3433	+261	+8.2	3263	3596	+333	+10.2
가치분소득	1670	1712	+42	+2.5	2212	2444	+232	+10.5	2967	3211	+244	+8.2	2925	3224	+300	+10.2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안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단위: 만 원/년)

(표 4-14)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가구주 성별

구분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C/A (%)
	조사 (A)	행정 (B)	C =B-A	조사 (A)	행정 (B)	C =B-A	
근로소득	2256	2413	+157	1322	1427	+105	+7.9
사업소득	788	837	+48	447	467	+20	+4.4
재산소득	131	224	+93	90	150	+60	+66.1
금융소득	18	99	+80	12	69	+58	+485.9
임대소득	106	118	+12	71	73	+2	+2.7
공적이전소득	155	172	+16	202	234	+31	+15.5
공적연금	99	108	+8	80	95	+15	+19.4
기초연금	24	24	+0	54	53	-0	-0.7
양육수당	7	10	+3	2	3	+1	+90.9
장애수당	3	2	-1	9	7	-2	-17.9
기초보장급여	5	6	+1	37	46	+9	+24.3
근로·자녀장려금	1	6	+5	3	10	+7	+278.9
공적이전지출	382	430	+49	193	208	+16	+8.1
소득세	127	177	+50	49	63	+14	+27.5
국민연금기여금	88	83	-5	50	49	-1	-1.9
기타연금기여금	19	23	+4	8	11	+3	+37.9
시정소득	3092	3389	+297	1897	2081	+184	+9.7
가처분소득	2866	3134	+268	1906	2106	+200	+10.5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단위: 만 원/년)

(표 4-15) 조사데이터/행정보안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가주주 연령대별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조사 (A)	행정 (B)	C/A (%) =B-A	조사 (A)	행정 (B)	C/A (%) =B-A	조사 (A)	행정 (B)	C/A (%) =B-A	조사 (A)	행정 (B)	C/A (%) =B-A				
근로소득	2527	2499	-27	-1.1	2407	2534	+127	+5.3	2505	2770	+264	+10.6	1016	1182	+166	+16.3
사업소득	460	493	+33	+7.1	817	872	+55	+6.8	1001	1048	+46	+4.6	526	562	+36	+6.9
재산소득	33	67	+34	+103.3	66	129	+63	+95.9	140	238	+98	+69.6	246	390	+144	+58.6
금융소득	7	38	+31	+435.4	12	65	+53	+430.4	20	106	+86	+429.2	28	156	+128	+460.6
임대소득	25	28	+3	+12.6	52	63	+10	+19.6	115	127	+12	+10.1	198	214	+16	+8.0
공적이전소득	53	74	+21	+40.6	48	63	+16	+32.6	71	81	+9	+12.9	488	519	+32	+6.5
공적연금	9	14	+5	+52.0	11	17	+6	+52.2	31	33	+3	+9.1	341	366	+25	+7.3
기초연금	4	5	+0	+4.9	11	12	+1	+8.7	11	12	+1	+6.8	86	85	-1	-1.3
양육수당	26	36	+10	+38.4	5	7	+2	+41.2	0	1	+1	+139.3	1	1	+0	+73.1
장애수당	1	1	-0	-31.8	2	2	-0	-19.3	5	4	-2	-31.3	8	5	-3	-34.4
기초보장급여	4	5	+1	+19.5	7	9	+2	+22.7	10	12	+2	+24.0	16	22	+5	+31.1
근로·자녀장려금	2	9	+6	+242.7	2	8	+5	+223.3	1	5	+4	+408.6	0	5	+5	+1698.8
공적이전지출	358	366	+8	+2.2	408	451	+43	+10.5	434	499	+65	+14.9	188	234	+45	+23.9
소득세	110	124	+14	+13.1	146	193	+47	+32.4	149	211	+61	+41.1	42	86	+44	+103.6
국민연금기여금	97	87	-10	-10.5	94	85	-9	-10.0	101	101	-1	-0.9	35	36	+1	+2.0
기타연금기여금	19	22	+4	+19.5	22	27	+5	+22.6	24	28	+4	+17.8	4	5	+1	+16.4
시정소득	2945	2985	+39	+1.3	3187	3433	+246	+7.7	3546	3955	+408	+11.5	1815	2159	+344	+19.0
가치분소득	2640	2695	+54	+2.1	2827	3049	+222	+7.8	3184	3540	+356	+11.2	2115	2447	+332	+15.7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안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단위: 만 원/년)

(표 4-16) 조사데이터/행정보안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개인 연령대별

구분	0~17세				18~64세				65세 이상			
	조사 (A)	행정 (B)	C =B-A	C/A (%)	조사 (A)	행정 (B)	C =B-A	C/A (%)	조사 (A)	행정 (B)	C =B-A	C/A (%)
근로소득	2332	2429	+97	+4.2	2361	2532	+170	+7.2	688	808	+120	+17.5
사업소득	741	789	+48	+6.4	816	861	+46	+5.6	369	400	+32	+8.6
재산소득	58	120	+62	+106.9	124	211	+87	+70.0	222	348	+127	+57.1
금융소득	11	58	+48	+443.8	19	97	+79	+423.8	21	128	+107	+517.3
임대소득	46	60	+14	+31.6	98	106	+8	+8.1	187	206	+19	+10.3
공적이전소득	53	72	+19	+34.9	119	135	+16	+13.2	510	543	+32	+6.3
공적연금	12	16	+4	+29.3	77	84	+7	+9.7	302	329	+26	+8.7
기초연금	6	7	+0	+7.1	11	11	+1	+4.8	139	138	-1	-0.8
양육수당	15	21	+6	+40.9	5	7	+2	+42.1	1	1	+0	+67.9
장애수당	2	1	-1	-44.8	4	3	-1	-26.8	8	5	-3	-38.1
기초보장급여	7	10	+2	+32.4	8	10	+2	+23.9	19	24	+5	+28.1
근로·재난장려금	3	10	+7	+215.8	1	6	+5	+358.1	0	5	+4	+1944.2
공적이전지출	389	428	+39	+10.2	388	436	+47	+12.2	144	176	+32	+22.0
소득세	137	180	+43	+31.3	127	175	+48	+38.1	33	64	+31	+93.3
국민연금기여금	90	81	-9	-9.5	93	89	-4	-4.8	21	21	-0	-0.1
기타연금기여금	21	27	+5	+24.0	20	23	+4	+18.4	4	5	+1	+19.5
시정소득	3041	3248	+207	+6.8	3211	3514	+303	+9.4	1357	1633	+277	+20.4
가처분소득	2706	2894	+188	+7.0	2943	3217	+274	+9.3	1723	2000	+277	+16.1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안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단위: 만 원/년)

(표 4-17) 조사데이터/행정보안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가주주 교육 수준별

구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조사 (A)	행정 (B)	C/A =B-A (%)	조사 (A)	행정 (B)	C/A =B-A (%)	조사 (A)	행정 (B)	C/A =B-A (%)	조사 (A)	행정 (B)	C/A =B-A (%)
근로소득	804	950	+146 +18.2	1256	1447	+191 +15.2	1719	1859	+140 +8.1	2894	3044	+150 +5.2
사업소득	387	404	+17 +4.4	675	700	+24 +3.6	826	872	+46 +5.6	753	806	+52 +6.9
재산소득	85	178	+94 +110.5	109	178	+69 +63.3	101	158	+58 +57.2	157	272	+115 +72.9
금융소득	9	97	+88 +949.6	9	72	+63 +702.9	10	62	+52 +500.7	27	124	+98 +368.1
임대소득	72	78	+6 +8.1	95	101	+6 +6.2	83	89	+6 +7.0	122	139	+17 +13.8
공적이전소득	307	337	+29 +9.6	235	256	+21 +9.1	139	159	+21 +14.9	136	150	+14 +10.4
공적연금	106	123	+18 +16.6	116	133	+17 +14.7	82	92	+10 +12.6	103	108	+6 +5.4
기초연금	117	113	-3 -3.0	56	55	-0 -0.3	21	21	+1 +2.6	10	11	+1 +9.4
양육수당	1	2	+1 +112.2	1	1	+0 +73.1	5	6	+2 +40.1	10	14	+4 +40.9
장애수당	12	9	-3 -27.7	14	6	-8 -55.9	3	3	-1 -23.3	1	1	-0 -7.4
기초보장급여	32	44	+12 +36.3	22	26	+5 +21.9	10	12	+2 +17.4	2	3	+1 +37.6
근로·자녀장려금	1	6	+6 +180.2	1	8	+7 +555.9	2	10	+7 +285.6	1	4	+3 +285.8
공적이전지출	110	129	+19 +17.5	174	192	+18 +10.4	275	287	+12 +4.3	505	585	+80 +15.8
소득세	24	40	+16 +67.4	29	41	+12 +42.9	69	83	+14 +20.9	190	272	+82 +43.2
국민연금기여금	27	30	+2 +8.8	51	55	+4 +7.1	78	75	-3 -3.9	104	95	-9 -8.7
기타연금기여금	1	2	+1 +65.6	2	4	+2 +86.4	8	8	+0 +5.6	32	39	+7 +21.2
시정소득	1337	1593	+256 +19.2	2048	2332	+284 +13.9	2595	2838	+243 +9.4	3685	4001	+316 +8.6
가처분소득	1534	1801	+267 +17.4	2109	2396	+288 +13.6	2458	2712	+254 +10.3	3317	3571	+254 +7.7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안데이터를 의미한다. 가주원 수 계급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주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단위: 만 원/년)

(표 4-18) 조사데이터/행정보원데이터 소득원천 평균, 가구주 총자산지위별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비취업		
	조사 (A)	행정 (B)	C/A =B-A (%)	조사 (A)	행정 (B)	C/A =B-A (%)	조사 (A)	행정 (B)	C/A =B-A (%)	조사 (A)	행정 (B)	C/A =B-A (%)
근로소득	3394	3529	+136 +4.0	1714	1832	+118 +6.9	634	790	+157 +24.7	687	890	+203 +29.6
사업소득	152	202	+50 +32.5	91	128	+38 +41.8	2484	2527	+43 +1.7	121	154	+33 +27.3
재산소득	99	189	+90 +90.4	44	79	+34 +77.2	149	241	+91 +61.2	228	341	+113 +49.3
금융소득	18	99	+81 +442.8	6	40	+33 +542.2	13	84	+72 +559.3	30	133	+103 +339.4
임대소득	77	85	+9 +11.1	33	34	+1 +2.5	132	152	+20 +15.0	176	186	+10 +5.6
공적이전소득	72	90	+18 +24.6	152	185	+33 +22.0	132	146	+14 +10.3	526	546	+20 +3.8
공직연금	42	51	+9 +21.4	80	95	+15 +18.3	73	81	+8 +10.5	332	342	+10 +3.0
기초연금	10	11	+1 +9.8	35	34	-1 -2.4	26	27	+1 +2.0	89	87	-2 -2.0
양육수당	10	14	+4 +38.7	2	4	+2 +79.5	4	6	+2 +45.2	1	2	+1 +64.1
장애수당	2	1	-0 -24.8	4	4	0 -6.4	4	2	-2 -52.8	13	10	-3 -26.6
기초보장급여	1	1	+1 +62.0	12	18	+5 +41.8	1	2	+1 +62.9	52	62	+10 +20.1
근로·자녀장려금	1	5	+4 +274.3	3	16	+13 +435.6	2	6	+5 +316.5	1	5	+4 +457.1
공적이전지출	468	520	+53 +11.3	134	140	+7 +4.9	347	399	+52 +15.1	138	161	+24 +17.3
소득세	166	220	+54 +32.6	21	27	+6 +30.2	108	165	+56 +52.1	26	46	+21 +79.5
국민연금기여금	106	98	-8 -7.3	42	42	0 -0.7	83	79	-5 -5.7	28	31	+3 +10.8
기타연금기여금	32	38	+6 +20.2	2	2	+1 +40.9	5	5	+1 +18.5	4	4	+0 +5.4
시장소득	3532	3807	+275 +7.8	1837	2027	+190 +10.4	3179	3469	+291 +9.1	1131	1477	+346 +30.6
가치분소득	3137	3377	+240 +7.6	1855	2073	+218 +11.7	2964	3226	+262 +8.8	1520	1862	+342 +22.5

주: '소득'은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원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원 수 계급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단위: 만 원/년)

〈표 4-19〉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개인 종사상지위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구분	개인근로소득				개인사업소득			
	조사 (A)	행정 (B)	C =B-A	C/A (%)	조사 (A)	행정 (B)	C =B-A	C/A (%)
상용근로자	3863	3911	+48	+1.2	16	51	+35	+220.6
임시·일용근로자	1410	1427	+18	+1.2	11	34	+24	+221.7
고용원있는자영업자	61	254	+193	+317.6	6468	6478	+10	+0.2
고용원없는자영업자	52	127	+75	+143.4	2840	2842	+1	+0.0
무급가족종사자	13	99	+85	+640.2	8	82	+75	+966.3
기타종사자 ¹⁾	38	177	+139	+361.6	2970	2972	+2	+0.1
비취업	59	155	+96	+162.8	8	29	+21	+263.2
전체	1162	1239	+77	+6.6	407	431	+24	+5.9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비균등화 개인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1)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제4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소득분배지표 변화

이 절에서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분배지표의 변화를 살펴본다. 앞서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규모와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소득원천별 행정자료 보완의 효과와 하위 집단별 소득분배지표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4-20〉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를 개인ID로 연결한 후 개별 소득원천을 행정보완값으로 대체한 가처분소득의 분배지표를 보고하였다. 가처분소득은 아래와 같이 여러 항목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개별 항목에 대해 조사값 또는 행정보완값을 선택하여 조합하면 일부 항목만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상적인 가처분소득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모든 항목은 조사값을 사용하고 근로소득만 행

정보완값을 사용하여 구성한 가처분소득의 분포와 실제 가처분소득 조사값의 분포를 비교하면 근로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이 가처분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소득원천 보완을 누적하지 않고 단계마다 개별 소득원천만을 보완하였음에 주의해야 한다.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음수는 0으로 변환)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음수는 0으로 변환)

<표 4-20>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후 가처분소득 평균이 연 2723만 원에서 2873만 원으로 149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서베이에서 과소포착된 근로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가처분소득 중위값 역시 연 2336만 원에서 2439만 원으로 103만 원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로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은 가처분소득의 규모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함께 증가시킨다. 근로소득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 10분위 경계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P10과 P20이 각각 연 62만 원, 44만 원 감소하고 분위가 높아질수록 분위 경계값 증가량이 단조증가하여 P90은 421만 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P90/P10은 5.37에서 6.29로, P50/P10은 2.65에서 2.97로 증가하였고,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점유율이 40.9%에서 42.1%로 1.2%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배율, 지니계수, 빈곤율 역시 각각 6.55에서 7.67로, 0.346에서 0.367로, 16.1%에서 18.9%로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표 4-20〉 소득원천별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 분포 변화

구분	조사 가처분 소득	개별 소득원천 행정자료 보완 후 가처분소득					
		근로 소득 보완	사업 소득 보완	재산 소득 보완	공적 이전 소득 보완	공적 이전 지출 보완	전체 보완
평균(만 원/년)	2723	2873 +149	2767 +44	2811 +87	2742 +19	2686 -38	2981 +258
10분위 경계값 (만 원/ 년)	P10	882 820 -62	897 +15	923 +40	915 +33	853 -29	922 +40
	P20	1316 1272 -44	1338 +21	1359 +42	1342 +25	1294 -22	1369 +53
	P30	1684 1678 -6	1708 +24	1726 +43	1700 +16	1664 -20	1783 +100
	P40	2007 2054 +47	2035 +28	2051 +44	2023 +16	1987 -20	2155 +148
	P50	2336 2439 +103	2366 +30	2395 +59	2347 +11	2322 -15	2550 +214
	P60	2689 2855 +166	2731 +42	2748 +59	2703 +14	2671 -18	2971 +282
	P70	3173 3364 +191	3207 +35	3237 +65	3178 +6	3152 -21	3485 +312
	P80	3766 4067 +300	3812 +45	3847 +81	3776 +9	3743 -24	4175 +409
	P90	4742 5163 +421	4819 +77	4888 +146	4768 +27	4734 -8	5281 +540
P90/P10	5.37	6.29 +0.92	5.37 -0.00	5.30 -0.08	5.21 -0.16	5.55 +0.17	5.73 +0.35
P90/P50	2.03	2.12 +0.09	2.04 +0.01	2.04 +0.01	2.03 +0.00	2.04 +0.01	2.07 +0.04
P50/P10	2.65	2.97 +0.33	2.64 -0.01	2.60 -0.05	2.56 -0.08	2.72 +0.07	2.77 +0.12

구분	조사 가처분 소득	개별 소득원천 행정자료 보완 후 가처분소득						전체 보완
		근로 소득 보완	사업 소득 보완	재산 소득 보완	공적 이전 소득 보완	공적 이전 지출 보완		
5분위 소득 접유율 (%, %p)	1분위	6.2	5.5 -0.8	6.2 -0.0	6.3 +0.1	6.4 +0.2	6.1 -0.1	5.9 -0.3
	2분위	12.3	11.7 -0.6	12.3 -0.0	12.2 -0.1	12.4 +0.1	12.3 +0.0	11.9 -0.4
	3분위	17.2	17.0 -0.2	17.1 -0.0	17.0 -0.2	17.2 -0.0	17.3 +0.1	17.1 -0.0
	4분위	23.4	23.7 +0.3	23.3 -0.1	23.2 -0.2	23.3 -0.1	23.6 +0.2	23.5 +0.1
	5분위	40.9	42.1 +1.2	41.0 +0.1	41.3 +0.4	40.7 -0.2	40.6 -0.3	41.5 +0.6
5분위배율	6.55	7.67 +1.12	6.58 +0.03	6.51 -0.04	6.35 -0.20	6.63 +0.08	6.98 +0.43	
지니계수	0.346	0.367 +0.021	0.347 +0.001	0.348 +0.002	0.342 -0.003	0.344 -0.001	0.355 +0.009	
빈곤율 (%, %p)	16.1	18.9 +2.8	16.0 -0.1	15.8 -0.3	15.4 -0.7	16.5 +0.4	17.6 +1.5	
빈곤갭비율 (%, %p)	35.3	37.5 +2.3	35.3 +0.1	34.2 -1.1	34.7 -0.5	36.4 +1.2	35.2 -0.1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빈곤지표는 단계마다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하단의 수치는 조사 가처분소득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전체 보완'은 모든 소득원천을 행정자료로 보완하였음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다음으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하면 가처분소득 평균이 각각 연 44만 원, 87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베이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 금융소득을 국세청의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고,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서베이 무응답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작업의 영향도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은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에

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 10분위 경계값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P10~P70보다 P80~P90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그 결과 P90/P10, P90/P50, P50/P10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그 밖에 5분위 소득점유율, 5분위배율, 지니계수, 빈곤율 등에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공적이전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은 가처분소득 평균을 연 19만 원 밖에 증가시키지 않지만,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크게 나타나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가처분소득 P10~P20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P90/P10, P50/P10이 각각 0.16, 0.08만큼 감소하였다. 반면 P90/P50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적이전소득 행정자료 보완이 주로 중위-하위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5분위 소득점유율을 살펴보면 1~2분위의 소득점유율이 0.1~0.2%포인트 증가하고 4~5분위의 소득점유율이 0.1~0.2%포인트 감소하였다. 그 밖에 5분위배율, 지니계수, 빈곤율 역시 각각 0.20, 0.003, 0.7%포인트 감소하였다. 단, 이처럼 공적이전소득 행정자료 보완으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는 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지출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살펴보면 주로 소득세를 더 많이 포착한 결과 가처분소득 평균이 연 38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이전지출의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효과가 소득계층별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표 4-21> 소득원천별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

구분		조사 가처분 소득 빈곤율 (%)	개별 소득원천 행정자료 보완 후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p)					전체 보완
			근로소득 보완	사업소득 보완	재산소득 보완	공적이전 소득 보완	공적이전 지출 보완	
가구 규모	1인	50.1	+5.3	+0.3	-0.6	-0.6	+0.2	+3.9
	2인	32.2	+0.6	-0.2	-1.4	-0.6	+0.4	-1.1
	3인	11.9	+2.3	-0.1	-0.2	-0.9	+0.2	+0.7
	4인 이상	8.2	+3.3	-0.2	+0.1	-0.7	+0.5	+2.3
가구주 성	남성	12.1	+3.1	-0.2	-0.3	-0.5	+0.4	+1.9
	여성	39.1	+0.8	+0.2	-0.5	-2.0	+0.2	-1.1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8.7	+7.9	+0.0	+0.7	-0.9	-0.1	+6.6
	40대	10.2	+4.2	-0.1	+0.2	-0.7	+0.2	+3.2
	50대	10.8	+1.0	-0.2	-0.1	-0.5	+0.7	+0.1
	60대 이상	35.1	-0.5	-0.2	-1.7	-0.9	+0.6	-2.6
개인 연령	0~17세	10.8	+5.6	-0.1	+0.4	-0.9	+0.2	+4.4
	18~64세	11.2	+2.6	-0.2	-0.1	-0.6	+0.5	+1.6
	65세 이상	46.6	-0.4	-0.1	-1.9	-0.8	+0.2	-2.9
가구주 교육 수준	초졸 이하	51.4	-0.3	+0.1	-1.6	-1.4	+0.3	-3.3
	중졸	28.8	-0.6	-0.1	-0.6	-1.2	+0.1	-2.2
	고졸	15.4	+3.1	-0.2	-0.0	-0.8	+0.4	+1.9
	대졸 이상	6.7	+3.7	-0.1	-0.1	-0.4	+0.5	+2.8
가구주 종사상 지위	상용	4.9	+5.0	-0.0	+0.2	-0.5	+0.1	+3.7
	임시·일용	26.3	+4.0	-0.4	-0.3	-1.9	+0.7	+1.9
	자영업	12.4	+0.7	+0.0	-0.6	-0.6	+1.0	+0.7
	비취업	53.4	-2.2	-0.5	-1.3	-0.7	+0.3	-5.0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빈곤율은 단계마다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소득원천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후의 가처분소득 빈곤율과 조사 가처분소득 빈곤율과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전체 보완'은 모든 소득원천을 행정자료로 보완하였음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그렇다면 소득원천의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가구 및 개인 특성에 따른 하위 집단별 소득 분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에 <표 4-21>에서는 <표 4-20>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계별 가처분소득을 구성한 후 하위 집단별로

빈곤율을 구하여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집단의 가처분소득 조사 값 기준 빈곤율은 50.1%인데, 근로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55.4%로 5.3%포인트 증가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인 빈곤선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집단의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오히려 근로소득이 감소한 1인 가구, 가구주 30대 이하, 개인 0~17세, 가구주 상용근로자 집단의 빈곤율이 5%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주 60대 이상, 개인 65세 이상, 가구주 중졸 이하, 가구주 비취업 집단은 근로소득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빈곤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소득 보완의 영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소득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빈곤율 변화가 작고 하위 집단 간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사업소득 증가가 대체로 하위 집단별로 고르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업소득에 비해 재산소득은 행정자료로 보완한 후 빈곤율의 증감이 하위 집단별로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2인 가구, 가구주 60대 이상, 개인 65세 이상, 가구주 초졸 이하, 가구주 비취업 집단은 대체로 행정자료 보완 후 재산소득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집단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달리 공적이전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은 모든 하위 집단의 빈곤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 여성, 가구주 중졸 이하, 가구주 임시·일용근로자 집단 등 공적이전소득을 많이 받고 행정자료 보완 후 공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집단의 빈곤율 감소가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의 행정자료 보완은 대부분 집단의 빈곤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

다. 모든 소득원천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종합하면 가구주 비취업 집단의 빈곤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5.0%포인트), 가구주 30대 이하 집단의 빈곤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6.6%포인트).

<표 4-22> 소득원천별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변화

구분		조사 가처분 소득 분배 지표	개별 소득원천 행정자료 보완 후 가처분소득 분배지표 변화					전체 보완
			근로 소득 보완	사업 소득 보완	재산 소득 보완	공적 이전 소득 보완	공적 이전 지출 보완	
개인 0~17세	평균(만 원/년)	2706	+98	+48	+62	+19	-33	+188
	중위값(만 원/년)	2311	+105	+39	+30	+9	+7	+213
	지니계수	0.310	+0.032	+0.002	+0.005	-0.004	-0.003	+0.019
	빈곤율(% , %p)	10.8	+5.6	-0.1	+0.4	-0.9	+0.2	+4.4
개인 18~64세	평균(만 원/년)	2943	+171	+46	+86	+16	-41	+274
	중위값(만 원/년)	2526	+133	+31	+55	+11	-10	+240
	지니계수	0.327	+0.021	+0.001	+0.004	-0.003	-0.001	+0.011
	빈곤율(% , %p)	11.2	+2.6	-0.2	-0.1	-0.6	+0.5	+1.6
개인 65세 이상	평균(만 원/년)	1723	+120	+32	+125	+33	-30	+277
	중위값(만 원/년)	1263	+79	+13	+89	+42	-21	+209
	지니계수	0.425	+0.007	+0.004	-0.001	-0.004	-0.002	-0.003
	빈곤율(% , %p)	46.6	-0.4	-0.1	-1.9	-0.8	+0.2	-2.9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빈곤율은 단계마다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소득원천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후의 가처분소득 분배지표와 조사 가처분소득 분배지표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전체 보완'은 모든 소득원천을 행정자료로 보완하였음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다음으로 아동빈곤, 노인빈곤 등 연령대별 소득 분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표 4-22>에는 <표 4-20>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개인 연령대별 소득분배지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근로소득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지니계수

증가량이 각각 0.032, 0.021로 노인인구의 증가량인 0.007보다 크게 나타났다.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이 각각 5.6%포인트, 2.6%포인트 증가한 것과 달리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0.4%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근로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이 연령대별 소득 분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집단 내 불평등과 빈곤율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노인인구는 집단 내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빈곤율은 감소하였다. 한편 사업소득 행정자료 보완은 모든 집단의 가처분소득 평균과 중위값을 증가시켰지만, 지니계수와 빈곤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산소득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은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재산소득 보완으로 집단 내 불평등이 다소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재산소득이 크게 증가한 노인인구의 경우 집단 내 불평등이 거의 변화하지 않은 대신 빈곤율이 1.9%포인트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은 모든 집단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가처분소득 평균과 중위값의 증가량은 노인인구가 가장 컸지만, 지니계수와 빈곤율의 감소량은 연령대별로 대체로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지출을 행정자료로 보완하면 모든 집단의 지니계수가 소폭 감소하지만 빈곤율은 0.2~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모두 종합한 결과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각각 0.011~0.019, 1.6~4.4%포인트 증가하였고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2.9%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서베이로 측정된 소득분배지표가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율을 과소추정하고 노인인구의 빈곤율을 과대추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23> 조사데이터/행정보완데이터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

구분		근로 소득	개별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추가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사적 이전 소득	- 사적 이전 지출	+ 공적 이전 소득	- 공적 이전 지출
평균(만 원/년)	조사	2118	2855 +738	2980 +125	3021 +41	2915 -107	3077 +162	2723 -354
	행정	2267	3049 +782	3261 +213	3302 +41	3195 -107	3376 +181	2981 -395
중위값 (만 원/년)	조사	1782	2480 +698	2520 +40	2546 +26	2477 -69	2599 +122	2336 -263
	행정	1797	2581 +784	2719 +138	2748 +29	2652 -96	2804 +152	2550 -254
지니계수	조사	0.510	0.405 -0.105	0.400 -0.005	0.388 -0.012	0.390 +0.002	0.356 -0.034	0.346 -0.010
	행정	0.514	0.415 -0.099	0.410 -0.005	0.399 -0.011	0.402 +0.003	0.369 -0.033	0.355 -0.014
빈곤율(% , %p)	조사	37.2	19.7 -17.5	18.2 -1.5	17.1 -1.1	17.9 +0.8	13.9 -4.0	16.1 +2.2
	행정	39.9	22.3 -17.5	19.8 -2.5	18.8 -1.0	19.8 +1.0	15.2 -4.6	17.6 +2.4

주: '조사'는 조사데이터, '행정'은 행정보완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 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근로소득 분배지표와 근로소득에 개별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추가한 소득의 분배지표를 제시하였다. 하단의 수치는 이전 단계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모든 단계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마지막으로 <표 4-23>에서는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개별 소득원천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에서부터 출발하여 개별 소득원천을 누적적으로 추가하면서 단계별로 소득분배지표의 변화를 분석하는 시물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데, <표 4-23>은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이러한 시물레이션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조사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근로소득 평균이 연 2118만 원인데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더하면 그 평균이 2855만 원으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을 더하면 그 평균이 2980만 원으로 증가한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소득원천을 추가한 소득은 가처분소득과 동일하며, 그 평균은 연 2723만 원이다.

표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여러 소득원천의 규모가 커진 결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추가로 인한 평균과 증위값의 증가량이 조사데이터보다 행정보완데이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소득원천 추가에 따른 지니계수와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간에 그다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가 조사데이터보다 행정보완데이터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개별 소득원천의 분배 효과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행정자료 보완이 가처분소득 분포를 상당히 변화시키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득원천을 추가하여 소득분배지표 변화를 분석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에서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행정자료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1~2015년(소득연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2016년(소득연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를 연결하여 분석할 때 소득분배지표 수준의 추이에는 일정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지만, 소득원천별 분배 효과를 시간에 따라 비교하는 작업은 대체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²³⁾

23) 단, <표 4-23>에서 살펴본것듯이 조사데이터보다 행정보완데이터에서 재산소득과 공적이전 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5절 소결

이 절에서는 2016년(소득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와 행정정보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베이 방식으로 조사한 소득 분포와 실제 소득 분포의 차이는 표본의 구성 문제와 응답자의 소득 과소/과대보고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보완 작업은 첫 번째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행정자료 보완 작업에서는 표본이 그대로 유지되고, 국세청 행정자료의 소득 분포 등을 활용한 별도의 가중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²⁴⁾ 따라서 만약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에 고소득층/저소득층이 과소하게 추출되었거나 응답률이 낮았다면, 행정자료 보완 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잔존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검토는 하지 못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 작업은 소득 과소/과대 보고 문제에 대응하여 조사값을 수정하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모집단의 정확한 소득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정보데이터의 소득 분포가 실제 소득 분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분포의 변화가 기존 이론적·경험적 논의가 예측하는 바와 대체로 부합한다는 점에서 행정자료 보완 작업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정자료 보완 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4-4〉 참조), 이는 행정자료 보완을 통해 고소득층이 소득을 과소보고하는 문제가 일정하게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베이에서 시장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던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이 추가적으로 포착되기도 하였다(〈표 4-5〉 참조).

24) 홍민기(2016, 2017)는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득 분포를 보정한 바 있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근로소득은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소득원천이다.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서베이에서 근로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집단의 근로소득이 일부 포착되었으며(〈표 4-11〉 참조), 여러 소득원천 중 근로소득의 평균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균등화 가구소득 개인 단위 분포 기준 +149만 원/년, 〈표 4-9〉 참조). 행정자료 보완 후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득원천도 근로소득이다(〈표 4-20〉 참조). 그런데 근로소득은 행정자료 보완 후 조사값보다 행정보완값이 증가한 가구도 많지만(41.1%) 감소한 가구의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24.8%)(〈표 4-10〉 참조).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서베이의 무작위 측정 오차가 교정된 결과인지, 비공식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서베이에서 포착되는 등 체계적 요인을 반영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자료로 서베이에서 보고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새로 포착되면서,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량이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에게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언급해 둘 만하다(〈표 4-19〉 참조).

사업소득은 서베이 무응답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수준의 제한적인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조사값이 0원이었으나 행정보완값이 0원 초과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이 11.3%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특히 서베이에서 사업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비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표 4-19〉 참조). 이와 같은 사업소득 행정자료 보완 결과 사업소득 평균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지만(균등화 가구소득 개인 단위 분포 기준 +44만 원/년, 〈표 4-9〉 참조), 하위 집단별 사업소득 평균 증가량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고(〈표 4-13〉~〈표 4-18〉 참조), 그에 따른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변화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표 4-20〉 참조).

다음으로 재산소득을 살펴보면 금융소득의 행정자료 보완 효과가 상당히 컸다. 국세청의 행정자료로 금융소득 조사값을 대체·보완한 결과 금융소득 평균이 연 17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균등화 가구소득 개인 단위 분포 기준 +77만 원/년, 〈표 4-9〉 참조), 서베이에서 금융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행정자료로 금융소득이 포착된 가구의 비율이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4-10〉 참조). 이는 서베이에서 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서베이에서 임대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으나 행정자료로 임대소득이 포착된 가구의 비율이 0.8%에 불과해(〈표 4-10〉 참조)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가구주가 중고령자이거나 자영업자, 대출 이상인 집단의 임대소득 평균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패턴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표 4-15〉, 〈표 4-17〉, 〈표 4-18〉 참조). 전반적으로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재산소득 평균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재산소득 의존도가 높은 중고령자에게 좀 더 크게 나타났고(〈표 4-15〉, 〈표 4-16〉 참조), 그 결과 가구주 60대 이상, 개인 65세 이상 집단은 재산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빈곤율이 각각 1.7%포인트, 1.9%포인트 감소하였다(〈표 4-21〉 참조). 하지만 재산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이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불평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4-20〉 참조).

한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1차 소득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평균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균등화 가구소득 개인 단위 분포 기준 +19만 원/년, 〈표 4-9〉 참조). 이처럼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평균적인 변화가 크지는 않았지만 공적이전소득 항목별로, 하위 집단별로 살펴보면 언급할 만한 몇 가지 패턴이 발견된다.

먼저 행정자료 보완 후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공적연금의 평균 증가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균등화 가구소득 개인 단위 분포 기준 +9만 원/년, <표 4-9> 참조). 특히 가구주 60대 이상, 개인 65세 이상 집단 등 공적연금을 많이 받는 고령자의 공적연금 평균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컸다(<표 4-15>, <표 4-16> 참조). 한편 또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은 조사값과 행정보완값의 평균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이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정액에 가까워 비교적 서베이를 통해 조사하기가 쉽고 측정오차가 작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달리 연 1회 급여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연간소득 면접 조사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데이터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률은 2.8%에 불과하지만 행정보완데이터의 지급률은 12.0%로 9.1%포인트나 증가하였다(가구소득 개인 단위 분포 기준, <표 4-9> 참조). 특히 임금수준이 낮은 임신·일용근로자가 가구주인 집단의 근로·자녀장려금 평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4-18> 참조).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양육수당 평균의 증가량은 아동 가구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가구주 30대 이하, 3인 이상 가구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표 4-13>, <표 4-15> 참조). 기초보장급여의 행정자료 보완은 가구주 여성, 가구주 60대 이상, 가구주 초졸 이하, 가구주 비취업 집단 등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시켰다(<표 4-14>, <표 4-15>, <표 4-17>, <표 4-18> 참조). 한편 다른 공적이전소득과 달리 장애수당은 행정자료 보완 후 지급률과 평균 급여액이 모두 감소하였다(<표 4-9> 참조). 다만 그 감소량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모든 공적이전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 대체로 가구주 여성, 가구주 초졸 이하, 가구주 임신·일용근로자 집단의 공적이전소득 평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표

4-14), <표 4-17>, <표 4-18>, <표 4-21> 참조) 전체적으로 가치분소득 불평등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참조).

한편 공적이전지출 중에서는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소득세 평균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균등화 가구소득 개인 단위 분포 기준 +45만 원/년, <표 4-9> 참조).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국세청의 행정자료를 통해 소득세가 파악된 가구의 비율이 15.6%로 비교적 높았다(<표 4-10> 참조). 행정자료 보완 후 소득세가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높았지만(41.6%) 감소한 가구의 비율도 그에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7.5%)(<표 4-10> 참조). 이는 소득세 서베이 조사값의 측정오차가 작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위 집단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부담이 큰 2인 이상 가구, 가구주 남성, 가구주 50대, 가구주 대졸 이상, 가구주 상용 근로자 및 자영업자 집단의 소득세 평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4-13>, <표 4-14>, <표 4-15>, <표 4-17>, <표 4-18> 참조).

마지막으로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개인 연령대별 가치분소득 분포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주로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덕분에 노인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 참조). 행정자료 보완 후 0~17세 아동인구와 18~64세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지니계수는 0.003, 빈곤율은 2.9%포인트 감소하였다(<표 4-22> 참조). 이는 전반적으로 서베이가 상대적으로 노인의 소득을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서베이 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다소 과장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단, 행정자료 보완 후에도 노인의 빈곤율이 43.6%로 근로연령인구의 12.7%, 아동인구의 1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언급해 둔다(<표 4-22> 참조).

제 5 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제2절 분석 결과의 함의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소득분배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데이터로 관찰한 소득 분포의 차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는 첫째, 표본 구성의 차이와 둘째, 소득 과소/과대 보고 양상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를 첫째, 가구 및 개인 특성의 차이와 둘째, 개별 소득원천 분포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2011~2016년(소득연도)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제3장 참조). 모집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표본과 가구주 농림어업 종사가구를 제외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가구 및 개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4인 이상 가구, 가구주가 남성, 50대, 대졸, 상용근로자인 가구 등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고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소득 분포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재가중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조정한 결과, 재가중 후 가계동향조사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평균과 중위값은 증가하고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감소하였다. 즉,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사하다면 데이터 간 소득 규모 차이는 실제보다 감소하지만 소득 불평등 및 빈곤 차이는 실제보다 증가한다. 요컨대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데이터 간 소득 규모의 차이를 일정하게 설명하지만, 소득 불평등 및 빈곤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 규모가 크고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동향조사보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규모도 크게 포착한다. 하지만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기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 소득 및 지출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크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소득원천 분포의 데이터 간 차이는 부분적으로 가구 및 개인 특성의 차이로 설명되지만, 가구 및 개인 특성의 차이를 제거한 후에도 데이터 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남는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소득원천 분포의 차이에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조사 방식 차이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연간소득을 면접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할 때 가계동향조사는 월간소득 가계부기장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적이전 소득 및 지출과 공적이전소득의 누락이 상대적으로 작고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되지만, 고소득층의 누락이나 과소보고로 인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게 조사될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1차 소득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득분배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전체 노인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는 2016년(소득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제4장 참조). 분석 결과 행정자료 보완 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자료 보완 작업이 고소득층의 소득 과소보고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서베이에서 시장소득이 없다고 보고한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이 행정자료 보완을 통해 일부 추가적으로 포착되기도 하였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이 근로소득 분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고 서베이에서 파악하지 못한 근로소득의 존재가 일부 추가적으로 포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이 증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사업소득 서베이 무응답을 행정자료로 대체한 결과 서베이에서 사업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의 사업소득이 일부 포착되었다. 또한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금융소득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재산소득 의존도가 높은 중고령자의 재산소득 평균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재산소득 행정자료 보완이 고령자의 빈곤율을 일정하게 감소시켰다. 한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1차 소득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률과 고령자의 공적연금 평균이 증가하고 가치분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이 소폭 감소하는 등의 영향이 관찰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주로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종합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가치분소득 평균이 연 277만 원 증가하고 빈곤율이 2.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서베이 방식 소득조사가 노인빈곤을 다소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제2절 분석 결과의 함의

1. 소득조사에 대한 함의

최근 대표적인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화하는 흐름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보완 작업은 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서베이 방식 소득조사의 한계를 표본 구성 문제와 소득 과소/과대 보고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때, 우선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의 데이터 변화는 표본 구성과 소득 과소/과대 보고 양상에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검토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에 4인 이상 가구, 가구주가 남성, 50대, 대졸, 상용근로자인 가구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이와 같은 데이터 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차이가 소득 분포 차이에 일정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3장 참조). 그런데 두 데이터 중 어느 하나의 가구 및 개인 특성이 모집단과 더 가깝다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표본추출과 사후층화, 가중치 작업 등을 고려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원진, 구인회(2015)의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월간소득 가계부기장방식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연간소득 면접조사 방식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고소득층의 누락이나 소득 과소보고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보완은 표본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득 과소/과대 보고 양상에만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행정자료 보완이 고소득층의 누락 등으로 인한 표본 구성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은 중요한 한계이지만, 소득 과소/과대 보고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 과제를 언급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추가적인 행정자료 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보장급여, 근로·자녀장려금을 행정자료로 보완하고 있는데, 그 밖의 다양한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급여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득세 외 세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아직까지 행정자료로 보완하지 않은 공적이전지출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의 행정자료 보완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은 서베이 무응답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수준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은 사업소득 비과세와 과소보고 가능성으로 인해 국세청의 행정자료보다 서베이 조사 결과가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홍민기, 2017, p. 6)에 기초한다.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 과세행정의 개선과 함께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의 행정자료 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정보데이터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데이터에 대해서는 국민계정, 국세통계 등을 활용하여 소득 분포를 비교·분석하고 소득분배지표를 보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지만(김낙년, 김종일, 2013; 홍민기, 2016,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정보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정보데이터가 현실의 소득 분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예로, 후속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정보데이터의 소득 분포를 국세통계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면, 행정자료 보안을 통해 소득 과소/과대 보고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정보데이터가 국세통계와 가까운 소득 분포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한다면 행정자료 보완 후에도 고소득층을 과소포착하고 중간 소득층을 과대포착하는 등의 한계가 여전히 관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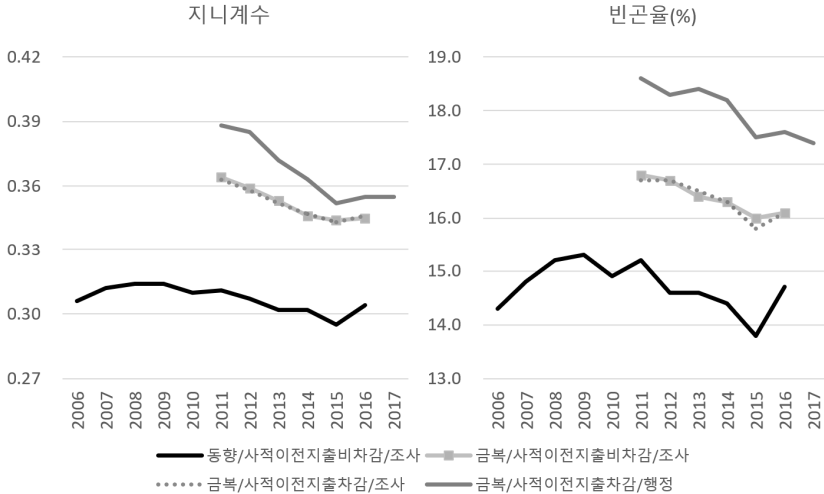
한편 장기적으로는 스웨덴과 같이 전체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통합하여 국가통계 생산과 학술연구에 활용하는(신광영, 2017)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본 구성 문제와 소득 과소/과대 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베이 데이터를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모집단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세

청이 소득 관련 마이크로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학계의 검토 및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 서구 국가와 달리 한국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높고 가구 간 소득이전이 활발하기 때문에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소득과 사적이전 소득 및 지출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데이터의 통합 수준이 높지 않은 단계에서는, 가구 및 개인 특성 등 소득분배 심층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관찰하기 위해 여전히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행정데이터 활용과 함께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 작업과 같이 서베이 데이터와 행정자료를 결합하는 작업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Meyer, Mok, & Sullivan, 2015, pp. 24-25). 통계청(2018b, pp. 80-81)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행정자료로 소득을 조사하고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10개국은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소득을 조사한다.

2. 소득분배 분석에 대한 함의

이 연구의 분석 결과와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 [그림 5-1]에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관찰한 소득분배지표 추이를 요약하여 보고하였다. 그림에서 검은색 실선과 회색 실선은 각각 통계청이 공표한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 공식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요인으로 분해해 볼 수 있다.

[그림 5-1] 가처분소득 분배지표 추이, 2006~2017년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처분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값이다.

- 동향/사적이전지출비차감/조사: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가처분소득/조사데이터, 통계청이 작성한 소득분배지표를 인용하였다.
- 금복/사적이전지출비차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가처분소득/조사데이터, 원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 금복/사적이전지출비차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조사데이터, 원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 금복/사적이전지출비차감/행정: 가계금융·복지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행정정보원데이터, 통계청이 작성한 소득분배지표를 인용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2019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1. 인출; 통계청. (2018a).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1. 인출.

첫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공식 소득분배지표(검은색 실선)와 이 연구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동일한 개념의 가처분소득을 분석한 결과(연회색 네모)를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의 데이터 변경이 지니계수를 0.304에서 0.345로, 빈곤율을 14.7%에서 16.1%로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이 연구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가처분소득(연회색 네모)과 차감한 가처분소득(회색 점선)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처분소득 개념 변화가 소득분배지표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연구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을 분석한 결과(회색 점선)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공식 소득분배지표(회색 실선)를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행정자료 보완이 지니계수를 0.346에서 0.355로, 빈곤율을 16.1%에서 17.6%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시계열과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의 차이는 주로 데이터 변경과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으로 설명되고, 가처분소득 개념 변화의 영향은 미미하다. 이에 이 연구는 데이터 변경과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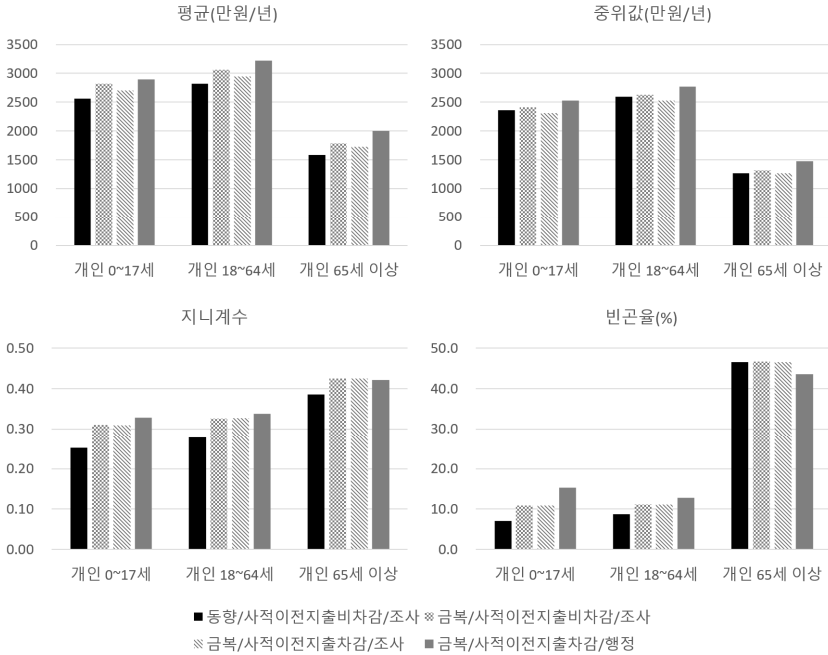
향후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소득분배 장기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정보완데이터를 혼용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 조사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정보완데이터를 단순히 연결한 시계열은 가처분소득의 분배지표, 개별 소득원천 분포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구 및 개인 특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도 정확하게 보여 주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가 주어진 상황에서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에 대한 가능한 함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2016년(소득연도) 시점의 여러 마이크로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2016년은 개편 전 가계동향조사 조

사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모두 가능한 유일한 시점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10~2018년의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고자 할 때, 비교적 일관된 방식으로 조사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2010~2016년의 추이를 분석하고, 2016년 시점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변경과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파악한 후,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2018년의 추이를 분석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전략은 소득 분포의 진정한 시계열 변화와 데이터 변경 및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한 변화를 대략적으로나마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2019년부터 농어가를 포함한 전용표본을 활용하여 소득과 지출을 통합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통계청, 2018f) 2019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와 통합 가계동향조사 데이터가 병존하게 된다. 통합 가계동향조사는 가계부기장을 실시하기 때문에 기존 가계동향조사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층 누락이나 소득 과소보고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사적이전 소득 및 지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선별적 성격의 공적이전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소득과 지출의 결합분포를 분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인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하여 통합 가계동향조사로 관찰한 소득 분포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5-2] 2016년 연령대별 가치분소득 분포



주: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치분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빈곤율은 모두 전체 인구 가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동향/사적이전지출비차감/조사: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가치분소득/조사데이터
- 금복/사적이전지출비차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가치분소득/조사데이터
- 금복/사적이전지출차감/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가치분소득/조사데이터
- 금복/사적이전지출차감/행정: 가계금융·복지조사/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가치분소득/행정보완데이터

자료: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2016a). 가계동향조사. 2016년 원자료.

이 연구에서는 아동빈곤, 노인빈곤 등 인구집단별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개인 연령대별 소득 분포를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그림 5-2]에서 보듯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분포 차이는 연령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평균과 중위값을 살

해보면 동일한 가처분소득 개념을 기준으로 할 때 아동인구, 근로연령인구, 노인인구 모두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가처분소득 수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보다 행정보완데이터의 가처분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의 데이터 변경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보완이 모두 지니계수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노인인구의 경우 데이터 변경이 지니계수를 증가시키지만 행정자료 보완은 지니계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빈곤율을 살펴보면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는 데이터 변경과 행정자료 보완이 모두 빈곤율을 증가시키지만, 노인인구의 경우 데이터 변경은 빈곤율을 거의 증가시키지 않고, 행정자료 보완이 빈곤율을 2.9%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노인인구, 특히 아동인구의 소득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이 기존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가계동향조사로 분석하면 아동인구의 빈곤율(7.0%)이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8.7%)보다 낮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로 분석하면 아동인구의 빈곤율(15.2%)이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12.7%)보다 높다. 반면 노인인구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로 분석한 빈곤율(46.5~46.7%)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로 분석한 빈곤율(43.6%)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서베이 방식 소득조사가 노인빈곤을 다소 과대추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빈곤, 노인빈곤의 장기 추이를 분석할 때는 이와 같은 데이터 변경과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행정자료 보완 후에도 노인빈곤율이 43.6%로 매우 높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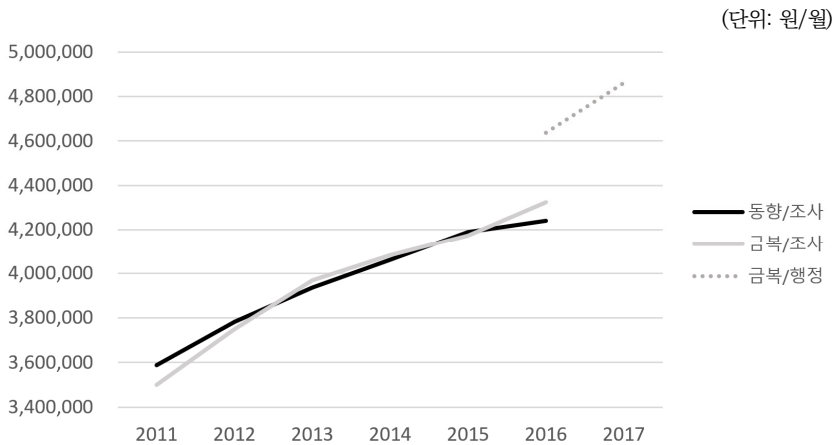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개별 소득원천 분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 몇 가지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1차 소득의 규모와 불평등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보다 행정보완데이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융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와 비교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가계동향조사의 과소보고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사적이전 소득 및 지출의 규모는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훨씬 크게 조사되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소득분배구조를 특징 짓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사적이전소득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홍경준, 2002),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사적이전소득의 분배 효과를 상당히 과소추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이전소득은 급여 종류에 따라 데이터 간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났다(제3장, 제4장 참조). 전체 노인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인 노인의 수급률이 높은 공적연금은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보다 행정보완데이터가 그 규모를 크게 추정한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공적연금 확대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변경과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데이터 변경과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간 분석 결과의 비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기타 공적이전소득은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가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행정자료 보완으로 다소

완화된다. 특히 최근의 확대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과소보고가 심각하기 때문에 행정보완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역시 행정자료 보완을 통해 규모가 증가하였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보완되었다는 점(통계청, 2018b, p. 64)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기준중위소득 산출에 대한 함의

[그림 5-3] 기준중위소득 추이(4인 가구 기준, 2011~2017년



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균등화한 경상총소득의 가구 단위 분포의 중위값이다.

· 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조사데이터

· 금복/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조사데이터

· 금복/행정: 가계금융·복지조사/행정보완데이터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2018h).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논의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5-3]에는 가계동향조사 소

득분배지표 마이크로데이터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및 행정보완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에 따라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계산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2011~2012년에는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준중위소득이 작았지만 2016년에는 가계동향조사(424만 원/월)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432만 원/월)의 기준중위소득이 컸고, 행정자료로 보완하면(464만 원/월) 기준중위소득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로 계산한 기준중위소득이 월 486만 원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 관련 논의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준중위소득의 횡단적 수준이 현실의 소득 분포를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가 현실의 소득 분포를 보다 잘 반영할 것이므로, 데이터 변경과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생계급여로 기준중위소득 30%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상대빈곤선 방식을 채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임을 받아들인다면,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로 산출한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정한 근거를 갖는다.

둘째, 기준중위소득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현실의 소득 분포 추이를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시간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준을 인상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로 산출한 기준중위소득을 채택하면 현실의 중위소득 상승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분이 훨씬 크

게 나타나므로, 데이터 변경과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당장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적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기준과 시간에 따른 소득 수준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동시에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실측값과 증가율 등의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하여 두 가지 기준을 적절하게 조합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가계동향조사로 산출한 기존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한 이행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정보완데이터를 전면 활용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가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정보완데이터로 변경되었고, 이 연구를 포함한 여러 소득분배 관련 연구에서 가계동향조사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만큼(김낙년, 김종일, 2013; 이원진, 구인회, 2015; 홍민기, 2016, 2017) 가까운 미래에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를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정보완데이터로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정보완데이터로의 변화를 반영한 단기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데이터로 산출한 기준중위소득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및 개인 특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데이터 간 소득 분포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구 규모, 성, 연령 등 모집단의 분포가 알려져 있는 몇몇 특성을 활용하여 두 데이터의 소득 분포를 조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가까운 기준중위소득에 접근하고자 하는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림 5-3]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보완데이터의 기준중위소득 차이는 주로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으로 설명된다.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보완은 근로소득의 규모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고 재산소득과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의 규모를 일정하게 증가시킨다. 따라서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한 기준중위소득의 증가 역시 주로 근로소득, 그리고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규모의 증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원천 변화를 여러 시점에 걸쳐 분석한다면 기준중위소득의 횡단적 수준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증가율의 데이터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시계열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석훈. (2000). 서베이데이터와 집계데이터의 비교연구: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국민계정을 중심으로. **계량경제학보**, 11(1), 41-70.
- 강석훈, 현진권. (2003). 소득분배 관련 미시자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국정책학회보**, 12(4), 201-224.
- 강신욱. (2015). **2015년 기준중위소득 결정과정에서의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내부세미나 자료.
- 강신욱. (2016).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 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41, 20-31.
- 강신욱, 김현경. (201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 1999년과 2008년의 비교. **한국경제의 분석**, 22(2), 1-31.
- 강영욱. (2011). 소득불균등 지표 산출에 쓰이는 기초 통계자료의 한계점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20(4), 163-18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6367호**. <http://www.law.go.kr>에서 2020. 1. 20. 인출.
- 김낙년. (2012a).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18(3), 75-114.
- 김낙년. (2012b).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2), 125-158.
- 김낙년, 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1-50.
- 김대일, 이석배, 황운재. (2014). 가구구성과 소득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37(3), 1-44.
- 김진욱. (2015). 한국의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결합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7, 32-66.
- 김태완, 여유진, 김미곤, 이주미, 김명중. (2017). **기준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환준. (2017).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48(3), 5-28.
- 보건복지부. (2015).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4. 25.)**. <http://www.mohw.go.kr>에서 2020. 1. 20. 인출.
- 보건복지부. (2017).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7. 31.)**. <http://www.mohw.go.kr>에서 2020. 1. 20. 인출.
- 보건복지부. (2019).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7. 30.)**. <http://www.mohw.go.kr>에서 2020. 1. 20. 인출.
- 보건복지위원장. (20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292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에서 2020. 1. 20. 인출.
- 성명재. (2011).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규모의 추정 연구. **세무학연구**, 28(2), 227-255.
- 성명재, 박기백. (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4), 5-37.
- 신광영. (2017). 스웨덴의 행정 데이터 통합과 활용에 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20, 83-108.
- 유경준, 김서영, 홍경희.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사회적 현물이전의 추정. **통계연구**, 23(1), 1-22.
- 이원진, 구인회. (2015). 소득분배의 시계열 분석을 위한 한국 소득 데이터의 검토. **조사연구**, 16(4), 27-61.
- 이종철. (2018). 한국의 가계소득 불평등과 근로소득의 역할. **경제발전연구**, 24(3), 35-68.
- 전병유, 정준호. (2014). 소득-자산의 다중격차: 소득-자산의 결합분포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20(1), 105-134.

- 정준호, 전병유, 장지연. (2017).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4(2), 29-54.
- 정지운, 임병인, 김주현. (2014). 가구원수 분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7(2), 71-90.
- 참여연대. (2019).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표방하려면 빈곤층 생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부터 대폭 인상해야. **참여연대 성명(2019. 7. 18.)**. <http://www.peoplepower21.org>에서 2020. 1. 20. 인출.
- 최바울. (2013). 부부의 노동소득과 취업상태가 소득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36(3), 97-128.
- 통계청. (2011a).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http://mdis.kostat.go.kr>에서 2019. 10. 8. 인출.
- 통계청. (2011b).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 통계청. (2011c). **가구주의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 통계청. (2011d). **성,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 통계청. (2012). **가계동향조사**. 2012년 원자료. 통계청 MDIS, RAS(RAS19092602).
- 통계청. (2013). 소득분배지표 현황 및 개선방안(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 참고자료). **통계청 보도 참고자료**. <http://kostat.go.kr>에서 2019. 7. 7. 인출.
- 통계청. (2014).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침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10. 1. 인출.
- 통계청. (2016a). **가계동향조사**. 2016년 원자료. 통계청 MDIS, RAS(RAS19092602).
- 통계청. (2016b). **농가경제조사**. 2016년 원자료. 통계청 MDIS.

- 통계청. (2017a).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침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10. 1. 인출.
- 통계청. (2017b).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관련 7문 7답. **통계청 보도참고자료**. <http://kostat.go.kr>에서 2019. 7. 7. 인출.
- 통계청. (2017c).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MDIS, RAS(RAS19092602).
- 통계청. (2017d).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10. 1. 인출.
- 통계청. (2017e).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전체가구, 성별 및 연령구분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4. 인출.
- 통계청. (2018a).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1. 인출.
- 통계청. (2018b).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통계정보 보고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8. 22. 인출.
- 통계청. (2018c).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에서 2019. 7. 7. 인출.
- 통계청. (2018d).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7. 7. 인출.
- 통계청. (2018e). **『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8. 22. 인출.
- 통계청. (2018f).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안).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에서 2019. 7. 7. 인출.
- 통계청. (2018g). 2018년 2/4분기 가계소득동향 보도참고자료. **통계청 보도참고자료**. <http://kostat.go.kr>에서 2019. 10. 1. 인출.
- 통계청. (2018h).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MDIS, RAS(RAS19092602).
- 통계청. (2019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1. 인출.

- 통계청. (2019b).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연령계층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1. 24. 인출.
- 통계청. (2019c).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7. 7. 인출.
- 통계청. (2019d). **소득분배지표 이해하기: 작성방법과 각 지표의 용어를 중심으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10. 1. 인출.
- 통계청. (2019e).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 통계청. (2019f).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 통계청. (2019g). **성,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 통계청. (2019h).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 12. 10.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MDIS, RAS(RAS19092602).
-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MDIS, RAS.
-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meta.narastat.kr>에서 2019. 10. 1.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통계청 MDIS, RAS(RAS19092602).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설계서 및 코드집. <https://mdis.kostat.go.kr>에서 2019. 10. 7.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 MDIS, RAS.
- 현진권, 임병인. (2004). 우리나라 소득분배 실증연구의 한계. **응용경제**, 6(1), 49-67.
- 홍경준. (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 61-85.

- 홍민기. (2016). **불평등 지표 개선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홍민기. (2017). 보정 지니계수. **경제발전연구**, 23(3), 1-22.
- 홍정훈. (2019). 2020년 1인가구 생계급여 1만 5천 원 인상,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 포기한 것인가. **복지동향**, 251, 45-50.
- DiNardo, J., Fortin, N. M., & Lemieux, T. (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64(5), 1001-1044.
- Lerman, R. I., & Yitzhaki, S.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151-156.
- Meyer, B. D., Mok, W. K. C., & Sullivan, J. X. (2015). *Household Surveys in Crisis*. NBER Working Paper Series, 21399.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ookherjee, D., & Shorrocks, A. (1982).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92, 886-902.
- OECD. (2019).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에
서 2019. 11. 21. 인출.
- Shorrocks, A. F. (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 193-211.

부록 <<

〈부표 1〉 2011~2016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장 소득	평균 (만 원 /년)	동향(A)	2279	2425	2481	2557	2595	2631
		금복(B)	2569	2688	2782	2843	2911	3021
		B/A(%)	112.7	110.8	112.1	111.2	112.1	114.8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2085	2209	2288	2360	2418	2428
		금복(B)	2100	2245	2350	2400	2500	2546
		B/A(%)	100.7	101.7	102.7	101.7	103.4	104.8
	지니계수	동향(A)	0.342	0.338	0.336	0.341	0.341	0.353
		금복(B)	0.397	0.389	0.385	0.384	0.384	0.388
		B/A(%)	116.1	115.0	114.4	112.5	112.4	110.0
	빈곤율 (%)	동향(A)	17.3	16.5	16.9	17.1	17.7	18.8
		금복(B)	17.7	17.6	17.7	17.9	17.9	18.2
		B/A(%)	102.2	106.1	104.4	104.6	100.8	96.5
가처분 소득	평균 (만 원/년)	동향(A)	2189	2323	2383	2461	2519	2554
		금복(B)	2395	2503	2593	2659	2734	2830
		B/A(%)	109.4	107.7	108.8	108.0	108.5	110.8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1999	2125	2199	2255	2322	2353
		금복(B)	1990	2108	2205	2284	2345	2422
		B/A(%)	99.6	99.2	100.3	101.3	101.0	102.9
	지니계수	동향(A)	0.311	0.307	0.302	0.302	0.295	0.304
		금복(B)	0.364	0.359	0.353	0.346	0.344	0.345
		B/A(%)	117.2	116.9	116.6	114.6	116.5	113.8
	빈곤율 (%)	동향(A)	15.2	14.6	14.6	14.4	13.8	14.7
		금복(B)	16.8	16.7	16.4	16.3	16.0	16.1
		B/A(%)	110.6	113.9	112.5	113.3	115.7	109.3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사적이 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을 분석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지표는 모두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부표 2> 2011~2016년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분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인 0~17세	평균 (만 원 /년)	동향(A)	2178	2313	2423	2502	2546	2565
		금복(B)	2437	2479	2558	2616	2681	2817
		B/A(%)	111.9	107.2	105.6	104.5	105.3	109.8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2004	2137	2222	2281	2361	2360
		금복(B)	2017	2111	2226	2284	2353	2410
		B/A(%)	100.6	98.8	100.1	100.1	99.6	102.1
	지니계수	동향(A)	0.266	0.262	0.255	0.253	0.247	0.251
		금복(B)	0.338	0.325	0.312	0.304	0.301	0.310
		B/A(%)	127.2	124.4	122.6	120.0	122.2	123.3
	빈곤율 (%)	동향(A)	9.7	9.1	8.0	7.1	7.1	7.0
		금복(B)	11.8	12.4	11.8	11.4	11.5	10.8
		B/A(%)	120.6	136.0	148.3	160.7	160.9	154.6
개인 18~64세	평균 (만 원 /년)	동향(A)	2370	2517	2584	2687	2754	2818
		금복(B)	2578	2694	2799	2869	2956	3058
		B/A(%)	108.7	107.0	108.3	106.8	107.3	108.5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2148	2287	2381	2443	2527	2593
		금복(B)	2155	2278	2381	2466	2543	2627
		B/A(%)	100.3	99.6	100.0	100.9	100.6	101.3
	지니계수	동향(A)	0.292	0.284	0.278	0.279	0.271	0.278
		금복(B)	0.345	0.342	0.335	0.329	0.325	0.326
		B/A(%)	118.0	120.6	120.4	117.8	119.9	117.4
	빈곤율 (%)	동향(A)	10.4	9.5	9.3	9.0	8.2	8.7
		금복(B)	11.9	12.1	11.6	11.7	11.0	11.1
		B/A(%)	113.8	127.1	125.7	130.3	134.2	127.1
개인 65세 이상	평균 (만 원 /년)	동향(A)	1363	1477	1473	1496	1586	1580
		금복(B)	1407	1512	1584	1655	1722	1781
		B/A(%)	103.2	102.4	107.5	110.6	108.6	112.8
	중위값 (만 원 /년)	동향(A)	1055	1126	1138	1183	1266	1264
		금복(B)	997	1088	1136	1213	1260	1315
		B/A(%)	94.5	96.6	99.8	102.5	99.5	104.0
	지니계수	동향(A)	0.420	0.433	0.420	0.396	0.380	0.385
		금복(B)	0.438	0.445	0.447	0.440	0.435	0.425
		B/A(%)	104.3	102.6	106.4	111.2	114.6	110.3
	빈곤율 (%)	동향(A)	47.6	47.2	48.1	47.4	44.8	46.5
		금복(B)	49.8	48.6	48.6	47.1	47.0	46.7
		B/A(%)	104.6	102.9	101.1	99.4	105.1	100.4

주: '동향'은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사적이 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가처분소득을 분석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이다. 빈곤율은 모두 전체 인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 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7년(조사연도)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2011~2016년 원자료.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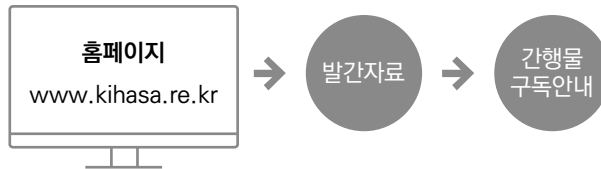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